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7 차 정 무 위 원 회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	기			금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제1장 일반회계

I. 개 요	1
1. 총 괄	1
2. 세입예산안	5
3. 세출예산안	7
4. 성과계획서	16
5. 성인지예산	18
II. 검토의견	19
1. 핀테크 지원사업: 유사사업 등을 고려해 자부담률 인상 필요	19
2. FATF 교육기구 운영 지원: 실집행에 근거한 예산 편성 및 회원국 간 공동부담 방안 마련 필요	26
3.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이용자의 상환 의지 유지 방안 마련을 통한 사업 효율성 및 성과 제고 필요	32
4.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예산 적정 수준 감액 필요 등	41
5.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햇살론15): 안정적 공급을 위한 다양한 재원 마련 필요	64
6.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72
7. 산업은행 출자사업 총괄	79

8.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집행실적을 고려한 적정 예산 규모 논의 필요 등	87
9.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생태계펀드): 혁신성장펀드와의 관계 고려 ...	96
10. 산업은행 출자사업(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 현금 출자 및 대출 규모의 적정성 검토	104
11. 산업은행 출자(원전산업성장펀드: 주목적 투자비율 상향 검토 필요	115
12.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정부 출자규모 조정 필요 ..	121
13.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 구축: 포렌식 장비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129

제2장 신용보증기금

I. 개요 137

1. 수입계획안	139
2. 지출계획안	141
3. 주요경영지표계획	149

II. 검토의견 150

1. 기타경상이전수입: 팩토링 매출채권의 자금 회전기간을고려하여 감액 필요	150
2. 대환보증 대위변제: 저조한 대환보증 공급실적을 고려하여 감액 필요	155
3. 업무용건물: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의 사업지연 방지 및 연내 집행을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마련 필요	161
4. 프론트윈 운영: 연례적 불용을 고려한 감액 필요	167

제3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I. 개 요	172
1. 수입계획안	174
2. 지출계획안	176
3. 주요경영지표계획	184
II. 검토의견	186
1. 담보설정비용(주연보 계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몰기한 연장 조기 확정 시 등록면허세 지급분 삭감 필요	186

제4장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I. 개 요	195
1. 수입계획안	198
2. 지출계획안	200
3. 주요경영지표계획	205
II. 검토의견	206
1. 구상권관리비: 채권 회수율 제고 노력 강화 필요	206

제5장 공적자금상환기금

I. 개 요	211
1. 수입계획안	214

2. 지출계획안	215
----------------	-----

II. 검토의견 219

1. 재고자산매각대: 면밀한 주식 매각계획 수립 후 재고자산매각대 수입계획안 편성 필요	219
---	-----

제6장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I. 개 요 223

1. 수입계획안	227
2. 지출계획안	228

II. 검토의견 234

1. 재고자산매각대: 보유주식 매각 및 매각 가치 극대화 필요	234
2. 기타민간이자수입: KR&C에 대한 대출금 회수 노력 제고 필요	240

제7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I. 개 요 246

1. 수입계획안	248
2. 지출계획안	249

II. 검토의견 252

1. 저축장려금: 사업대상을 저소득농어민으로 한정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 ...	252
---	-----

제1장 일반회계

I.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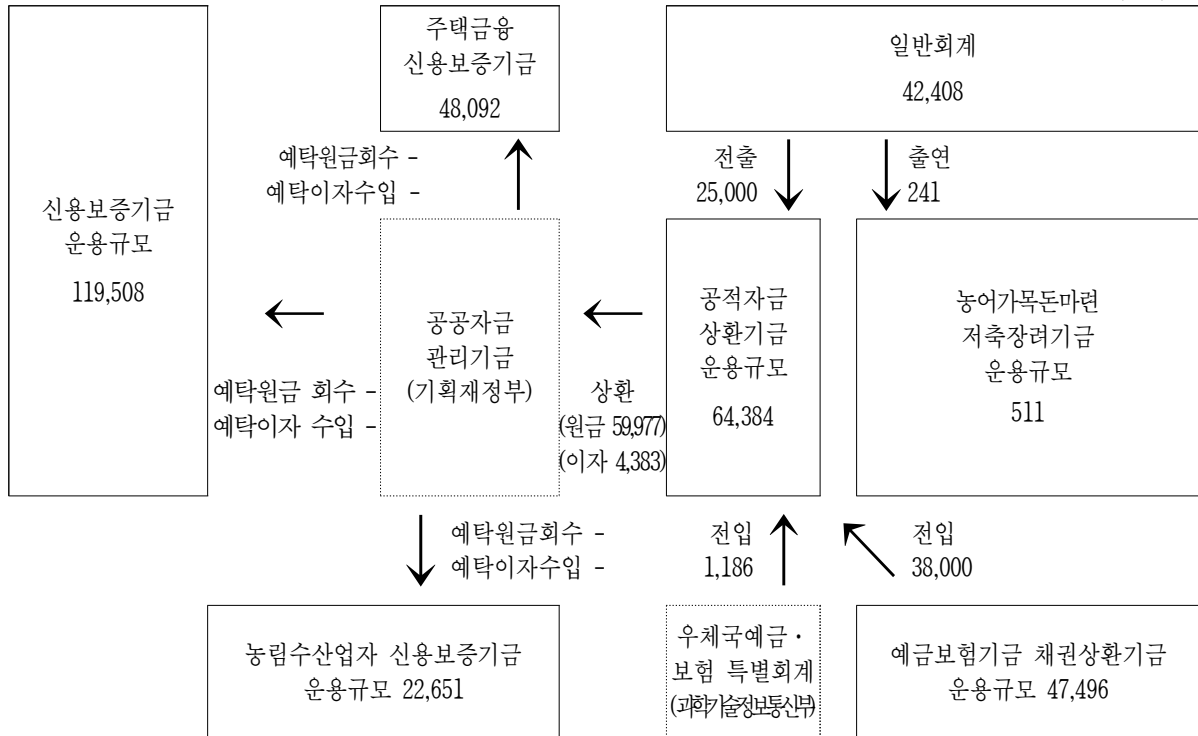
1. 총괄

□ 금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6개 기금(공적자금상환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구성됨.

○ 2025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2조 5,000억원을 전출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241억원을 출연함. 또한, 공적자금상환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5조 9,977억원의 예수원금과 4,383억원의 예수이자를 상환하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3조 8,000억원을 전출함.

〈2025년 금융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주) 총계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만 있으며,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2024년 최종예산 대비 115억원(12.8%) 증가한 1,011억원, 세출예산안은 2024년 예산 대비 2,378억원(5.9%) 증가한 4조 2,408억원임.

〈2025년도 금융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 세입예산안	896	1,011	115	12.8
○ 일반회계	896	1,011	115	12.8
□ 세출예산안	40,030	42,408	2,378	5.9
○ 일반회계	40,030	42,408	2,378	5.9

(자료: 금융위원회)

□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2024년 대비 3조 7,173억원 감소한 30조 2,642억원으로,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2024년 대비 운용규모가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3개 기금은 2024년 대비 운용규모가 감소하였음.

〈2025년도 금융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2025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기금운용계획안	339,815	339,815	302,642	△37,173	△10.9
○ 공적자금상환기금	108,893	108,893	64,384	△44,509	△40.9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641	641	511	△130	△20.3
○ 신용보증기금	114,703	114,703	119,508	4,805	4.2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0,196	20,196	22,651	2,455	12.2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8,972	48,972	48,092	△880	△1.8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6,410	46,410	47,496	1,086	2.3

(자료: 금융위원회)

□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수입·총지출¹⁾은 일반회계 및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구성됨.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2024년 대비 4,497억원 감소(△10.3%)한 3조 9,209억원이며, 총지출은 2024년 대비 2,378억원 증가(15.8%)한 1조 7,409억원임.

1) 총수입·총지출은 회계·기금(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 제외)의 총계에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및 차입금·여유자금운용 등 보전거래를 차감하여 산출함.

*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성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2025년도 금융위원회 총수입 ·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 총수입	43,706	39,209	△4,497	△10.3
○ 일반회계	896	1,011	115	12.8
○ 공적자금상환기금	42,810	38,198	△4,612	△10.8
□ 총지출	15,031	17,409	2,378	15.8
○ 일반회계	15,030	17,408	2,378	15.8
○ 공적자금상환기금	1	1	-	-

(자료: 금융위원회)

□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부사업 중 예산규모가 큰 10대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²⁾,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으로 5조 9,977억원 규모임.

〈금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10대 세부사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2025년도 예산안(B) (계획안)	증감 (B-A)	(B-A)/A
	본예산 (당초)	추경(A) (수정)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공자기)	97,894	97,894	59,977	△37,917	△38.7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예보)	42,500	42,500	38,000	△1,500	△10.6
비통화금융기관예치(신보)	29,269	29,269	35,069	5,800	19.8
일반보증대위변제(신보)	23,584	23,584	26,452	2,868	12.2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일반)	25,000	25,000	25,000	-	-
통화금융기관예치(신보)	29,957	29,957	24,381	△5,576	△18.6
통화금융기관예치(주신보)	21,132	19,042	20,021	979	5.1
통화금융기관예치(농신보)	16,074	16,074	17,139	1,065	6.6
대위변제(주신보)	6,694	8,700	13,364	4,664	53.6
비통화금융기관예치(예보)	-	-	9,438	9,438	순증

(자료: 금융위원회)

2) 기관운영경비 및 내부거래 제외

2. 세입예산안

□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011억 700만원으로 2024년 대비 114억 7,800만원(12.8%)이 증액 편성됨.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결산	2024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 예산	추경(A)			
합 계	77,381	89,629	89,629	101,107	11,478	12.8
기타재산이자수입	99	-	-	58	58	순증
과태료	28,648	36,135	36,135	37,104	969	2.7
과징금	47,560	49,532	49,532	59,907	10,375	20.9
가산금	36	150	150	150	-	-
기타경상이전수입	1,037	3,812	3,812	3,888	76	2.0

(자료: 금융위원회)

- 과태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으로, 2025년도에는 최근 3년간('20년~'22년) 과태료 수납액의 평균치 및 국가미수채권 회수 강화 노력분 반영 등에 따라 2024년도 예산대비 9억 6,900만원(2.7%)이 증가한 371억 400만원이 편성됨.
- 과징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 법령 위반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로서 부과되는 과징금 수입으로, 2025년도에는 최근 3년간('20년~'22년) 과징금 수납액의 평균치 및

국가미수채권 회수 강화 노력분 반영 등에 따라 2024년도 예산대비 103억 7,500만원(20.9%)이 증가한 599억 700만원이 편성됨.

- 가산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및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 수입으로, 2025년도에는 최근 3년간('20년~'22년) 가산금 수납액의 평균치 등에 따라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한 1억 5,000만원이 편성됨.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금융성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고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 및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소송비용 보전금 등 기타수입으로, 2025년도에는 2024년도 예산대비 7,600만원(2.0%)이 증가한 38억 8,800만원이 편성됨.

3. 세출예산안

1) 총 괄

□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조 2,408억 3,6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 4조 30억 1,800만원 대비 2,378억 1,800만원(5.9%)이 증액 편성됨.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합 계	1,733,066	4,003,018	4,003,018	4,240,836	237,818	5.9
□ 금융위원회 운영	1,429,206	1,503,108	1,503,108	1,740,836	237,728	15.8
○ 인건비	29,186	33,037	33,037	33,211	174	0.5
○ 기본경비	7,371	9,518	9,518	9,924	406	4.3
○ 주요사업비	1,392,649	1,460,553	1,460,553	1,697,971	237,148	16.2
□ 내부거래	303,860	2,500,000	2,500,000	2,500,000	-	-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303,860	2,500,000	2,500,000	2,500,000	-	-

(자료: 금융위원회)

- 2025년도 금융위원회 운영 예산안은 1조 7,408억원으로, 인건비, 기본경비 및 사업비가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며 사업비는 2024년 예산 대비 2,371억 4,800만원(16.2%)이 증액 편성됨.
-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내부거래 예산안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2조 5,000억원)로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됨.

□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의 프로그램별 세출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금(회계기금간거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왔으며, 2025년에는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프로그램별 예산 내역〉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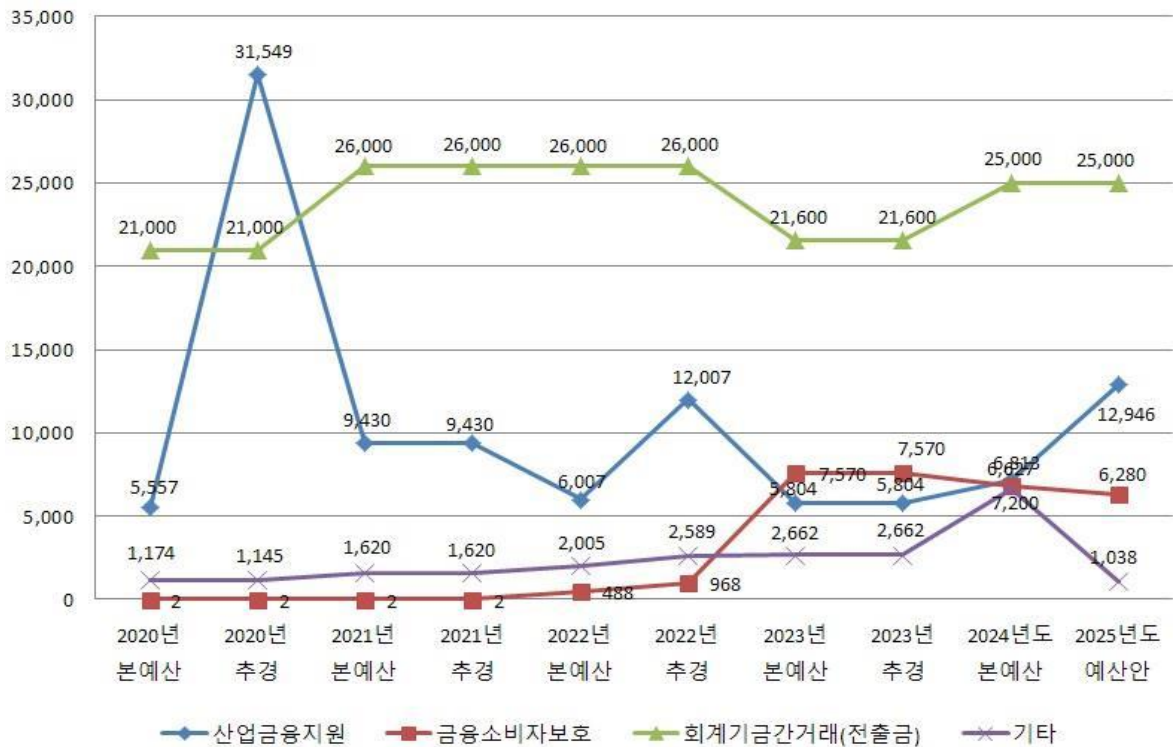
프로그램명	2020년		2021년		2022년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융정책(1100)	199	179	184	184	146	145
서민금융지원(1200)	-	-	-	-	-	-
자금세탁방지시스템선진화(1300)	128	128	92	92	82	81
금융산업글로벌화(1400)	38	36	40	40	37	36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1500)	12	12	6	6	-	-
금융의 날 행사 및 저축장려(1600)	340	340	342	342	-	-
금융소비자보호(1800)	2	2	2	2	488	968
산업금융지원(2400)	5,557	31,549	9,430	9,430	6,007	12,007
주택금융지원(2600)	-	-	500	500	500	1,590
금융행정효율화(7100)	457	450	456	456	741	737
회계기금간거래(8400)	21,000	21,000	26,000	26,000	26,000	26,000
합 계	27,733	53,696	37,052	37,052	34,500	41,564

프로그램명	2023년		2024년		2025년도 예산안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융정책(1100)	140	140	123	123	129
서민금융지원(1200)	-	-	-	-	-
자금세탁방지시스템선진화(1300)	77	77	74	74	78
금융산업글로벌화(1400)	29	29	9	9	10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1500)	-	-	-	-	-
금융의 날 행사 및 저축장려(1600)	-	-	-	-	-
금융소비자보호(1800)	7,570	7,570	6,813	6,813	6,280
산업금융지원(2400)	5,804	5,804	7,200	7,200	12,946
주택금융지원(2600)	1,668	1,668	-	-	-
금융행정효율화(7100)	750	750	810	810	821
회계기금간거래(8400)	21,600	21,600	25,000	25,000	25,000
합 계	37,636	37,636	45,640	45,640	45,264

(자료: 금융위원회)

〈최근 5년 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예산의 프로그램별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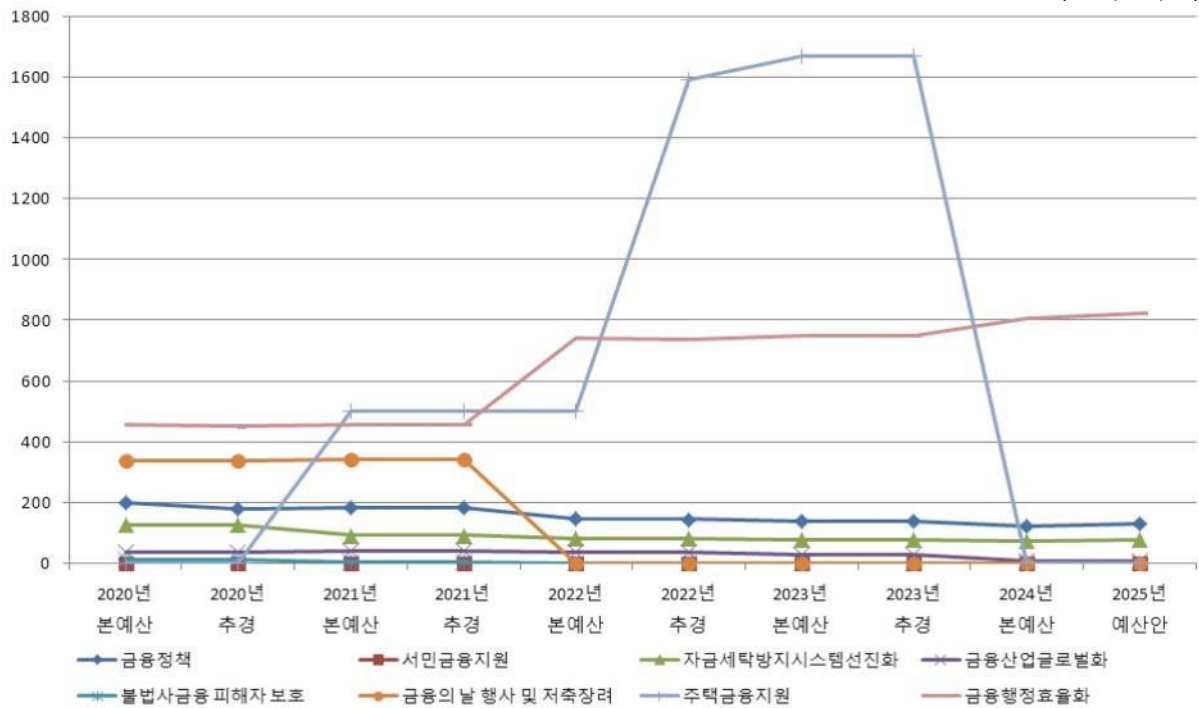
(단위: 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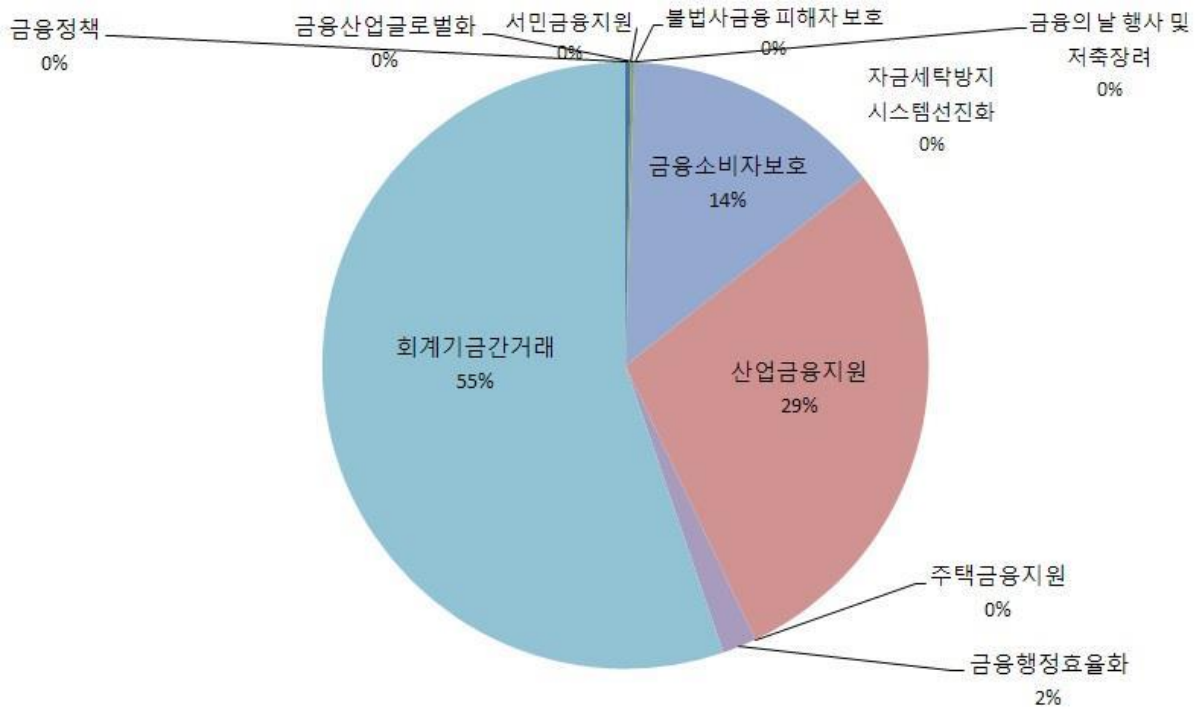
〈기타 예산 세부 내역〉

(단위: 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2025년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예산의 프로그램별 비중〉



(자료: 금융위원회)

2) 인건비

□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332억 1,1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 330억 3,700만원 대비 1억 7,400만원(0.5%) 증가함.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인건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인건비 합계	29,186	33,037	33,037	33,211	174	0.5
□ 세목별	29,186	33,037	33,037	33,211	174	0.5
○ 보수(110-01)	28,428	32,022	32,022	32,170	148	0.5
○ 기타직보수(110-02)	574	771	771	799	28	3.6
○ 연가보상비(110-05)	184	244	244	242	△2	△0.8
□ 기관별	29,186	33,037	33,037	33,211	174	0.5
○ 본부 인건비	23,930	26,747	26,747	26,818	71	0.3
○ FIU 인건비	5,256	6,290	6,290	6,393	103	1.6

(자료: 금융위원회)

○ 2025년도 인건비 예산이 증가한 것은 공무원 처우개선 인상분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3) 기본경비

□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은 99억 2,400만원으로 2024년 예산 대비 4억 600만원(4.3%)이 증가함.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도 예산안(B)	증 감	
				본 예산	추경(A)		(B-A)	(B-A)/A
총액인건비 대상	본부	기획조정관실	2,620	3,100	3,100	3,222	122	3.9
		대변인실	7	8	8	8	-	-
		금융정책국	67	77	77	77	-	-
		자본시장국	-	59	59	115	56	94.9
		금융소비자국	67	35	35	37	2	5.7
		금융산업국	47	64	64	76	12	18.8
	소속기관	금융정보분석원	543	702	702	719	17	2.4
	소 계(A)		3,351	4,045	4,045	4,254	209	5.2
총액인건비 비대상	본부	기획조정관실	1,949	2,935	2,935	3,003	68	2.3
		대변인실	225	241	241	289	48	19.9
		금융정책국	533	672	672	712	40	6.0
		자본시장국	-	412	412	427	15	3.6
		금융소비자국	485	151	151	158	7	4.6
		금융산업국	251	318	318	386	68	21.4
	소속기관	금융정보분석원	577	650	650	695	45	6.9
	소 계(B)		4,020	5,379	5,379	5,670	291	5.4
합 계(A+B)			7,371	9,518	9,518	9,924	406	4.3

(자료: 금융위원회)

- 2025년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42억 5,4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대비 2억 900만원(5.2%)이 증가하였고,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56억 7,0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대비 2억 9,100만원(5.4%)이 증가함.

4) 주요사업비

□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비 예산안은 1조 6,979억원으로 2024년 예산 대비 2,375억원(16.3%)이 증가함.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합 계	1,392,649	1,460,463	1,460,463	1,697,971	237,508	16.3
핀테크 지원 사업	13,821	12,330	12,330	12,933	603	4.9
자금세탁방지추진	780	783	783	846	63	8.0
FATF 교육기구 운영 지원	2,220	1,998	1,998	2,018	20	1.0
FIU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	4,640	4,635	4,635	4,947	312	6.7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추진	1,001	937	937	981	44	4.7
금융소비자보호	98	101	101	101	-	-
금융그룹 통합감독 기반조성	38	38	38	35	△3	△7.9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희망적금)	360,168	165,738	165,738	-	△165,738	순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28,000	56,000	56,000	56,000	-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도약계좌)	367,794	368,211	368,211	375,000	6,789	1.8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햇살론15)	-	90,000	90,000	90,000	-	-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886	1,255	1,255	1,205	△50	△4.0
산업은행 출자 (혁신성장펀드)	300,000	240,000	240,000	200,000	△40,000	△16.7
산업은행 출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	100,000	100,000	100,000	-	-
산업은행 출자 (반도체생태계펀드)	-	-	30,000	30,000	30,000	순증
산업은행 출자 (반도체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	-	-	250,000	250,000	순증
산업은행 출자 (원전산업성장펀드)	-	-	-	40,000	40,000	순증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 예산	추경(A)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280,000	330,000	330,000	500,000	170,000	51.5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기업구조혁신펀드)	-	50,000	50,000	-	△50,000	순감
금융위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1,360	1,058	1,058	3,012	1,954	184.7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정보화)	1,600	1,585	1,585	1,461	△124	△7.8
자본시장조사회 운영(정보화)	537	323	323	286	△37	△11.5
금융위 대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정보화)	115	117	117	117	-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178	834	834	575	△259	△31.1
정책연구개발	722	665	665	599	△66	△9.9
금융정책알리기	839	844	844	885	41	4.9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251	407	407	450	43	10.6
회계의날	64	65	65	59	△6	△9.2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사업	-	200	200	200	-	-
금융의 날 행사	79	76	76	69	△7	△9.2
소송수행비용	425	800	800	900	100	12.5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 구축	-	-	-	430	430	순증
금융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	-	-	445	445	순증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 출연	27,033	31,463	31,463	24,417	△7,316	△23.3

(자료: 금융위원회)

5) 내부거래(회계기금간 거래)

-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내부거래(회계기금간 거래) 예산안은 2조 5,000억원으로 2024년과 동일한 규모임.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내부거래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 예산	추경(A)			
합 계	303,860	2,500,000	2,500,000	2,500,000	-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303,860	2,500,000	2,500,000	2,500,000	-	-

(자료: 금융위원회)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은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투입한 공적자금(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중 공적자금상환대책(2002년)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49조원을 2003~2006년에 걸쳐 국채로 전환하여 우선 상환하고 동 국채는 일반회계로부터 연간 2조원(2002년 현재가치 기준)을 출연 받아 2027년까지 상환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2조 5,000억원이 편성됨.

4. 성과계획서

1) 임무와 비전

□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 임무를 ‘경제활력 뒷받침’, ‘금융산업혁신’, ‘소비자 중심 포용적 금융’, ‘공정성·투명성 강화’로 설정하고, ‘혁신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으로 정책 비전을 설정하였음.

2) 목표 및 과제 현황

□ 금융위원회는 4가지 전략목표(‘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한다.’, ‘서민층의 금융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산업 선진화를 도모하고, 엄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금융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와 11개의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였음.

○ 프로그램 목표별로 설정된 단위사업은 총 21개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금융위원회 성과 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구분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개수	4	11	21	68

(자료: 금융위원회)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목표(Program Objectives)
전략목표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한다.		
	I-1 산업금융지원	산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통해 국민경제를 활성화한다.
	I-2 농림수산업금융지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농어촌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I-3 신용보증금융지원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고 국민 경제에 기여도가 큰 중점정책부문의 기업이 필요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기반 강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도모한다.
전략목표Ⅱ. 서민층의 금융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Ⅱ-1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를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Ⅱ-2 저축장려	농어민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Ⅱ-3 주택금융지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Ⅱ-4 복권기금운영 (취약계층지원)	금융소외계층에게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전략목표Ⅲ. 금융산업 선진화를 도모하고, 엄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Ⅲ-1 금융정책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여 금융혁신을 도모한다.
	Ⅲ-2 자금세탁방지시스템선진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선진화한다.
	Ⅲ-3 금융산업글로벌화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전략목표Ⅳ. 금융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		
	Ⅳ-1 금융행정효율화	금융행정을 효율화한다.

(자료: 금융위원회)

5. 성인지 예산³⁾

☐ 금융위원회는 성인지 예산사업이 없음.

3) 성인지 예산서: 사업(예산)이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성별 수혜분석과 성과목표 설정을 통해 사업(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국가재정법」 제26조)

II. 검토의견

1. 핀테크 지원 사업⁴⁾: 유사사업 등을 고려해 자부담률 인상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핀테크 지원 사업”은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핀테크 확산 촉진을 위하여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핀테크 박람회 개최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300만원(4.9%) 증가한 129억 3,3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핀테크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핀테크 지원 사업	13,821	12,330	12,933	603	4.9
-디지털 금융혁신 지원	7,119	7,042	6,950	△92	△1.3
-핀테크기업 육성지원	2,135	2,374	3,019	645	27.2
-핀테크 기반구축	1,631	1,744	1,694	△50	△2.9
-전자지급 결제대행 업무 선진화	-	-	100	100	순증
-사업 운영 지원	1,192	1,170	1,170	-	0.0

(자료: 금융위원회)

4) 세부사업: 핀테크 지원 사업(1134-301)

2) 검토의견

핀테크 지원 사업은 예산안 편성지침,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및 중소벤처기업부 유사사업의 보조율을 고려하여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해외진출 특화 프로그램 및 핀테크 체험 박람회 사업 수혜기업의 자부담을 인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음.

- 내역사업인 “핀테크기업 육성지원”은 핀테크 기업의 다양한 사업 모델과 성장단계를 반영하여 멘토링, 사업화, 해외진출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4,500만원(27.2%) 증가한 30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그 중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사업은 핀테크 분야 초기 창업기업에 대하여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자금 및 핀테크 특화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3년에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동결한 10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음.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사업개요〉

구분	개요
사업목적	핀테크 분야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성장 가속화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핀테크 기업
모집 분야	금융과 IT 기술이 융합하여 핀테크 산업으로 인정되는 모든 영역 * 지급결제, 자금중개 및 자산거래, 인슈어테크, 자산관리, 디지털자산,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분석, 보안인증, API, 레그테크, 금융 소프트웨어, 기타 서비스 및 기술
지원 내용	1)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자금 ○ 인건비, 기술 보호비, 기술 이전비, 개발 교육비 등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자금 지원(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예정 ○ 총 사업비 구성: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자금 80%+ 창업기업 대응자금 20% 2) 핀테크 특화 육성 프로그램 ○ 기업진단, 투자 종합 컨설팅, 1:1 전문가 멘토링 등

(자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2024년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2024.2.2.)

- 또한, “해외진출 특화 프로그램” 사업은 해외진출 프로그램,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참가지원, 교육·컨설팅 등 핀테크 특화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10억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해외진출 특화 프로그램 사업개요〉

구분	개요
사업목적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대상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중소* 핀테크 기업 *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핀테크 기업
지원 내용	1) 해외진출 프로그램 5억 7,000만원 ○ 현지 투자자 대상 해외 Demo Day 및 투자자 네트워킹 등 프로그램 운영 ○ 현지화 바우처 지원(1천만원 규모의 바우처) 2)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참가 지원 3억 6,000만원 ○ 2~3개 박람회 공동관 또는 개별부스 참여 지원 3) 역량강화 프로그램(해외 현지 전문가의 교육 및 컨설팅) 8,000만원

(자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2024년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2024.2.2.)

□ 또 다른 내역사업인 “핀테크 기반구축” 중 “핀테크 체험 박람회(코리아 핀테크 워크)” 사업은 핀테크 기업의 네트워킹 지원 및 디지털 금융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제고 등을 위해 정책설명회, 전시관과 세미나, 부대 및 체험행사 등을 약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000만원(△3.7%) 감소한 12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코리아 핀테크 워크 2024 추진계획〉

구분	개요
행사명	코리아 핀테크 워크 2024
일시·장소	8.27(화)~8.29(목)(3일간)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개최목적	최신 디지털 금융 동향 및 지식 공유, 핀테크 기업의 국내·외 네트워킹 지원, 디지털 금융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제고
참석자	국내외 금융당국, 금융 유관기관, 국내외 전문가,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글로벌 기업, VC, AC, 학생, 일반인 등
주요 프로그램	○ (개막행사, 세미나) 핀테크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디지털 금융 혁신에 대한 정책 방향과 최신 지식 정보를 제공 ○ (부스)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글로벌 기업 등이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 (부대행사) 투자 유치, 채용, 네트워킹 기회 등 제공

(자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2024년도 핀테크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2024.1.16.)

□ 한편, 민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보조율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면서, 자체수입이 있거나 자부담(참가비, 수수료 등)이 가능한 인증·평가,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등은 보조율을 인하하고, 유사사업 보조율과 비교하여 보조율이 높게 설정된 경우 유사사업 보조율 평균치로 보조율을 인하하도록 규정⁵⁾하고 있음.

5)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107.

○ 또한, 전년 대비 2025년 세부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민간보조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최소 10%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이 추가되는 등 민간보조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예산 낭비 방지 등을 위해 자부담률 인상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핀테크 지원 사업은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2024.9.) 결과 “사업방식 변경” 판정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해외진출 지원, 핀테크 박람회 지원, 입주공간 지원 등의 수혜자인 핀테크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자부담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음.

□ 그런데 핀테크 지원 사업 중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해외진출 특화 프로그램 및 핀테크 체험 박람회 사업의 경우, 사업 수혜자인 핀테크 기업에 대하여 자부담이 부과되어 있지 않거나 유사사업에 비해 자부담률이 낮음.

○ 구체적으로,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사업은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에 대하여 사업화자금 및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기창업패키지”와 유사한데, 자부담률이 20%로 초기창업패키지의 자부담률(30%)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음.⁶⁾

6)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사업이 극초기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나, 금융위원회 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모두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을 통해서도 핀테크 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사업을 달리 취급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임.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사업과 초기창업패키지의 총사업비 구성 비교〉

구분	총 사업비 ¹⁾	정부지원 사업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100%	총 사업비의 <u>80%</u>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10% 이하
	1억원	8,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초기창업패키지	100%	총 사업비의 <u>70%</u>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1억원	7,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주 1) 기재된 금액은 사업비 지원 예시임.

(자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2024년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2024.2.2.
및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2024.1.30.)

- 또한, 해외진출 특화 프로그램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프로그램,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액셀러레이팅”과 유사한데, 동 사업의 경우에도 자부담률이 20%로 글로벌 액셀러레이팅의 자부담률(30%)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음.⁷⁾

〈해외진출 특화 프로그램과 글로벌 액셀러레이팅의 총사업비 구성 비교〉

구분	총 사업비 ¹⁾	정부지원 사업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해외진출 특화 프로그램	100%	총 사업비의 <u>80%</u> 이하	총 사업비의 20% 이상	-
	1,250만원	1,000만원	250만원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100%	총 사업비의 <u>70%</u>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2,857만원	2,000만원	286만원	571만원

주 1) 기재된 금액은 사업비 지원 예시임.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및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 2024.4.29.)

7)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에 비해 해외진출 특화 프로그램의 현금 비중이 더 높다는 입장이나, 총 사업비 중 현금과 현물 부담을 더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은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 이내)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금융위원회 사업은 업력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자부담률을 높게 설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핀테크 체험 박람회 사업은 현재 참가기업에 대하여 참가비 및 부스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함.⁸⁾⁹⁾

□ 이처럼 예산안 편성지침 및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유사사업에 비해 자부담률이 낮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해외진출 특화 프로그램 및 핀테크 체험 박람회 사업 수혜기업의 자부담률을 인상하여 예산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음.

8) 부스 디자인 및 설치비, 인터넷 사용료, 기자재 대여비 등은 개별 부담

9)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중소기업 외의 국내 금융회사 및 대기업,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에 대해 부스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함.

2. FATF 교육기구 운영 지원¹⁰⁾: 실집행에 근거한 예산 편성 및 회원국 간 공동부담 방안 마련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FATF 교육기구 운영 지원”은 FATF 교육기구(FATF TRAIN) 운영의 효과적인 추진을 통한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국제적 리더십 강화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00만원(1.0%) 증가한 20억 1,8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FATF 교육기구 운영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FATF 교육기구 운영 지원	2,220	1,998	2,018	20	1.0

(자료: 금융위원회)

- 동 사업은 2016년 금융정보분석원(FIU) - FATF(OECD) - 부산시 3자간 양해각서(MOU)에 따라 설치된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교육기구(FATF TRAIN: Financial Action Task Force TRAIning INstitute, 부산광역시 소재)의 운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운영비 예산으로, 우리 정부는 국제부담금(340-02목)으로 이를 부담하고 있음.¹¹⁾

10) 세부사업: FATF 교육기구 운영 지원(1331-304)

11) 2016년 출범 당시 교육·연구기구로 출범하였으나, 2020년 4월 MOU 개정을 통해 연구기능을 삭제하고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교육전담기구로 변경하였음.

2) 검토의견

금융위원회는 FATF TRAIN 운영비용의 세부 집행내역 및 계획을 제출받아 총액 기준이 아닌 항목별 실집행액에 근거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조속히 MOU 개정을 추진하여 FATF TRAIN 운영비용의 회원국 간 공동부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FATF 교육기구 운영 지원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 산출내역을 보면, FATF TRAIN 원장 및 전문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12억 3,000만원, 교육프로그램 및 사무실·행정비용인 운영비 7억 8,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총 20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내용	예산안
인건비		FATF TRAIN 원장 및 전문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1,230
운영비	프로그램 비용	외부강사 및 ODA 참가자 등 여비	370
		프로그램 준비 및 집행비 등 교육 운영비	
	사무실·행정비용	사무실 운영을 위한 간접비 및 IT 비용 등 기타 운영비	418
계			2,018

(자료: 금융위원회)

- 2024년 및 2025년도 예산(안)의 FATF TRAIN 예산부담 구조를 보면, MOU 체결 당사자인 3자 중 금융정보분석원이 2024년과 2025년도 예산안에 각각 19억 9,800만원과 20억 1,800만원을, 부산시가 임차료 및 관리비 등에 매년 5억 4,500만원씩 부담하고 있고, FATF는 일부 교육 시 투입되는 객원 강사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예산 부담 의무가 없음.

〈2024·2025년도 예산(안) FATF TRAIN 예산부담 구조〉

구분	2024년도 예산		현물·인력
금융정보분석원	19억 9,800만원		없음
부산시	관리비	1억 6,200만원(월 1,400만원)	행정인력으로 1명 파견 ²⁾
	임차료	3억 7,200만원(월 3,100만원)	
	통신비 ¹⁾	1,100만원(월 90만원)	
FATF	없음		없음
구분	2025년도 예산안		현물·인력
금융정보분석원	20억 1,800만원		없음
부산시	관리비	1억 6,200만원(월 1,400만원)	행정인력으로 1명 파견 ²⁾
	임차료	3억 7,200만원(월 3,100만원)	
	통신비 ¹⁾	1,100만원(월 90만원)	
FATF	없음		없음

주 1) 통신비: 사무실 전화기, 업무용 휴대폰 기기값 및 통신료

주 2) OECD 직원으로 파견 계약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정보분석원의 FATF TRAIN의 운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은 매년 자발적 부담금 성격의 국제부담금(340-02목) 비목으로 편성·집행되고 있음.

○ 국제부담금과 관련하여,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자발적 부담금은 협력사업의 타당성, 부담금 납부를 통한 성과 등을 분석·검토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반영하도록 하고, 사업 연장에 따라 부담금을 계속 납부하게 되는 경우는 사업 연장의 타당성을 엄격히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부담금 납부 현황을 전면 재검토하여 연례적·답습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부담금 편성은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동 사업과 관련하여 국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2022·2024년도 예산안 등 심사 시 국제부담금의 적정 수준 조정, 예산안 산출의 정확성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도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편성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2023~2025년도 예산(안) 내역별 세부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구분		내용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결산	실집행	예산액	예산안
인건비		FATF TRAIN 원장 및 전문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1,210	968	1,210	1,230
운영비	프로그램 비용	외부강사 및 ODA 참가자 등 여비	570	479	250	370*
		프로그램 준비 및 집행비 등 교육 운영비	150	119	250	
	사무실· 행정비용	사무실 운영을 위한 간접비 및 IT 비용 등 기타 운영비	290	382	288	418*
계			2,220	1,949	1,998	2,018

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간접비용(보험·법률 자문 등)을 2024년까지는 프로그램 비용에 편입했으나, 2025년부터 이를 행정비용으로 분류함에 따라 전년 대비 차이가 나타남.

(자료: 금융위원회)

○ 이는 금융위원회가 OECD FATF의 결산 이후 FATF로부터 각 항목별 집행총액만을 통보¹²⁾받고, 차년도 사업계획의 경우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연초에 FATF에서 수립한 계획을 통보받고 있기 때문

12)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통상 차년도 5~6월에 OECD FATF로부터 집행총액을 통보받고 있음.

으로,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프로그램별 소요비용이나 FATF 인건비의 집행내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예산편성·결산 방식을 통해서는 납부한 분담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없고, 차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도 실집행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근거한 예산산출이 어려움.

□ 또한, FATF TRAIN 교육 프로그램에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다수의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음¹³⁾에도 운영비를 한국 정부만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FATF 회원국 간 FATF TRAIN 운영비의 공동부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¹⁴⁾

13) <2023년 FATF TRAIN 교육 프로그램 현황>

구분	기간	교육대상	교육 인원(명)
STC 19	2월 13~17일	CFATF	37
STC 20	3월 5~16일	MENAFATF	39
STC 21	4월 10~14일	GIABA/GABAC	32
STC 22	5월 29~6월 2일	MONEYVAL	34
STC 23	7월 17~21	FATF	33
STC 24	9월 11~15	LE Framework	38
STC 25	11월 6~10	APG	39
STC-TtT	11월 27~12월 1일	Train the Trainers	47

(자료: 금융위원회)

- 14)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FATF 교육연구기구의 운영비용을 회원국의 하나인 대한민국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FATF TRAIN에 납부하는 국제부담금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시정요구사항이 의결된 바 있음.

구분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명	(20)코로나19에 대응한 사업계획 수립 및 국제부담금 재조정 필요
지적사항	○ 2020년 예산 실집행률은 13.3%에 불과하여 실적이 저조하였음. ○ 그 동안 국회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FATF 교육연구기구에 납부하는 국제부담금 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운영비용을 회원국의 하나인 대한민국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FATF TRAIN이 코로나19에 대응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분야의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FATF TRAIN에 납부하는 국제부담금을 재조정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주의)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한국의 재정부담을 축소하고 회원국 부담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이나, 2024년 10월 현재까지 회원국 간 실질적인 공동부담과 관련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¹⁵⁾

○ 이는 구체적인 사업 타당성 및 성과에 대한 분석·검토 없이 MOU에 따라 연례적으로 FATF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국제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금융위원회가 MOU 개정에 관한 제안 또는 의견 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닌, 본격적인 MOU 개정을 통해 회원국 간 비용분담 및 예산편성·결산 방식의 개선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¹⁶⁾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FATF TRAIN 운영비용의 세부 집행내역 및 계획을 제출받아 총액 기준이 아닌 항목별 실집행액에 근거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사업 타당성 및 부담금 납부의 성과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검토를 실시하고, 조속히 MOU 개정을 추진하여 FATF TRAIN 운영비용의 회원국 간 공동부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5) 금융위원회는 FATF 총회 시마다 타 회원국에 자발적 기여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FATF TRAIN의 교육에 필요한 객원 강사의 인건비 등은 다른 회원국과 FATF 본부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며, FATF TRAIN 시설에서 다른 회원국과 FATF 본부의 재원으로 FATF의 다른 교육 프로그램(ICRG 평가자 교육 등)도 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함.

16) FATF 교육기구와 관련하여 2020년 MOU를 개정할 바 있으나, 회원국 간 비용부담 구조 관련 변경사항은 없었음.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MOU의 개정 주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MOU의 효력은 서명한 날의 다음 달 초일부터 3년으로 MOU 개정이나 효력 정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 경우 3년 단위로 추가 연장되며 양측이 상호 합의 시 서면으로 수정이 가능하도록 규정(MOU 제11조)하고 있음.

3.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¹⁷⁾: 이용자의 상환 의지 유지 방안 마련을 통한 사업 효율성 및 성과 제고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상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에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560억원 이 편성됨.

〈2025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	28,000	56,000	56,000	-	-

(자료: 금융위원회)

-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은 연체경험 등으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마저도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대부업 등 고금리대출 피해 예방을 위해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48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2022년 9월 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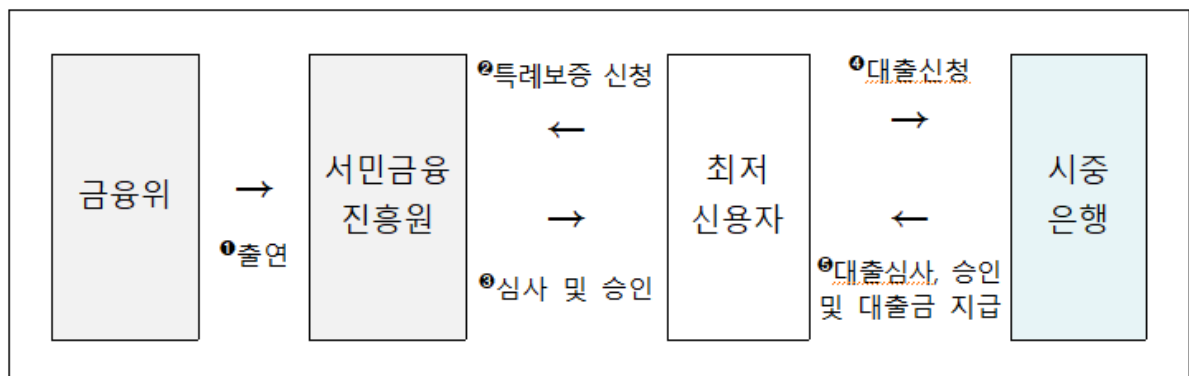
- 지원 대상은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로서

17) 세부사업: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1831-881)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¹⁸⁾이고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임. 대출한도는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이고,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500만원 한도) 이용자격을 부여하여 최
대 총 1,000만원 이내임.

- 대출을 원하는 최저신용자가 진흥원에 특례보증을 신청하여 심사결
과 승인되면, 최저신용자는 이를 근거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하
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심사하여 이를 승인하면 대출금을 지급하
는 절차로 진행됨.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지원구조〉



(자료: 금융위원회)

-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이 출시된 이후 2022년에는 재원 480억원
중 200억원을 활용하여 3.4만건, 1,002억원 규모를 공급하였고, 2023년
에는 2022년 예산 중 미활용 분 280억원 및 본예산 280억원 등 총 560
억원을 활용해 11.2만건, 2,924억원 규모를 공급하였음.

18) 2024년 4월 기준 KCB 675점 또는 NICE 724점 이하에 해당

- 2024년의 경우 56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9월말 기준 4.6만 명, 1,219억원 규모를 공급하였음.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공급 현황〉

(단위: 명, 억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9월 말)
예산액	480 ¹⁾	280 ²⁾	560
지원인원	33,717	98,015	46,606
보증공급액	1,002	2,924	1,219

주1) 예산액 480억원 중 200억원만 활용

주2) 본예산 280억원과 2022년 미활용 분 280억원을 합산한 총 560억원 활용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금융위원회는 보증 제공 이후에도 이용자가 지속적인 상환 의지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상품의 건전성을 높이고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와 진흥원은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공급 규모를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액을 보증비율과 예상사업손실률로 각각 나누어 산출되는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음.

- 2024년의 경우 예산액은 560억원으로 보증비율 100%와 예상사업손실률 20%를 각각 나눈 2,800억원이 연간 보증공급금액에 해당함.

〈2024년도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연간 보증공급금액 산출내역〉

연간 보증공급금액 2,800억원 $\times$ 0.2 (예상사업손실률 20%) $\times$ 1 (보증비율 100%)
= 예산액 560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 2025년 예산안의 경우 2024년과 동일하게 예산안에는 560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예상사업손실률을 33%로 예상하여 2025년 중 보증공급금액 예상 규모는 2024년 대비 1,100억원 감소한 1,700억원 규모로 산출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2022년부터 금리인상·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금융회사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최저신용자 금융지원을 배제하고 있어 부실 위험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저신용·저소득자는 경기악화 시 상환 능력이 저하되어 부실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2024년 이후 예상 사업손실율이 증가하였다는 입장임.

〈2025년도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연간 보증공급금액 산출내역〉

연간 보증공급금액 1,700억원 $\times$ 0.33 (예상사업손실률 33%) $\times$ 1 (보증비율 100%)
= 예산액 560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위원회는 예상사업손실률을 예상되는 대위변제율에 구상채권회수 비율, 보증료 수입 비율, 사업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당초에는 대위변제율을 40%로 예상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2025년도 예산안에서는

예상 대위변제율을 53%로 설정하여 예상사업손실률을 산출하였다는 입장임.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예상사업손실률 산출 근거〉

· (2024년 이전) <u>예상사업손실률 20%</u>	= 대위변제율 40% - 구상채권회수 10% - 보증료 수입 12% + 사업운영비 3%
· (2025년 예산안) <u>예상사업손실률 33%</u>	= 대위변제율 53% - 구상채권회수 11% - 보증료 수입 12% + 사업운영비 3%

(자료: 금융위원회)

- 실제 진흥원의 대위변제액 지출 현황을 보면, 2023년 575억원, 2024년(9월말 기준) 805억원으로 총 1,380억원을 지출함. 이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금융위원회가 진흥원에 출연한 1,320억원 대비 104.5%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2024년 9월 기준 누적 대위변제율¹⁹⁾은 26.2%에 달하고 있음.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대위변제율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말
연도중 공급액	1,002	2,924	1,219
누적 공급액(A)	1,002	3,926	5,145
대위변제발생액	0.1	575	805
누적 대위변제발생액(B)	0.1	575	1,380
누적 대위변제회수액(C)	-	4	31
누적대위변제율[(B-C)/A]	0.01	14.5	26.2

(자료: 금융위원회)

19) 누적 대위변제율 = (누적 대위변제발생액 - 누적 대위변제회수액) / 누적 보증공급액

-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이용자 수 대비 대위변제발생 건수는 2023년 대비 2024년에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추가대출 이용 인원 비중은 같은 기간 대비 급락하는 등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상품의 건전성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 참고로,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은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대위변제가 이루어짐. 한편 대출 이후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500만 원 범위에서 추가대출을 이용할 수 있음.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이용자 현황〉

(단위: 명, 건,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말
이용자 수	33,717	98,015	46,606
대위변제발생 건수 ¹⁾	3	21,904	30,931
(이용자수 대비 비율)	(-)	(22.3)	(66.4)
추가대출 이용 인원 ²⁾	- ³⁾	22,511	9,633
(이용자수 대비 비율)	(-)	(23.0)	(20.7)

주1) 각 기간 중 발생한 대위변제발생 건수

주2) 6개월 간 성실납부로 추가대출을 이용한 인원을 의미

주3)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22.9월에 출시하여, 6개월 이상 성실납부자는 '23.3월부터 발생함

(자료: 금융위원회)

- 아울러, 대위변제 회수액의 경우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한 대위변제액 회수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짐을 감안하더라도 유사한 상품인 햇살론15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햇살론15 대위변제 회수액 비교〉

(단위: 억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특례	햇살론	특례	햇살론	특례	햇살론	특례 ¹⁾	햇살론 ¹⁾
대 위 변 제 발생액(A)	-	2,802	0.1	2,874	575	5,544	805	3,104
대 위 변 제 회수액(B)	-	109	-	306	4	495	31	359
비율(B/A)	-	3.89%	-	10.65%	0.70%	8.93%	3.85	11.57%

주1: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은 9월말, 햇살론15는 6월말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이 처음 도입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에, 정책 대상자의 특성, 도덕적 해이 문제 및 유사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부실률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예상사업손실률이 20%보다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²⁰⁾이 있었음.

○ 특히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상품은 이와 유사한 햇살론15와 달리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록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신청 당시 연체사유가 해소된 경우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부실률이 높아질 여지가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출시된 이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상품의 대위변제율과 이용자 중 3개월 이상 연체한 비율이 급증하는 등 건전성이 악화되어 동일한 재

20)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국회예산정책처)

원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상품 공급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 이로 인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최저신용자에 대한 여신 공급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 2024년 9월말 기준으로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공급액은 1,219억원으로, 당초 계획한 공급액 2,800억원 대비 43.5%를 공급하는데 그쳤는데, 금융위원회는 안정적 재원관리와 지속가능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2023년 12월부터 상환능력 심사 시 신용정보,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하는 등 심사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이라는 입장임.

○ 2025년의 경우 앞서 살펴본대로 공급 예정 금액은 2024년 대비 1,100억원(39.3%) 감소한 1,700억원에 불과하는 등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공급 규모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상품은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15 등)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나, 대위변제율 및 연체율 증가로 인해 동일한 재원 하에서 공급규모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낮추고 사업 성과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상환능력 심사 강화 등 대출 이용 전 부당한 목적이나 상환의지가 낮은 이용자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증 제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환 의지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상품의 건전성을 높이고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대위변제 지급액을 적극적으로 회수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임.

4.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²¹⁾: 기여금 지원 예산 적정수준 감액 필요 등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은 청년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청년의 본인납입액에 비례하여 국가가 기여금을 지급하는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진흥원에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7억 8,900만원(1.8%) 증가한 3,750억원이 편성됨.

〈2025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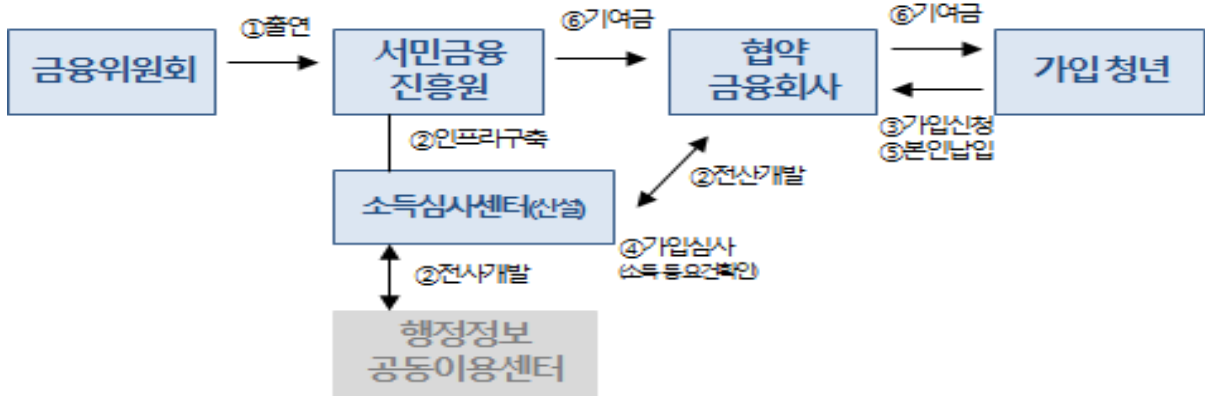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도약계좌)	367,794	368,211	375,000	6,789	1.8
- 기여금 지원	344,037	359,043	362,804	3,761	1.0
- 인프라 구축	23,610	8,664	11,692	3,028	34.9
- 청년도약계좌 운영 지원	147	504	504	-	-

(자료: 금융위원회)

-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출시된 상품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납입금을 납입(월 70만원 한도)하면,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에 더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출연을 받은 진흥원이 매월 본인 납입액의 3.0%~6.0%의 기여금을 지급하는 상품임.

21) 세부사업: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1831-882)

〈청년도약계좌 사업 세부절차〉



(자료: 금융위원회)

- 청년도약계좌는 2022년 2월 출시되어 2024년 초 종료된 청년희망적금 사업과 사업목적 및 사업방식 등에 있어 유사성이 있으며, 가구소득 기준, 기여금률, 만기, 납입한도, 기여금 지급방식 등에 있어서는 일부 차이가 있음.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비교〉

구분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준	개인소득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없음	중위소득 250% 이하			
기여금		1년차 2% 2년차 4%	개인소득		산출식	기여금
			총급여	종합소득	(매칭한도×비율)	한도
			2,400만	1,600만	월40만원×6.0%	2.4만원
			3,600만	2,600만	월50만원×4.6%	2.3만원
			4,800만	3,600만	월60만원×3.7%	2.2만원
			6,000만	4,800만	월70만원×3.0%	2.1만원
			7,500만	6,300만	기여금×, 비과세만	
특징	만기	2년	5년			
	납입한도	월 50만원	월 70만원			
	기여금 지급	만기 시	매월			

주: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2024.8.29.)에 따라 매칭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 (70만원 한도)에 대해서는 3.0% 기여금 지급 예정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1) 기여금 지원 예산 적정 수준 감액 필요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기여금 지원 예산은 지난 2년간 예상 지출 규모 대비 집행실적 추이를 감안할 때 그 규모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적정 수준으로 감액될 필요가 있음.

□ 기여금 지원 예산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개인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기여금을 매칭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3,628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2023년 신규 출시된 것으로, 기여금 지원 예산은 2023년도에 3,440억 3,700만원, 2024년도에 3,590억 4,3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 2023년도에 편성된 기여금 지원 예산은 전액 진흥원에 출연금으로 교부되었으며, 2024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8월말 기준 3,003억 3,600만원이 출연금으로 교부되어 총 6,443억 7,300만원이 진흥원으로 출연되었음.

〈기여금 지원 예산(출연금)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	2024년 (8월 말)	2025년 (예산안)	합계
예산액(안)	344,037	359,043	362,804	1,065,884
교부액	344,037	300,336	-	644,373
집행률	100%	83.6%	-	-

(자료: 금융위원회)

□ 다만, 이러한 출연금은 진흥원에 교부된 이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 맞춰 실제 지급되는 구조이며, 이에 따른 실집행액은 2023년 432억 2,200만원, 2024년(9월말 기준) 2,138억 4,700만원 등 총 2,570억 6,900만원으로 교부된 출연금 대비 39.9%에 불과함.

〈기여금 지원 예산(출연금)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	2024년 (9월 말)	합계
교부액	344,037	300,336	644,373
실집행액	43,222	213,847	257,069
집행률	12.5	71.2	39.9

(자료: 금융위원회)

○ 이러한 저조한 실집행률은 금융위원회가 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한 가입자 수가 실제 가입자 수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사업방식을 중간에 변경함에 따라 기여금 집행액이 일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 대비 기여금 지급액이 적었기 때문으로 보임.

□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금융위원회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예

측한 기여금 지급 규모에 비해 실제 지급 규모가 크게 저조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심사 당시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 출시 이후 연말까지 306만명이 가입하여 3,440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였음. 그러나 2023년말 기준 실제 가입자 수는 51.1만명으로, 이들에 대한 기여금 지원액은 총 432억원 2,200만원만 집행되어 당초 예상에 비해 크게 저조한 실적을 보인 바 있음.

〈2023년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실집행 비교〉

구분	예산(예측치)	실 집행
가입자 수	306만명 (100%)	51.1만명 (16.7%)
총 기여금 지급액	3,440억 3,700만원 (100%)	432억 2,200만원 (12.6%)

(자료: 금융위원회)

- 둘째, 2024년도 예산안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이후 및 국회가 이를 심의하여 확정된 이후에 사업방식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여금을 지급한 규모는 당초 예상한 규모에 미치지 못하였음.

- 2024년도의 경우, 정부가 2023년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3년 가입자 및 2024년 신규 가입자의 기여금 지급을 위해 4,890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출시 당시²²⁾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중복 가입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예산안 제출 이후인 2023년 10월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에

2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6.15일부터 운영개시”, 2023. 6. 14.

대해서는 월 70만원의 납입한도를 넘어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지급하도록 사업 방식을 변경하였음.

- 이에 따라 2023년말 가입자를 60만명으로 추산하여 이들에 대한 기여금 1,292억원, 2024년 중 신규 가입자를 97.5만명으로 추산하여 이들에 대한 1,273억원,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중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143만명으로 추산하여 이들에 대한 5,261억원 등 총 7,826억원을 2024년도에 지급할 예정²³⁾이라고 밝힌 바 있음.

<2023년~2024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소요 산정내역>

구분		세부내용	
예상 가입자수	301만명		
	2023년	60만명	(7~8월) 평균 19만명
			(9~12월) 평균 5.6만명
	2024년	241만명	(신규 및 재가입자) 평균 8.1만명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143만명			
1인당 월 기여금		22,100원	
확보예산		8,330억원 ('23년 잔여예산 3,440억원+ '24년 4,890억원)	
2023년 지급규모	473억원	2023년 가입자 60만명 x 6개월분 가중평균 = 473억원	
2024년 지급규모	7,826억원	2023년 가입자 60만명 x 12개월분 = 1,292억원	
		2024년 가입자 97.5만명 x 12개월분 가중평균 = 1,273억원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143만명 x 17개월분 = 5,261억원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선납분에 대한 정부기여금 일시 지급 반영	

주: 2024년 예산안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함.
(자료: 금융위원회)

- 다만, 2024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최종 심의 과정에서 가입자 규모 등 수요 예측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1,300억원이 감액된 3,590억 4,300만원으로 확정되었음²⁴⁾.

23) 2024년도 예산안 정무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

- 2024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도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 부대의견’²⁵⁾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2024.3.12.),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2024.8.29.)를 발표하는 등 청년도약계좌 운영 방식을 추가적으로 변경한 바 있음.
-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2024.3.12.)은 ①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기존 중위소득 180% → 250% 이하)하는 등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②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일부 지급하는 내용임.
-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2024.8.29.)은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하여 기존 월 최대 2.4만원, 5년간 최대 144만원 수준인 기여금 지원 규모를 향후 월 최대 3.3만원, 5년간 최대 198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임.
- 이러한 사업방식 변경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실제 집행된 내역을 살펴보면, 9월말 기준 가입자는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146만명에 불과하고, 실집행액은 2024년도 예산액 대비 71.2%에 해당하는 2,138억 4,700만원²⁶⁾임.

24) 이에따라 2024년 예산이 확정된 이후 기여금 지급 가능 규모는 2023년도 출연된 기여금 지원 예산 중 잔액인 3,008억원, 2024년 확정 예산 3,590억원을 합한 약 6,598억원임.

25)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정 예산 하에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시 지원대상 확대, 상품구조 조정 등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26) 아울러, 2023년도 진흥원에 출연되었으나 집행되지 못한 약 3,008억원은 2024년에 집행되지 못하고 진흥원에 유보되어 있는 상황임.

□ 이와 같이 기여금 지원 예산이 연례적이고 구조적으로 과다 편성된 결과 실제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진흥원에 유보되어 있거나, 다른 세부사업의 부족분으로 내역변경되는 등 당초 국회의 예산안 심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2024.8.29.)에 따라 월평균 기여금이 기존 2.1만원에서 2.55만원으로 증가하고, 2024년 말까지 총 160만명이 가입할 것을 전제로 2024년말 기준 진흥원에 유보되어 있는 잔여예산을 총 2,843억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음.

- 다만, 기여금 지원 확대방안 적용 시기와 범위가 관계부처 협의를 이유로 2024년 10월 기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²⁷⁾, 2023년부터 교부된 정부 출연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약 169.4억원 발생하였으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일시납입이 종료된 2024년 4월말 이후에는 월평균 정부기여금 지급액이 200억원 이하인 추세를 감안할 때, 2024년 연말 기준 약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지 못하고 진흥원에 유보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됨.

27)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2024.8.29.) 발표 당시 세부추진방안(적용시기, 범위 등)을 관계부처·기관 등과 협의하여 연내 조속히 안내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2024년도 기여금 지원 예산(출연금) 월별 실적행 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소계
가입자수 (계좌개설)(천건)	39	154	355	167	78	21	75	38	21	948
월평균납입액 (천원)	565	2,213	2,180	1,022	637	581	581	583	584	8,946
정부기여금 지급액(억원)	94	455	636	307	198	181	194	196	198	2,459
일시납입자 기여금 지급액(억원)	-	351	490	139	19	-	-	-	-	1,000

주: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청년도약계좌 일시금 납입 기간은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임(다만, 일시납입자 계좌개설 기간 중 5월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5월에 일시납입자에게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었음).

(자료: 금융위원회)

-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4년 4월 기여금 지원 예산 3,590억 4,300만원 중 561억원을 청년희망적금 사업으로 내역변경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2024년 2~3월에 청년희망적금 가입유지자 전원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예산 지급규모가 최종 확정²⁸⁾되었고, 그 결과 예산 부족분이 발생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내역변경²⁹⁾하였다는 입장임.

²⁸⁾ 청년희망적금은 기여금을 만기 시에 일시 지급하는 형식임.

²⁹⁾ 내역변경이란 단위사업 내에서 동일목을 세부사업 간에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사안의 경우 동일한 ‘금융소비자보호’ 단위사업 내에서 세부사업 간 동일목(사업출연금 350-02)을 변경한 것으로 내역변경에 해당함.

〈2024년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희망적금 사업 내역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세부사업명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 (2024년 종료 사업)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코드	1831-880	1831-882
국회 확정 예산	165,783	368,211 (기여금 지원: 359,043)
내역변경	+56,050	△56,050 (기여금 지원: △56,050)
예산 현액	221,788	312,161 (기여금 지원: 302,993)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청년도약계좌 예산안의 원안 유지를 주장³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1,300억원이 감액되어 확정된 이후, 561억원을 추가로 다른 세부사업으로 내역변경하였다는 점을 볼 때, 연례적이고 구조적인 기여금 예산의 과다 추계 및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도 기여금 지원을 위해 3,628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말 예상되는 기 출연 잔액 약 3,000억원을 감안할 경우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2025년에 약 6,600억원을 기여금 지급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됨.

○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에 예상 지원대상 인원 230만명, 월평균 기여금 2.55만원으로 추산하여 2025년에 지급필요액이 4,763억원에서

30) 제21대국회 제410회임시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록 참조

5,584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2024년도말 예산 잔여액 및 금리
인하 등 시장여건 변동에 따른 지급준비금³¹⁾을 감안하여 총 3,628
억 4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2025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소요 산정내역>

구분	세부내용
예상 가입자수	· 2025년 예상 지원대상 인원: 230만명 ※ 2024년말 예상 가입자수: 160만명(2024년 10월말 기준 153만명) 2025년에 70만명 신규 가입 예상
1인당 월 기여금	2.7만원
2025년 예상 기여금 지급액 산출내역	· 230만명 × 가입유지율 × 2.55만원 × 1~12개월 + a(기여금 지원 적용 시기) = 4,763~5,584억원
2025년예산안 산출 내역	· 지급 필요액 4,763~5,584억원 - 잔여예산 2,843억원 + 지급준비금 = 3,628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다만, 지난 2년 간 예산안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제시
한 기여금 지급 예상액 대비 실제 지급한 기여금 규모가 크게 저조했
던 추이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규모도 과다
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참고로, 2024년도에 연말까지 예상되는 연간 기여금 지급액은 약
3,000억원으로, 이 중 올해 종료된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일시 납입
금으로 인한 일시적 효과(1,000억원)를 제외하면 2024년에 기존 가
입자 및 신규 가입자에 대해 지급한 기여금은 약 2,000억원임.

31) 2025년도에 시장금리가 하락할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
상함에 따른 준비금을 의미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기여금 지원 예산 3,628억 400만원은 지난 2년 간 예상 지출 규모 대비 집행 실적 추이를 감안할 때 그 규모가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적정수준으로 감액될 필요가 있을 것임.

○ 참고로,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일반법령출연금³²⁾의 경우 출연금 관련 사업의 예산안은 사업출연금 집행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미집행분과 목적외 사용분은 제외하고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민원상담 인력 감축을 통한 인프라 구축 예산 감액 필요

현재 민원상담 용역은 2024년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므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적정 규모의 민원상담 인력에 대한 논의를 거쳐 감축될 인력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할 필요가 있음.

□ 인프라 구축 예산은 소득심사센터, 가입자 지원 및 상담센터 운영 등 가입심사 지원과 가입자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116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 중 청년도약계좌 가입 상담을 위한 민원상담 용역비로 59억 2,500만원, 관련 경상운영비로 콜센터 임차료를 포함하여 29억 500

32) 기여금 지원 예산의 비목은 사업출연금(350-02)으로, 일반법령출연금에 해당함.

만원이 편성되었음. 청년도약계좌 민원상담 용역은 연간 20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서울 중구 소재 건물의 2개 층을 임대하여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청년도약계좌 민원상담 용역 및 콜센터 임차 관련 현황〉

구분	민원상담 용역	콜센터 임차
계약 대상	(주)케이티씨에스 (민원상담 인력 200명)	서울 중구 T타워 7층, 22층
2024년 집행액 (계약기준)	56억 5,700만원	17억 7,800만원
2025년 예산안	59억 2,500만원	18억 1,300만원
계약기간	2024.12.31.까지	2028.7.10.까지 (단, 7층의 최소임차기간은 2027.1.10까지, 22층의 최소임차기간은 2025.7.11.까지)

(자료: 금융위원회)

□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처음 편성되던 당시, 금융위원회는 민원상담 필요인력을 200명으로 추산하였는데, 이는 당시 300만명이 신청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루 1% 수준(3만명)으로 문의한다고 가정한 후 1인당 응대가능 콜수(150콜)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³³⁾한 것이나, 실제 운영 현황을 감안할 때 현재 과도한 상담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민원상담 인력 운용 현황을 보면, 실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인원은 2024년 8월말 기준 144만명에 불과하고, 민원상담 인력이 2023년과 2024년에 실제 전화민원 상담에 응답한 시간은 1인당 1~2시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33) 3만명(건) = 150콜/인당(1인당 응대가능 콜수) × 200명

〈청년도약계좌 민원상담 인력 1인당 평균 응답 시간〉

(단위: 건, 분, 명, 일)

구분	응답건수 (A)	건당 평균 응답시간(B)	상담원수 (월평균)(C)	업무일수 (D)	1인당 평균 응답시간 [(A×B)/(C×D)]
2023년 (6월~12월)	377,336	4.4	182	142	64.2분
2024년 (1월~8월)	565,895	6.3	176	165	122.8분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민원상담 인력들이 전화상담 이외에도 가입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점검, 채팅상담 등 민원상담 업무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실제 민원상담 인력의 채용공고를 살펴보면, 업무내용을 “청년도약계좌 상품 문의 단순 안내(업무난이도 낮음)”, “기타 부대업무”로 안내하고 있음.

○ 민원상담 인력들이 전화상담 외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실제 전화민원 상담 응답 시간이 1인당 1~2시간 정도에 불과한 것은 업무 대비 인력 운용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

○ 참고로, 진흥원은 자체 예산을 통해 서민금융콜센터³⁴⁾를 별도 운영 중이며, 2023년도 서민금융콜센터의 총 응답건수는 176만 건³⁵⁾으로 월평균 응답건수 및 1인당 평균 응답시간은 청년도약계좌 대비 약

34) [서민금융콜센터 주요 상담 분야]

- 서민금융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 안내 / ○ 고객 맞춤형 서민금융상품 안내
-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 관련 일반상담 및 접수 / ○ 대위변제 관련 구상채권 상담 안내
- 우리원 사업과 연계된 유관기관 문의 응대
- 우리원 디지털채널(앱, 챗봇, 채팅상담 등) 이용자의 문의 및 문제해결 지원
- 기타 각종 민원상담, 고객의 소리 접수 등

35) 2023년 서민금융콜센터 월평균 응답 건수: 약 13만건

2023년 청년도약계좌 콜센터 월평균 응답 건수: 약 7.1만건

2배이나, 상담인력 규모는 2023년 기준 73명³⁶⁾이었음.

〈서민금융콜센터 민원상담 인력 1인당 평균 응답 시간〉

(단위: 건, 분, 명, 일)

구분	응답건수 (A)	건당 평균 응답시간(B)	상담원수 (월평균)(C)	업무일수 (D)	1인당 평균 응답시간 [(A×B)/(C×D)]
2022년	1,144,398	3.2	60	247	247.1분
2023년	1,763,356	2.8	77	247	259.6분
2024년	1,570,560	2.5	84	183	255.4분

(자료: 금융위원회)

□ 현재 민원상담 용역은 2024년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므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적정 규모의 민원상담 인력에 대한 논의를 거쳐 감축될 인력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진흥원은 2025년부터 민원상담 인력을 100명으로 감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이 경우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59억 2,500만원 중 17억 9,000만원(30.2%)에 대해서는 감액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 한편, 진흥원은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을 위해 서울 중구 소재 건물 2개 층³⁷⁾을 임대하여 층별로 100명의 민원상담 인력을 운용하고 있으나, 민원상담 인력을 감축하는 경우 1개 층의 임차 기간을 단축³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

36) 서민금융콜센터 용역 위탁 계약 기준

37) 서울 중구 소재 T타워 7층, 22층(공용면적 포함 총 면적 3,250.68㎡)

38) 서민금융진흥원이 임대한 2개 층 중 22층의 경우 최소 임차기간이 2025년 7월 11일임.

(3) 출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반납 규정 마련 필요

금융위원회는 출연금의 관리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에 대한 국고 반납 절차 근거를 금융위원회 지침 등으로 마련하고, 기여금 지급 예산의 경우 사업이 종료된 이후 잔여 출연액과 이자수입에 대해서, 인프라 구축 예산의 경우 매년 집행 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해서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 중 기여금 지원 및 인프라 구축 예산의 비목은 사업출연금(350-02목, 법령에 의한 출연금 중 특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용되는 비용)으로, 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의 처리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은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처리하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시 주무부처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의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는 등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1년까지는 금융위원회가 진흥원에 출연하는 금액이 없었으나, 2022년 청년희망적금과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을 위한 출연금 955억 5000만원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7,559억 6,900만원이 출연되었고, 2025년 예산안에는 3개 사업에 출연금 5,221억원이 편성되는 등 출

연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원회가 진흥원에 출연한 금액 중 잔액 등의 반환에 관한 법령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추이〉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2025안	
청년희망적금	47,550	청년희망적금	360,168	청년희망적금	165,738	청년희망적금	- (종료)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48,000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28,000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56,000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56,000
		청년도약계좌	367,801	청년도약계좌	368,211	청년도약계좌	375,000
				햇살론15	90,000	햇살론15	90,000
합계	95,550	합계	755,969	합계	679,949	합계	521,000

(자료: 금융위원회)

-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2024년을 마지막으로 사업이 종료되었으나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과 햇살론15의 경우 출연한 금액 전액을 대위변제금 지급과 대위변제 준비금으로 활용하고 있어 집행 잔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임.
- 다만,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향후 사업 종료와 함께 기여금 지원을 위해 출연한 금액의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인프라 구축의 경우 매년 임차료 및 경상경비 등에 대한 불용잔액이 발생한 바 있음.

□ 반납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진흥원은 2023년도에 인프라 구축 예산 중 사무실 임차료 등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고로 반납하거나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반영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바 있음.

○ 청년도약계좌 사업이 신설된 2023년의 경우 진흥원에 출연된 인프라 구축 예산 236억 1,000만원 중 210억 5,900만원이 집행되었고, 콜센터 용역비, 사무실임차료, 통신비 등에서 집행 잔액 25억 5,100만원이 발생하였음.

○ 2024년 예산안의 경우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당초 104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중 사무실 임차료로 편성된 금액이 과다편성되었다고 지적³⁹⁾된 바 있으며, 최종적으로 17억 8,300만원이 감액된 86억 6,400만원으로 확정됨.

○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감액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임차료를 제외한 전산구축유지비, 콜센터 용역비, 통신비 등의 집행 잔액은 여전히 진흥원에 유보되어 있음.

39) 2023년 사무실 임차료 집행 잔액은 12억 4,600만원으로 추산되고 2024년 실소요액은 17억 8,600만원이나, 2024년에 편성된 예산안에는 23억 2,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총 17억 8,300만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2024 예산안 23억 2,300만원 + 2023 집행잔액 12억 4,600만원 - 2024 실소요액 17억 8,600만원 = 17억 8,3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예산안 검토보고 참조)

〈인프라 구축 예산에 대한 서민금융진흥원 내부 배정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9월 말	
	배정액	집행액	잔액	배정액	집행액
소득심사 인건비	617	617	0	950	0
전산구축유지	15,029	14,742	287	571	381
콜센터 용역비	3,780	3,065	715	5,670	3,038
사무실임차료	2,799	1,538	1,261	1,800 (당초 540 + 전년도 잔액 활용 1260)	1,331
홍보비	253	253	0	213	90
연구용역비	140	140	0	98	0
통신비 등	428	148	280	428	347
사무환경 등	514	506	8	183	21
복리후생비	4	4	0	5	0
응대교육	40	40	0	-	-
업추비 및 여비	6	6	0	6	5
합계	23,610	21,059	2,551	9,924 ^{주)}	5,213

주) 당초 예산안에는 104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17억 8,300만원이 감액되어 실제 교부액은 86억 6,400만원임.

(자료: 금융위원회)

□ 둘째, 진흥원은 2023년도 전산시스템 구축 당시 낙찰차액을 불용처리 하였으나, 반납규정 미비로 이를 자체 운용하고 있음.

○ 진흥원은 2023년도에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예산 150억 2,900만원을 출연받아 집행하였으며, 이 중 4억 4,50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음.

○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예산의 경우 출연금 비목(350-02)으로 이에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진흥원 자체적인 예산집행지침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정보시스템 구축 시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하도록 규정⁴⁰⁾하고 있음.

40) 정보시스템(SW) 구축 시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 감리비,

- 진흥원은 이에 따라 낙찰차액 4억 4,500만원 중 2억 8,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는 입장이나, 이를 반납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진흥원 내에서 자체 자금운용 중인 상황임.

□ 금융위원회는 출연사업의 관리를 위한 규정 등이 마련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진흥원 내부규정을 통해 출연금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 다만,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주무부처가 출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 집행잔액 등에 대한 처리지침을 출연금을 교부받는 진흥원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점⁴¹⁾, 향후 금융위원회가 다른 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통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금융위원회가 이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 참고로, 「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 규정」⁴²⁾(국토교통부 훈령)에서는 출연사업자의 출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달수수료, 디지털서비스 등 공공요금의 부족분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41) 출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국고로 환수하려는 경우 주무부처에 대한 집행현황 보고, 관리현황 점검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출연금을 교부받는 기관이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42) 제12조(출연사업 종료 후 관리) ① 출연사업자는 종료된 출연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출연금의 집행잔액을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출연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반납기한을 정하되, 해당 출연사업이 종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이 금융위원회가 출연사업의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는 등 관리를 해태하여, 진흥원이 집행잔액을 반납하거나 이를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반영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방만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출연금의 관리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에 대한 국고 반납 절차 근거를 금융위원회 지침 등으로 마련함으로써 향후 출연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집행잔액 등이 체계적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동 사업의 기여금 지급 예산의 경우 사업이 종료된 이후 잔여 출연액과 이자수입에 대해서, 인프라 구축 예산의 경우 매년 집행 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해서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⁴³⁾을 마련해야 할 것임.

43) 서민금융진흥원은 기여금 지급 예산과 인프라 구축 예산을 별도 과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4) 법령에 위반된 수의계약 체결 방지 등 내년도 사업 관리 철저 필요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진흥원으로 출연되는 예산이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함으로써 적법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2023년도 인프라 구축 예산에 150억 2,900만원을 편성하여 147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구축이 완료된 이후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2024년도 5억 7,100만원, 2025년도 예산안에는 18억 4,500만원을 편성함.

○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2025년도에 전년 대비 12억 7,400만원 증가한 사유는 2023년 구축한 장비들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하였기 때문이라는 입장임.

□ 그런데, 진흥원은 2024년도에 배정한 5억 7,100만원에 대하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사목⁴⁴⁾이라고 밝힘.

44)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 국가계약법은 일반경쟁을 계약 체결의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사목은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수의계약 사유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같은 ‘용역’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으나⁴⁵⁾, 진흥원은 위 사유를 토대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진흥원으로 출연되는 예산이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함으로써 적법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45) 법제처가 경기도 용인시에 회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 (안건번호 22-0885, 회신일자 2023.3.24.)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타목에서 ‘물품 등’에는 유지보수 등 ‘용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음.

5.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햇살론15)⁴⁶⁾: 안정적 공급을 위한 다양한 자원 마련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햇살론15)”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사람이 은행에서 연 15.9%의 대출금리로 최대 1,400만원⁴⁷⁾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제공하는 상품인 “햇살론15”를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900억원이 편성됨.

<2025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햇살론15)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햇살론15)	-	90,000	90,000	-	-

(자료: 금융위원회)

□ 햇살론15는 저신용·저소득자들이 대부업·미등록대부업을 이용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연 24%) 수준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들이 보증을 통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 9월 햇살론17(연 17.9%)로 처음 출시되었으며, 2021년 1월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0%로 인하됨에 따라 햇살론15(연 15.9%)로 개편되었음.

46) 세부사업: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햇살론15)(1831-884)

47) 2024년말까지는 한시적으로 2,000만원까지 한도를 확대 중임.

□ 햇살론15의 대상 및 보증조건은 아래 표와 같음.

〈햇살론15 대상〉

자격요건		내용
신용등급 및 소득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이며 신용평점 하위 20%(6등급 이하) -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저소득자 * 제외대상: 연체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공공정보 등이 등록된 사람, 채무불이행자, 직업 및 소득이 없는 자, 기타 심사결과 부적격자 등
구 분	근로소득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 * 3개월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및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해 직접보증으로 지원
	사업소득자	3개월 이상 사업영위 중인 사업소득자(프리랜서 포함) * 무등록·유점포 사업자는 센터에서 직접보증으로 지원
	연금소득자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 중인 연금소득자
직접보증		- 은행의 표준화된 심사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자 - 건강보험미가입자, 무등록사업자 등 객관적 소득증빙 어려운 자 - 신용회복지원(신용회복·개인회생·새출발기금) 성실상환 중인(6개월 이상) 자 - 보훈연금을 수급 중인 자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15 보증조건〉

구 분	위탁보증	특례보증
취급처	13개 시중은행 지점 및 모바일 앱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서금융 모바일 앱
보증한도	최대 2,000만원 * '22.8.8. 부터 '24.12.31까지 한시적 한도확대 운영 중(1,400만원 → 2,000만원)	
상환방법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중 선택	
대출이율	연 15.9% 단일금리 (은행 이자율6.0% + 보증료율 9.9%)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금리 인센티브	① 성실상환자(1년 이상) 대상 연 1회 금리 인하 적용 (보증기간에 따라 3년 선택 시 연 3.0%p, 5년 선택 시 연 1.5%p) ② 추가 이용·완제 후 재이용자 DSR 개선 시 0.5%p, 신용부채관리컨설팅 또는 금융교육 이수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1년 이내 취업한 경우 0.1% 금리 인하	
자금용도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긴급자금·일반생계비 등 포괄적 지원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2) 검토의견

2025년도 햇살론15 예상보증공급 규모는 정부 재원에 한정할 경우 2024년 대비 62%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다양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위변제 급증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저해되지 않도록 상품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햇살론15는 2024년 6월 이전에는 국가재정이 아닌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진행되던 사업이었으나, 최근 국민행복기금 재원이 고갈되어 햇살론15 보증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는 2024년도 예산에 900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여 이를 재원으로 햇살론15 보증을 공급하고 있음.
- 국민행복기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68%, 은행 등 20개 금융회사가 32%를 보유한 주식회사로, 2008년 9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신용회복기금이 2013년 국민행복기금으로 개편되고, 2016년 9월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 지분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음.
- 국민행복기금은 그 동안 햇살론, 바퀴드림론, 안전망대출 등을 통해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상품을 공급하고, 금융회사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원금을 감면함으로써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음.

- 이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은 헛살론15 등 보증⁴⁸⁾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납부받는 보증수수료와 과거 매입한 개인연체채권의 추심이익 등을 수입으로 보증에 따른 대위변제 등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보증공급 증가에 따른 대위변제 증가에 따라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기금잔액 규모가 최초 출범 시 6,970억원에서 5,048억원(2020)→4,228억원(2021)→3,985억원(2022)→1,771억원(2023)→948억원(2024.9월)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구체적으로 보면, 2019년 이후 국민행복기금의 재무제표 상 영업수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위변제 및 구상채권상각비 등 영업비용은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매년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음.

〈국민행복기금 손익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영업수익	655	1,391	1,956	2,092	2,721
영업비용	1,534	2,140	3,240	3,449	4,842
영업이익(손실)	△879	△748	△1,284	△1,356	△2,122
영업외 수익	36	1	4	403	703
영업외 비용	22	2	1	1	0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손실	△865	△749	△1,280	△954	△1,419

(자료: 금융위원회)

48) 현재는 헛살론15 상품만이 운영되고 있으나 과거 바퀴드림론(2008.12.~2019.9.), 안전망대출 I (2018.2.~2019.9.), 안전망대출 II(2021.7.~2022.12.) 등 유사한 상품이 여럿 운영되었음.

□ 그 결과 국민행복기금에서 햇살론15 공급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게 되었고, 2024년도 예산에는 햇살론15 사업의 지속을 위해 9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4년의 경우 6월까지의 국민행복기금 자체 재원으로 햇살론15를 공급하였으며, 7월부터는 정부 재원으로 공급하고 있음.

○ 2024년도 햇살론15 공급목표액은 총 1조 500억원으로, 이 중 4,000억원은 국민행복기금 재원으로, 6,500억원은 정부 재원으로 공급할 예정임.

〈2024년 햇살론 15 공급목표 및 실적(9월말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공급목표액(A)	공급금액(B)	달성률(B/A)%
햇살론15	10,500	6,514	62.0%
국민행복기금	4,000	4,126	103.2%
서민금융진흥원	6,500	2,388	36.7%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햇살론15 공급을 위해 2025년 예산안에 2024년과 동일한 9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상사업손실률(13.7%), 보증비율(100%)을 토대로 연간 보증공급금액을 6,500억원으로 계획⁴⁹⁾함.

〈2025년도 햇살론15 연간 보증공급금액 산출내역〉

$\text{연간 보증공급금액 } 6,500\text{억 원} \times 0.137 \text{ (예상사업손실률 } 13.7\%) \times 1 \text{ (보증비율 } 100\%)$ $= \text{예산액 } 900\text{억 원}$

(자료: 금융위원회)

49)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도 동일한 예상사업손실률과 보증비율을 토대로 연간 보증공급금액을 6,500억원으로 계획한 바 있음.

- 이러한 동 사업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우려됨. 첫째, 국민행복기금은 2021년 1조원 862억원, 2022년 1조 4,305억원, 2023년 1조 3,086억원 규모로 햇살론15를 공급하였으며 2024년의 경우 정부 재원을 포함하여 총 1조 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임. 그러나 2025년의 경우 국민행복기금이 고갈되어 정부 재원만을 활용하게 될 경우 2024년 대비 4,000억원 감소한 6,500억원 가량만 공급할 수 있음.
- 햇살론15는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저신용·저소득자들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면 은행 대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공급 규모가 전년도 대비 과도하게 감소할 경우 이들이 불법사금융 등을 이용할 유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둘째, 금융위원회는 2025년 예산안에서 예상사업손실률을 13.7%로 산출하여 연간 보증공급금액을 6,500억원으로 계획했으나, 국민행복기금으로 공급했던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25년도 보증공급금액이 당초 계획에 비해 감소하거나, 향후 동일한 규모의 보증공급을 위한 정부 재원 투입이 증가할 수 있음⁵⁰⁾.
-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공급했던 햇살론15의 누적대위변제율은 2024년 6월말 기준 24.6%이며, 이는 당초 예상사업손실률을 20%로 설정하였다가 2025년부터 33.3%로 설정하여 동일한 재원 대비 연

50) 예상사업손실률이 증가할 경우 동일한 재원(2025년 900억원)을 통한 연간 보증공급금액이 감소하게 됨.

간 보증공급금액 예상이 감소한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사업과 유사한 규모임.

〈국민행복기금 재원 보증 햇살론15 지원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6월 말
햇살론15 (‘19.9. ~‘24.6)	지원인원	142,550	145,423	138,621	44,059
	평균 보증금액	7.6	9.8	9.4	9.4
	대위변제율	14.0	15.5	21.3	24.6

(자료: 금융위원회)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대위변제율 현황〉

(단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 말
대위변제율	-	14.5	25.0

(자료: 금융위원회)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정부 재원을 통한 햇살론15의 연간 보증공급금액은 과거 취급분에 대한 사업손실률이 존재하지 않아⁵¹⁾ 2024년도와 동일한 예상사업손실률을 반영하였다는 입장임.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2025년도 햇살론15 예상보증공급 규모는 정부 재원에 한정할 경우 2024년 대비 62%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정적인 햇살론15 공급을 위한 다양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1) 2024년 6월 이전에는 국민행복기금으로 햇살론15 보증을 수행했기 때문에 정부 재원을 통한 햇살론15의 경우 과거 취급분에 대한 사업손실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 아울러, 대위변제 급증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저해되지 않도록 상품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임.

6.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⁵²⁾: 사업 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등록·미등록대부업체로부터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징수 또는 불법추심 등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관련 부수사건 소송대리를 무료로 지원하고,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금융위원회가 공단에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000만원 감소한 12억 5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886	1,255	1,205	△50	△4.0

(자료: 금융위원회)

□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가 아닌 대리인에게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⁵³⁾ 채무자에 대한 불법 추심 등을 방지함으로써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2014년 도입되었음.

52) 세부사업: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1833-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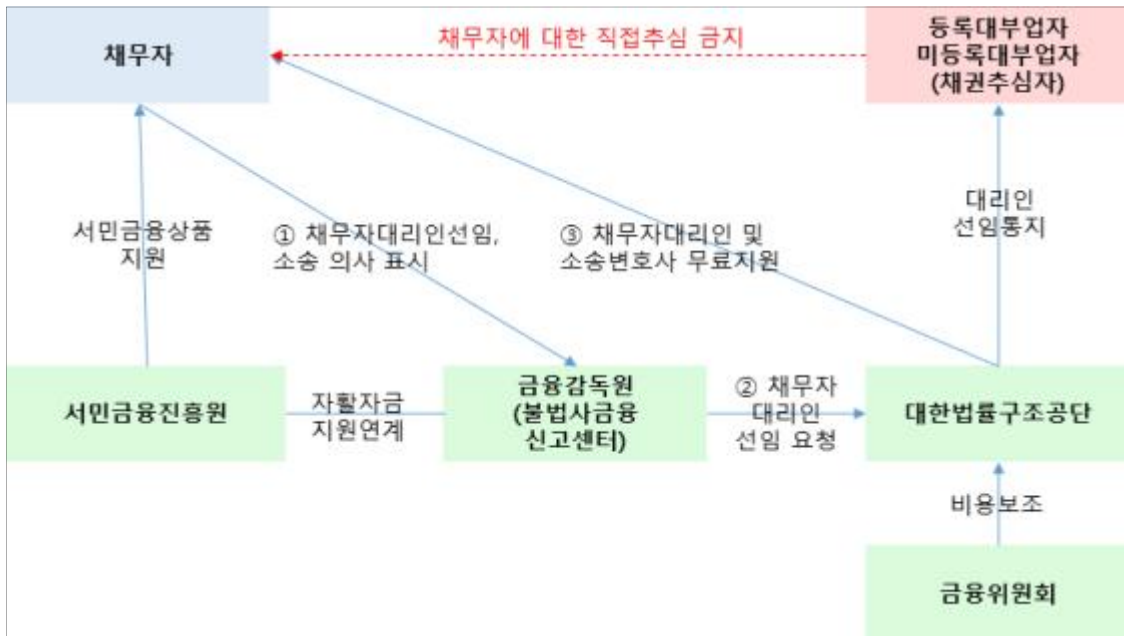
5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①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옹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또한, 채무자는 대리인 선임 시 대부계약·추심행위에 대한 불법성 검토를 포함하여 변호사 등 대리인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효과도 있음.
-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채무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하기 쉽지 않으므로, 정부는 2020년부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무료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해주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음.
- 추가적으로, 채무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불법추심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어 반환청구·손해배상청구·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무료로 소송을 대리하는 “부수사건 소송대리”도 사업에 포함하여 진행해오고 있음.
- 한편, 2024년 7월부터는 채무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에 대해서도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음.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은 채무자가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또는 소송 의사를 표시하면, 금융감독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요청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면, 금융위원회가 공단에 소요된 비용을 보

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 진행절차〉



2) 검토의견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에 편성된 예산 및 2025년도에 확정되는 예산이 적절히 활용되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은 사업 첫 해인 2020년에는 인지도 저조 등으로 인하여 예산 11억 5,000만원 중 1억 6,400만원(14.3%)만을 집행하는 등 사업 집행이 부진하였으나, 이후 지원실적이 증가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매년 예산을 전액 집행하고 있음.

- 사업 첫 해인 2020년에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지원결정 기준) 과 부수사건 소송대리 지원(지원결정 기준) 각각 계획 대비 21.3%(893건/4,200건), 3.8%(22건/580건) 만을 지원하였음.
- 그런데, 2021년에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계획 대비 301.4%(4,747건/1,575건) 지원하는 등 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7월에 홍보비를 제외한 예산을 모두 집행하였음.
- 2022년 역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은 계획 대비 89.0%(4,473건 /5,025건), 부수사건 소송대리는 계획 대비 140.0%(28건/20건)를 지원함에 따라 9월에 예산을 모두 소진하였음.
- 2023년도의 경우 당초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위해 7억 7,300만원, 홍보를 위해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나,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이 모두 집행됨에 따라 당초 계획한 홍보비를 집행하지 않고 이를 활용하여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에 활용하는 등 예산액 8억 8,6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음.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 계획·실적 및 예결산〉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9월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지원결정)	4,200건	893건	1,575건	4,747건	5,025건	4,473건	3,715건	3,236건	5,965건	1,933건
	8.4억원	1.59억원	3.15억원	3.15억원	10.05억원	11.26억원	7.73억원	8.77억원	12.41억원	3.86억원
부수사건 소송대리 지원 (지원결정/ 소송종결)	580건	22건/8건	200건	30건/35건	20건	28건/23건	28건	12건/10건	28건	17건/17건
	2.2억원	0.05억원	0.76억원	0.76억원	0.08억원	0.17억원	0.13억원	0.09억원	0.14억원	0.03억원
송달료 등 실비	2,500건	66건	1,775건	45건	5,045건	72건	-	-	-	-
	0.9억원	20만원	0.63억원	0.63억원	1.31억원	0.01억원	-	-	-	-
홍보비	-	-	1.50억원	1.50억원	-	-	1억원*	-	-	-
예결산(합계)	11.5억원	1.64억원	6.04억원	6.04억원	11.44억원	11.44억원	8.86억원	8.86억원	12.55억원	3.89억원

주: 2023년에는 내역사업 변경을 통하여 홍보비 1억원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에 사용함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러나 2024년의 경우 9월말 기준 당초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계획 건수 5,965건 대비 32.4%에 해당하는 1,933건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예산 집행액도 12억 5,500만원 대비 31%에 해당하는 3억 8,900만원만 집행⁵⁴⁾된 상황임.

○ 이와 같이 선임 건수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①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수사·감독기관의 단속이 강화되었고, ② 채무자대리인 신청 이후로 자발적 또는 신청요건 불비 등의 사유로 취하되는 건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밝힘.

- 경찰청은 2022년 11월부터 불법채권추심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54) 2024년에 집행된 3억 8,900만원에는 2023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하였으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당해에 지급하지 못하여 2024년에 지급한 5,200만원도 포함되어 있음.

진행⁵⁵⁾중이며,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모두 불법사금융업에 대한 수사·단속·조사⁵⁶⁾를 적극 실시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신청시 상대 전화번호 등은 필수요건이
나 SNS를 통한 불법추심은 전화번호 불명으로 신청단계에서 반려
되어 신청요건 불비 등의 사유로 취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임.

○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4년 7
월 5일부터 채무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⁵⁷⁾으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⁵⁸⁾하였음.

- 다만, 확대 방안 발표 이후 2024년 10월 5일 기준 3개월 간 관계인
지원 신청 건수는 33건(17명), 실제 지원 실적은 6건(4명)으로 지원
금액은 42만원에 불과함.

55) (검거건수) ('22)1,179건 → ('23)1,404건 → ('24.7월)1,073건
(검거인원) ('22)2,073명 → ('23)2,195명 → ('24.7월)1,687명

56) 국세청: 2차례에 걸쳐 불사금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체납·자금출처 조사하여, 총 1,467억원 추정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23.5~10월) 운영하여 503건을 수사의뢰

57)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되고 온라인 수단을 이용하여 가족·지인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등의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되고 있어 관계인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관련 설문조사
결과 불법추심 유형으로는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지인 추심)'가 72.2%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반영하였음.

5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불법추심피해를 입은 가족(동거인 포함)·지인(직장동료 등)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7.4.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은 사업 첫 해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저조한 실적을 보이면서 예산이 불용되었으나, 이후 선임 지원 건수가 증가하면서 3분기 내에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의 경우 다시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수사·감독기관의 단속 강화, 경제 및 금리 변화로 인한 연체 건수 감소 등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향후 동 사업의 성과가 낮아질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에 편성된 예산 및 2025년도에 확정되는 예산이 적절히 활용되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산업은행 출자사업 총괄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2025년 예산안의 산업은행출자사업은 정책모펀드 구성에 소요되는 중앙정부 부담분을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을 통해 경유 출자하기 위한 사업과 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분되며,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800억원(82.4%)이 증가한 6,200억원 규모임.
- 2025년 예산안에는 원전산업성장펀드(400억원)와 반도체생태계펀드(300억원) 구성을 위한 출자사업과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을 위한 사업(2,500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음.

〈2025년도 산업은행출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정책 모펀드 구성	산업은행출자 (혁신성장펀드)	300,000	240,000	200,000	△ 40,000	△ 16.7
	산업은행출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	100,000	100,000	-	-
	산업은행출자 (원전산업성장펀드)	-	-	40,000	40,000	순증
	산업은행출자 (반도체생태계펀드)	-	-	30,000	30,000	순증
산업은행출자 (반도체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	-	250,000	250,000	순증
합 계		300,000	340,000	620,000	280,000	82.4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한국산업은행 출자를 통한 재정모펀드 조성사업

금융위원회(정부)가 한국산업은행을 경유하여 모펀드에 출자한 뒤, 한국산업은행 유상 감자의 어려움을 이유로 출자금을 다시 재정에 회수하지 않고 부처 내 협의를 거쳐 다른 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매년 회수재원 규모 및 회수재원 투자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추가적인 국회통제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재정과 민간 자본을 결합하여 과소투자 영역에 마중물을 공급함으로써 민간 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8년도부터 산업은행을 경유출자⁵⁹⁾하는 방식으로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본과 매칭하여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⁶⁰⁾방식의 재정모펀드 조성사업을 추진해왔음.

○ 2024년까지 성장지원펀드, 소부장혁신펀드, 기업구조혁신펀드, 뉴딜펀드, 혁신성장펀드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을 통해 경유출자된 재정 규모는 총 2조 6,525억원(예산액 기준)에 이르며, 2025년에도 재정모펀드 조성을 위해 3,700억원을 산업은행 경유출자 예산으로 편성하였음.

59) 이전까지 산업은행 경유출자는 타 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선박해양 등) 자본금 출자를 위한 것이었음.

60) 재간접펀드(Fund of Funds): 자산운용사가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재투자하는 펀드(한경 경제용어사전)

재간접펀드 방식의 정책펀드는 예산편성 및 결산방식에서 벗어나 회수재원 재투자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자펀드에 분산투자하여 투자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으나, 모펀드 존속기간이 끝날 때까지 국고 회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한국산업은행 경유출자를 통한 재정모펀드 조성사업 현황〉

(단위: 억원)

사업명	모펀드명	예산반영기간 (계획)	총 재정투입액 (~'24)	2025 예산안	모펀드 청산시기
산업은행출자 (혁신모험펀드, 일반회계)	성장지원펀드	2018-2020년	3,200	-	2033.6.
산업은행출자 (혁신모험펀드, 소부장특별회계)	소부장 혁신펀드	2020-2021년	4,400	-	2035.4.
산업은행출자 (기업구조혁신펀드)	기업구조 혁신펀드	2020-2021년	1,425	-	2036.6.
산업은행출자 (뉴딜펀드)	뉴딜펀드	2021-2022년	11,100	-	2047.7.
산업은행출자 (혁신성장펀드)	혁신성장펀드	2023-2027년	5,400	2,000	2047.7.
산업은행출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2024-2028년	1,000	1,000	2049. 8.
산업은행출자 (반도체생태계펀드)	반도체생태계 펀드	2025-2027년	-	300	-
산업은행출자 (원전산업성장펀드)	원전산업 성장펀드	2025	-	400	-
합 계			26,525	3,700	

주: 각 년도 예산액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런데 대표적인 재간접펀드인 중소기업모태펀드의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벤처투자가 결성하는 재정을 한국모
태펀드(벤처투자모태조합)에 직접 출자하고 있는 것과 달리⁶¹⁾, 금융위

6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한국벤처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 등에 대하여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1. 개인투자조합
2. 벤처투자조합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4.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원회 소관기관인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재정을 직접 출자할 수 있는 별도의 모펀드 결성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한국산업은행 등에 재정을 출자하고, 한국산업은행 등이 이를 모펀드에 재출자하는 경유출자방식을 채택하고 있음.⁶²⁾⁶³⁾

〈 출자방식에 따른 재간접펀드의 출자 구조 〉

중소기업모태펀드 출자구조	부처 → 한국모태펀드 (한국벤처투자) → 자펀드
금융위원회 펀드 (혁신성장펀드 등) 출자구조	부처 → 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 모펀드 → 자펀드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런데 2018년 이후 조성된 정책펀드의 자펀드 청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경유출자 기관인 산업은행이 모펀드 청산 전 발생한 회수액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같은 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③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활성화 등 정책 목적에 따라 모태조합의 자산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④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에 모태조합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모태조합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하는 자

62) 다만, 국회의 요구에 따라 재정이 한국산업은행의 여유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 한국산업은행은 경유 출자금을 한국산업은행의 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음.

63) 한국산업은행 출자 펀드(혁신성장펀드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펀드(기업구조혁신펀드) 외에, 국토교통부의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출자 펀드(GIF펀드, PIS펀드)도 경유출자방식의 재간접펀드임..

(자펀드 청산분배금)을 누적회수재원으로 관리하고,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국회에서 모펀드 청산 분배금의 국고 환수 절차를 마련하고, 증가하는 누적회수재원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⁶⁴⁾이 있었음.

〈 재정출자 정책모펀드 원금 회수흐름 추정 〉

(단위: 억원)

구분	~'22	'23	'24(E)	'25(E)	'26~'30(E)	'31(E)~	합계	만기
성장지원펀드	536	310	291	246	1,811	6	3,200	2033년
소부장혁신	172	197	585	472	2,951	23	4,400	2035년
기업구조혁신 펀드	10	23	134	-	1,045	213	1,425	2036년
뉴딜펀드	2	30	158	822	5,862	4,226	11,100	2047년
소 계	720	560	1,168	1,540	11,669	4,468	20,125	
누적 합계	720	1,280	2,448	3,988	15,657	20,125		

주: 시장환경 및 자펀드 회수 실적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금융위원회)

- 이에 정부는 산업은행이 보유하는 재정모펀드 회수재원은 국고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수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건전재정 기조 등을 고려하여 국고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이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정모펀드 회수재원을 금융

64) 산업은행 출자를 통한 재정모펀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이후 지속적으로 모펀드 청산 및 채투자과 관련하여 국회의 지적이 있었음.

<각 년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으로 배분되는 모펀드 청산 분배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절차, 모펀드의 채투자내역에 대한 국회 보고 절차, 모펀드 운용사의 보수규정 등을 포함하는 펀드 출자관리규정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① 금융위원회 및 한국산업은행은 회수재원 재출자와 관련하여 재출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국고 반환이 어려운 이유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보고하며, 회수재원 규모와 활용방안, 채투자 분야, 재정모펀드의 성과평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조치를 할 것(제도개선) ② 한국산업은행은 재정출자 펀드에 대한 회수액 관리 및 처리 방식을 규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위원회 소관 재정 출자사업의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⁶⁵⁾을 마련하고,

- 2024년도 혁신성장펀드사업 필요예산액 3,000억원 중 600억원은 기존 성장지원펀드와 소부장혁신펀드 회수액을 활용하고, 2024년 예산안에는 2,400억원만 편성하였으며, 2025년에도 필요 예산액 3,000억원 중 1,000억원은 모펀드 회수예정액⁶⁶⁾을 활용하여 재투자하기로 하고, 2,000억원만을 예산안에 편성하였음.

〈한국산업은행 출자를 통한 정책펀드 회수액^{주1)}〉

(단위: 억원)

구 분	성장지원펀드	소부장혁신펀드	뉴딜펀드	기업구조혁신펀드 ^{주3)}	혁신성장펀드	합 계
총 재정투입액	3,200	4,400	11,100	1,425	6,000	26,125
회수액 ^{주2)}	1,130	789	173	167	-	2,259
회수액 중 국고반납액	-	-	-	-	-	-
회수액 중 2024년 재투자액	450	150	-	-	-	600
회수액 중 2025년 재투자 예정액	1,000 ^{주4)}			-	-	1,000

주1) 회수액은 '24.9월말 기준

주2) 정책펀드 회수액은 자펀드 청산 및 투자금 회수 등으로 인해 모펀드로 분배된 금액을 의미함

주3) 기업구조혁신펀드는 구조조정 목적의 펀드로 혁신성장펀드와 조성목적이 달라 회수재원을 혁신성장펀드에 재투자하지 않기로 함

주4) 재투자 예정액 1,000억원은 성장지원펀드, 소부장펀드, 뉴딜펀드의 누적회수재원 활용하여 총당 예정

(자료: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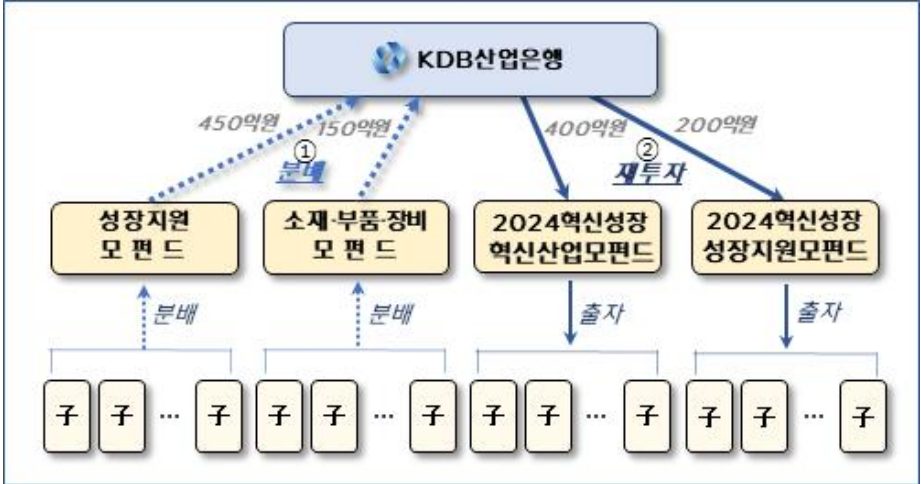
○ 이에 따른 현재 재투자 방식을 보면, 각 재정모펀드는 자펀드로부터 회수한 재원 중 재투자(예정)액을 모펀드 출자자인 산업은행에 분배

65) 「재정모펀드 운영 지침」(산업은행)

66) 펀드 투자재원의 회수는 대출원리금과 달리 정해진 회수스케줄이 없으며, 투자대상으로부터의 배당, 투자대상의 M&A,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하므로 회수금액은 유동적임.

하고(①), 산업은행은 각 재정모펀드로부터 분배받은 재원을 회수 당
일67)에 차년도 재정 출자사업의 재정모펀드에 재투자하고 있음(②).

〈'24년 재정모펀드 회수자금 재투자 흐름〉



(자료: 금융위원회)

○ 산업은행을 경유하여 출자한 모펀드로부터 회수된 재원을 국고로
반환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 자본금의 유상감자를 실시해야 하는
데, 정부는 자본금 감자는 통상 결손보존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투자자 및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주게 되므로68) 산업은행 감자
를 통한 출자금 국고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융
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은행이 협의하여 회수재원을 금융위원회
소관 타 모펀드 조성사업 출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임.

□ 그러나 정부가 한국산업은행을 경유하여 모펀드에 출자한 뒤, 한국산
업은행 유상감자의 어려움을 이유로 출자금을 다시 재정에 회수하지

67) 재정모펀드 회수재원을 산업은행 고유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해 회수일 즉시 재투자하고 있음.
68) 또한, 금융위원회는 채권자(해외의 산은채권 투자자 등)가 감자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경우 변제해야 하
는 등 정책금융의 수행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않고 부처 내 협의를 거쳐 다른 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것은 각 모펀드 출자사업을 심사하는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⁶⁹⁾ 정부가 산업은행 경유 출자금을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 없도록 매년 회수재원 규모 및 회수재원 투자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등 추가적인 국회통제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69) 2024년까지 2조가 넘는 규모의 예산이 경유출자방식의 재정모펀드 조성사업에 투입되었고, 정책모펀드 조성사업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향후 그 규모는 점차 확대될 것임.

8.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⁷⁰⁾: 집행실적을 고려한 적정 예산규모 논의 필요 등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⁷¹⁾ 및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여 민간투자 마중물을 위한 모펀드를 조성하고, 모펀드가 민간, 개별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자펀드를 결성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로 발굴한 개별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모펀드 조성에 소요되는 2차년도 중앙정부 부담분을 한국산업은행에 출자하기 위하여, 2025년에는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000억원이 편성됨.

〈2025년도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산업은행 출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	100,000	100,000	0	0

(자료: 금융위원회)

- 정부는 2023년 7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용 방안’⁷²⁾을 마련하여 재정의존도가 높은 단발적·소규모 지역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지역활성화

70) 세부사업: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2414-320)

71) 지방자치단체 공동기금인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의미함.

72)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3.7.12.

투자 펀드를 출범하였음.

-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로 발굴한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중앙정부가 마중물 투자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간 (2024년~2028년) 총 1조 5,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매년 중앙정부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⁷³⁾과 한국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을 출자할 계획으로, 2024년부터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되고 있음.

- 조성된 모펀드와 민간투자자가 출자하여 자펀드를 결성하되⁷⁴⁾, 지방자치단체도 원하는 경우에는 자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결성된 자펀드는 광역시 또는 도의 지역개발 프로젝트⁷⁵⁾에 총사업비의 20% 이내로 투자(출자 또는 대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 때, 지역개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project Financing, 이하 ‘PF’)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시행사, 건설사 등) 및 금융기관 등이 자본금을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을 설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개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추진 주체인 SPC의 출자금과 자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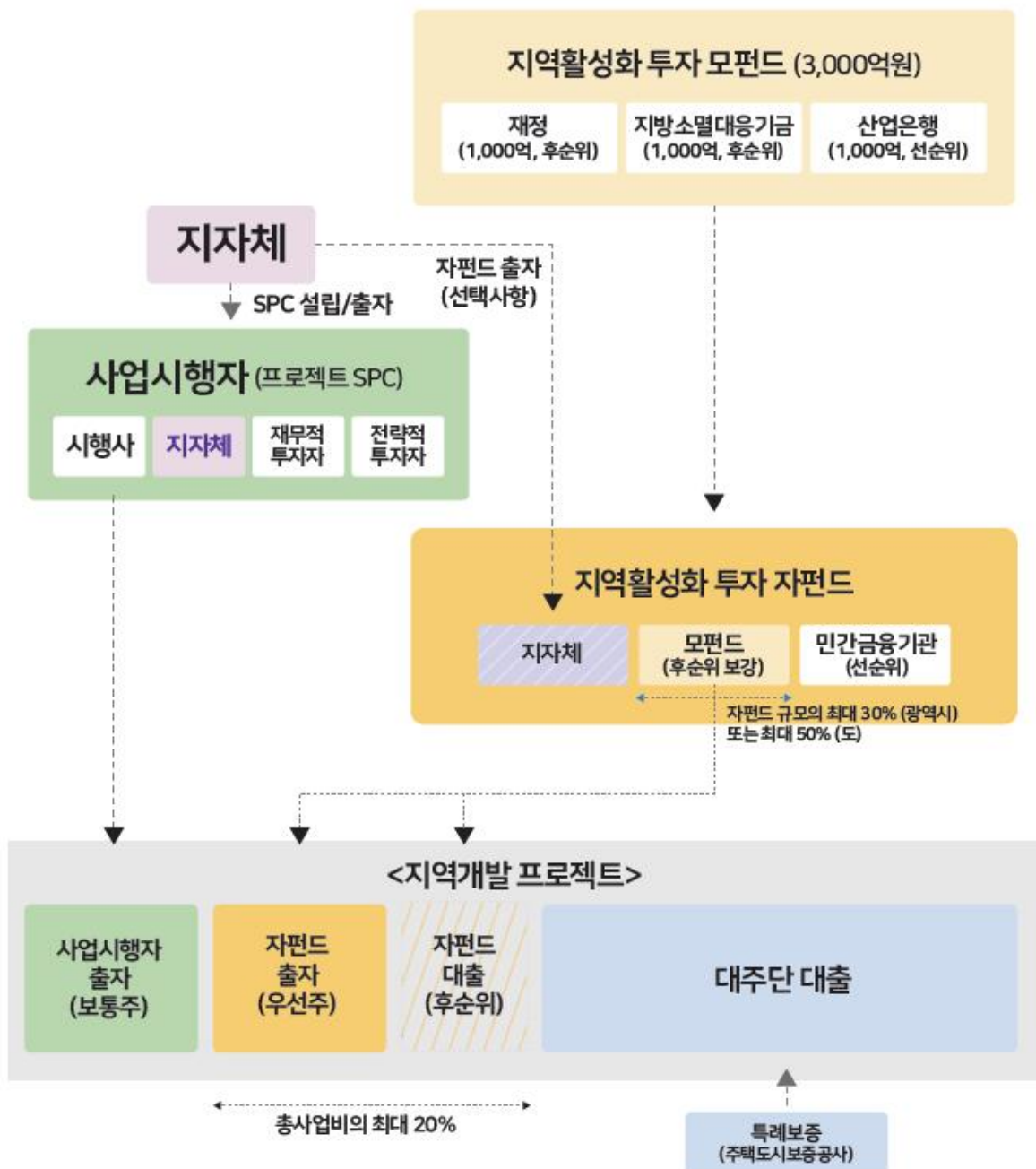
73)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낙후지역 등의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22년부터 신설된 기금임.

74) 모펀드는 광역시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전체 결성 규모의 30%까지, 도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50%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 후속조치 주요내용」).

75) 펀드의 취지와 공익성 등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광역지자체가 자유롭게 프로젝트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수도권 소재, 향락시설, 단순 분양형 사업 등은 제외(「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 후속조치 주요내용」)

드 투자금(출자, 대출), PF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며, PF 대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특례 보증을 제공하여 보다 낮은 금리의 대규모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구조도〉



(자료: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종합안내, 기획재정부)

2) 검토의견

(1) 집행실적을 고려한 2025년도 예산안 규모 심사 필요

2024년도 프로젝트 선정 및 자펀드 결성 실적, 연도 내 출자가능한 모펀드 투자액과 2025년에 집행가능한 모펀드 가용액을 고려하여 2차년도 사업 예산의 적정 규모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동 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9월말 현재 3건의 지역개발프로젝트가 선정되었으며, 각 프로젝트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 2024년 선정 지역활성화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명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	구미 국가산업 구조고도화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위치	단양군 단양읍	경북 구미시 공단동 일원	전남 여수 묘도
참여지자체	충청북도, 단양군	경상북도, 구미시	전라남도, 여주시
투자기간	'24년~'26년(준공)	'24년~'27년(준공)	'24년~'28년(준공)
프로젝트 내용	단양역 역세권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호텔 및 어드벤처 시설 개발)	노후화된 구미 1국가산업단지에 입주기업 임직원 등을 위한 신규 주거시설 건립	연간 300만톤 규모의 LNG를 여수·광양 국가산단에 공급하기 위한 접안시설, LNG 저장탱크 및 기화설비 등 구축
총사업비	1,133억원	1,239억원	1조 4,362억원
선정	'24.2	'24.2	'24.8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 그런데 3건의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자펀드를 현재 결성하고 있으며, 결성이 완료된 자펀드는 없음.⁷⁶⁾

76)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이 완료되었거나 완료예정인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며, 자펀드는 지방의회의 예산편성 및 의결과 인·허가 등의 절차가 종료된 후 결성이 완료됨.(지역활성화투자

○ 정부는 3건의 프로젝트 자펀드가 연도 내에 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10월 말 현재까지 자펀드 결성이 완료되지 않았고, 자펀드 결성은 관련 인·허가 등과 민간 투자자금 조달 등을 거쳐야 완료가 가능하므로 연도 내 자펀드 결성 가능성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특히, 12월에 자펀드 결성 최종 기한⁷⁷⁾이 도래하는 1차 프로젝트 2건⁷⁸⁾은 연도 내에 결성이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자펀드는 미결성된 것으로 하여 자펀드 선정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임.

□ 올해 선정된 3개 프로젝트의 자펀드가 연도 내에 결성된다 하더라도, 자펀드는 지역개발프로젝트 총사업비(총 1조 6,734억원)의 최대 20% (총 3,343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모펀드는 자펀드 규모(총 3,343억원)의 최대 50%(도 프로젝트 기준)⁷⁹⁾까지 출자할 수 있으므로, 2024년도 모펀드 조성액 3,000억원 중 최대 약 1,674억원 만이 연도 내에 자펀드로 출자될 수 있음.⁸⁰⁾

펀드 종합안내, 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투자팀)

77) 펀드 결성시한은 최종 선정일로부터 최초 4개월 이내,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협의를 통해 3개월씩 2회, 최대 6개월 연장(총 10개월)이 가능함. 따라서 2024년 2월에 선정된 2개의 프로젝트는 2회 연장을 통해 12월까지 자펀드를 조성하여야 하며, 8월에 선정된 1개 프로젝트는 연장이 없으면 12월까지 자펀드를 조성하여야 하며, 연장 조치를 통해 최대 2025년 6월까지 자펀드 결성이 완료되어야 함.

78) 펀드 결성시한은 최종 선정일로부터 최초 4개월 이내,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협의를 통해 3개월씩 2회, 최대 6개월 연장(총 10개월)이 가능함. 따라서 2024년 2월에 선정된 2개의 프로젝트는 2회 연장을 통해 12월까지 자펀드를 조성하여야 하며, 8월에 선정된 1개 프로젝트는 연장이 없으면 12월까지 자펀드를 조성하여야 하며, 연장 조치를 통해 최대 2025년 6월까지 자펀드 결성이 완료되어야 함.

79) 광역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자펀드 규모의 최대 30%까지 출자 가능

80) 참고로, 9월말 현재, 정부→산은 출자는 1,000억원 전액 이루어졌으나, 모펀드 출자 수요를 고려해 산은→모펀드 출자금은 현재 3억 2,500만원에 불과함. 현재 모펀드 조성액은 9억 7,500만원임_모펀드 운용보수, 판매신탁사무관리 보수 등 모펀드 설정에 따른 부대비용 지급을 위한 것임.

〈 연도 내 최대 자펀드 출자가능액 〉

(단위: 억원)

사 업 명	총사업비	자펀드 →프로젝트 ^{주1)}	모펀드 →자펀드 ^{주2)}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	1,133	222.6	113.3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1,239	247.8	123.9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14,362	2,872.7	1,436.4
합 계	16,734	3,343.1	1,673.6

주1)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20% 이내 투자 가능

주2) 자펀드 결성액의 50% 이내 출자 가능(도 프로젝트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 이와 같이 프로젝트 선정 및 자펀드 결성 부진으로 인해 2024년도 모펀드 조성액 3,000억원 중 1,326억의 가용자원이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에도 모펀드 3,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1,000억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연내 추가 프로젝트 선정 추이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2차년도 사업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 성과평가 계획 마련 등

지역활성화투자펀드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유사사업의 사례를 참고하여 성과계획서상 성과목표인 자펀드 조성실적을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사업 구조상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바, 정부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

한 계획을 마련·이행함으로써 그 결과를 환류하여 사업방식 개선 등에 활용하는 한편, 국회심사시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예산심사를 지원해야 할 것임.

- 동 사업은 사업구조가 복잡하고, 참여자가 다양할 뿐 아니라, 새롭게 도입되는 방식이어서 사업에 대한 외부적 통제와 평가가 어려우며,

모펀드 출자자 중 하나인 정부는 자펀드 결성, 프로젝트 선정, SPC 구성 등에 대해 전혀 관여할 수 없으므로, 프로젝트 개요 외에 사업성, 수요 확약 내용, 자금 조달 현황, 각 SPC 설립 경과 및 구성 현황 등 펀드의 재무·경영 정보를 별도로 보유하지 않아 동 사업의 핵심적인 집행과정에 대한 주요 정보가 국회에 제공되지 않음.

- 이에 따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 투입의 정당성, 규모의 적정성, 사업방식의 적절성, 사업의 성과 등에 대한 논의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정부는 이를 보완할 성과평가 방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동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성과계획서는 동 사업의 자펀드 조성규모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각 년도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사업의 일차적인 성과를 측정하기에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재정모펀드 조성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각 연도 예산에 따라 조성해야 하는 자펀드 규모를 성과목표로 설정⁸¹⁾하고 있는데, 지역활

81) <정책모펀드 사업 성과지표 사례 >

성화투자펀드는 2024년과 2025년 예산에 따라 조성해야 하는 자펀드의 최소 조성규모가 매년 6,000억원인데도⁸²⁾ 매년 750억원의 자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지역활성화투자펀드사업 성과지표 및 성과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펀드 조성실적 (단위: 억원)	목표				750	750	모펀드의 자펀드 앞 출자비율, 펀드 결성기간 등 감안	선정된 자펀드 운용사 펀드 결성금액	산업은행 제출자료
	실적				-	-			
	달성도				-	-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모펀드 투자기간 2년⁸³⁾, 자펀드 최초 선정 가능 시점 (매년 2월) 및 선정 후 펀드결성 평균 기간 7개월(최소 4개월, 최대 10개월)을 고려하여 매년 4분기부터 펀드 조성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해당 연도에 조성된 모펀드로 연도 내에 각 750억원의 자

사업명	'25 예산안	자펀드 조성규모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측정산식
혁신성장 펀드	2,000억원	3조원	펀드 조성실적 (백억원)	목표	400	400	300	300	300	선정된 위탁운용사 펀드 결성금액
				실적	644	539	394	-	-	
				달성도	161%	134%	131%	-	-	
반도체 생태계 펀드	300억원	1200억원	펀드 조성실적 (백억원)	목표	-	-	-	-	12	선정된 위탁운용사 펀드 결성금액
				실적	-	-	-	-	-	
				달성도	-	-	-	-	-	
원전산업 성장펀드	400억원	1000억원	펀드 조성실적 (백억원)	목표	-	-	-	-	10	선정된 위탁운용사 펀드 결성금액
				실적	-	-	-	-	-	
				달성도	-	-	-	-	-	

(자료: 금융위원회)

82) 모두 도(道) 프로젝트에 출자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모두 광역시 프로젝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펀드 조성규모는 1조원까지 확대될 수 있음.

83) 당초 2024년도 예산안 심사시, 모펀드 투자기간(2년)에 대해서는 설명되지 않음. 타 재정모펀드 조성사업의 경우, 모펀드의 매입기간을 장기(혁신성장펀드: 6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연도내 자펀드 결성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모펀드 투자기간을 단년도로 하고 있음. 이와 달리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2024년 모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에서 매입기간을 펀드 설정일로부터 2년 이내(출자자간 협의로 연장 가능)로 하고 있으나, 연도내 자펀드 결성 등의 조건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펀드를 조성하는 목표를 설정한 것임.⁸⁴⁾

-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재정모펀드 조성사업의 경우 당해 연도 예산 투입에 따른 자펀드 조성 예정액 전체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현재의 성과목표로는 각 연도에 조성해야 하는 자펀드 실적을 알 수 없으므로, 2차연도인 2025년 성과목표에는 출자 예산에 따라 조성해야 하는 자펀드 결성금액을 보다 현실적으로 산정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임.

8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금융위원회

【참고】 성과지표 설정 관련

- 모펀드 투자기간 2년, 자펀드 최초 선정 가능시점(매년 2월) 및 선정 후 펀드결성기간 평균 7개월(최소 4개월, 최대 10개월) 가정시 매년 4분기부터 펀드조성 개시 → 매분기 기준 각 750억원의 자펀드 조성 예상

- 매년 1.1~12.31을 측정대상기간으로 하는 성과지표의 특성상 '24년 및 '25년 성과지표 목표금액으로 750억원 설정*

* ('24년 예산분) '24년 750억원, '25년 누적 3,750억원, '26년 누적 6,000억원
('25년 예산분) '25년 750억원, '26년 누적 3,750억원, '27년 누적 6,000억원

9.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생태계펀드)⁸⁵⁾: 혁신성장펀드와의 관계 고려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생태계펀드)”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및 팹리스⁸⁶⁾ 분야의 집중 투자를 통한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전용펀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재정을 출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300억원이 신규로 반영됨.

〈2025년도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생태계펀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산업은행출자 (반도체생태계펀드)	-	-	30,000	30,000	순증

(자료: 금융위원회)

- 반도체생태계펀드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및 스케일업·M&A를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정부는 향후 3년간(2025년~2027년) 재정(2,000억원) 및 산업은행 자금(2,000억원)을 마중물로 민간자금(4,000억원)을 매칭하여 총 8,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여, 기 조성중인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생태계펀드와 함께 총 1조 1,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임.

85) 세부사업: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2414-320)

86) 시스템반도체의 설계와 개발만을 전문적으로 수행

〈신규 반도체생태계펀드 조성계획(안)〉

(단위: 억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재 정	300	850	850	2,000
정책금융(산업은행)	300	850	850	2,000
민 간	600	1,700	1,700	4,000
합 계	1,200	3,400	3,400	8,000

- 2023년부터 조성 중인 기존 반도체생태계펀드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한국산업은행과 반도체 분야 대기업 및 민간 출자금만으로 2025년까지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임.

〈기존 반도체생태계펀드 조성계획(안)〉

(단위: 억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정책금융(산은·기은 등)	140	305	305	750
반도체기업(삼성·SK)	60	345	345	750
민 간	200	650	650	1,500
합 계	400	1,300	1,300	3,000

2) 검토의견

반도체생태계펀드 조성사업에 관하여는 혁신성장펀드의 반도체 분야 투자 실적, 반도체생태계펀드와 혁신성장펀드의 경쟁관계, 혁신성장펀드를 활용한 반도체 분야 투자 촉진 가능성 등의 사항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반도체생태계펀드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도의 반도체 분야 섹터펀드를 조성할 필요성과 투자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이미 금융위원회 소관의 ‘혁신성장펀드’를 통해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상당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함.

○ 혁신성장펀드는 약정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주목적 투자분야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는데, 혁신성장펀드의 주목적 투자분야인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시스템반도체, AI칩 등을 포함하는 차세대반도체 분야가 포함되어 있어⁸⁷⁾ 혁신성장펀드를 통해서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음. 또한, 각 년도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에서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를 명시하고 있음.⁸⁸⁾

87) 혁신성장펀드는 신산업 및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혁신산업펀드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성장지원펀드로 구성되며, 혁신산업펀드는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해당 기업이나 ‘新성장 4.0’, ‘글로벌 초격차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분야에, 성장지원펀드는 일정 요건을 가진 중소·중견기업(에 각각 약정총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고 있음. 이 중 혁신산업펀드의 주목적 투자분야에 시스템반도체를 포함하는 차세대반도체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것임.

88)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 중 ‘반도체 분야’ 관련 내용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내역(일부 발췌)〉

테마	분야	포함품목
전기·전자	차세대반도체	3D집적회로, 전력반도체소자, 시스템반도체, AI칩,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장비, 자외선발광다이오드(UVLED) 램프

(자료: '혁신성장 공동기준' 일부 발췌)

- 이에 따른 2023년 '혁신성장펀드'의 반도체 관련 투자액은 710억원 (혁신산업 320억원, 성장지원 390억원)으로, 전체 투자액 5,686억 중 12.5%가 반도체 분야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범용펀드인 혁신성장펀드를 통해서도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상당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2023년 자펀드 조성액 3조원을 기준으로, 약 10%가 반도체 분야에 투자된다고 가정할 때, 매년 혁신성장펀드를 통해 3,000억원의 자금 이 반도체 분야에 투자될 수 있음.

〈'23년도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

① 미전략산업 지원을 통한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제고 지원

- 新성장 4.0, 글로벌 초격차 산업*, 미래유망산업** 등 국가전략산업분야의 성장잠재력 높은 유망 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투자

*우리기업이 세계 1위를 다투는 高부가 주력산업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현재는 미약하나 향후 시장잠재력이 큰 전략산업분야(바이오헬스, 수소, 디지털 등)

〈'24년도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

- 미래 전략산업으로서의 환경 및 AI(AI 반도체 등) 분야의 투자촉진 유도

- 환경·AI(AI반도체 등)를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운용사는 우선하여 운용사로 선정하여 자펀드 조성

*탄소중립·녹색경제 실현 관련 품목 또는 인공지능 관련 품목에 20% 이상 투자시 자펀드 운용사로 우선 선정(1,000억원 규모 펀드 1개씩 2개)

(자료: 각 년도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 일부 발췌)

〈 2023년 혁신성장펀드 분야별 투자 현황 〉

(단위 : 억원, 개)

구 분 ^{주1)}	혁신산업펀드		성장지원펀드		합 계	
	투자액	기업수	투자액	기업수	투자액	기업수
첨단제조 자동화	381	6	50	1	431	7
화학 신소재	50	1	-	-	50	1
에너지	400	1	50	1	450	2
환경지속가능	20	1	-	-	20	1
건강·진단	555	7	674	12	1,229	19
정보통신	241	6	455	9	696	15
전기·전자 ^{주2)}	320	2	450	3	770	5
차세대반도체	320	2	390	2	710	4
센서측정	-	-	60	1	60	1
지식서비스	460	3	299	7	759	10
기 타 ^{주3)}	556	8	665	2	1,221	10
합 계	2,983	35	2,703	36	5,686	71

주1) 혁신성장공동기준 9대 테마 기준

주2) 전기·전자 테마에 차세대반도체, 감성형인터페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능동형 조명, 차세대 컴퓨팅 분야가 포함되며, 대부분 차세대반도체 분야에 투자됨.

주3) 혁신성장공동기준 품목 외 투자

(자료: 금융위원회)

□ 둘째, 반도체 분야 투자에 있어서 반도체생태계펀드와 혁신성장펀드가 경쟁관계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반도체생태계펀드 투자 분야(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웨어리스)의 협소성과 리스크로 인해 범용펀드인 혁신성장펀드에 비해 민감자금 유치에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반도체생태계펀드의 정책출자비율(50%)을 혁신성장펀드의 정책출자비율(30%) 보다 높게 설정하였음.

○ 그런데 반도체생태계펀드의 주목적 투자비율을 혁신성장펀드와 동

일한 수준인 약정총액의 60%로 설정함에 따라, 반도체생태계펀드가 주목적 투자비율은 혁신성장펀드와 동일(60%)하면서 정책출자비율이 높다는 점(50%>30%)을 고려하여 혁신성장펀드를 통해 반도체에 투자하던 수요가 반도체생태계펀드로 이동할 수 있으며,

정책출자비율 30%로도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정책출자비율을 50%까지 상향한 별도의 반도체 분야 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정책펀드 주목적 투자비율〉

(단위: 억원)

정책펀드		정책		민간	출자비율		주목적 투자비율
		재정	산은·기은 공공기관		재정	정책	
섹터 펀드	원전성장펀드	400	300	300	40%	70%	50%
	반도체생태계펀드	300	300	1,200	25%	50%	60%
범용 펀드	혁신성장펀드	2,000	7,000 ^{주1)}	21,000	6.7%	30.0%	60% (유형별 차이有)

주1) 산업은행 자체출자 6,000억원과 재투자액 1,000억원을 합산한 금액임.

주: 2025년도 예산안 기준

□ 셋째, 범용펀드인 혁신성장펀드를 활용하여 반도체 분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섹터펀드를 신설하여 투자 분야를 한정하는 경우 분야별 투자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투자 분야의 시장상황에 따라 펀드의 성과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별도의 모펀드운용

사 선정 등 관리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범용펀드인 혁신성장펀드를 활용하여 반도체 분야 투자를 촉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재도 혁신성장펀드 운영시 일부 분야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정 분야를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운용사를 우선하여 선정⁸⁹⁾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반도체 분야 투자 자체에 대해 반도체생태계펀드와 혁신성장펀드간 차별성은 존재하지 않으나, ① 혁신성장펀드는 다수의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범용펀드로 반도체 분야에 투자를 한정할 수 없으나,⁹⁰⁾ 반도체생태계펀드는 주목적 투자 대상을 반도체 분야로 한정하는 섹터 펀드이므로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섹터펀드인 반도체생태계펀드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고, ②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패키징 분야의 협소성·리스크 고려시 민간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마중물 자금으로서 정책출자비율이 50% 수준이 되어야 하므로 혁신성장펀드의 정책출자비율은 30%로 활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임.

89) <'24년도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

- 환경·AI(AI반도체 등)를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운용사는 우선하여 운용사로 선정하여 자펀드 조성

*탄소중립·녹색경제 실현 관련 품목 또는 인공지능 관련 품목에 20% 이상 투자시 자펀드 운용사로 우선 선정(1,000억원 규모 펀드 1개씩 2개)

90) 산업은행은 유한책임사원(LP)이므로, 혁신성장펀드의 자펀드운용사에게 특정분야(예: 반도체 산업)의 투자를 강제할 수는 없음.

□ 따라서 동 사업에 대해서는 정혁신성장펀드의 반도체 분야 투자성과, 혁신성장펀드 운용사 선정 방식 개선을 통한 반도체 분야 투자 촉진가능성과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속적이고 폭넓은 투자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10.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⁹¹⁾:

현금 출자 및 대출 규모의 적정성 검토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은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 설비 투자 및 R&D 자금 등 시설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현금을 출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2,5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됨.

〈2025년도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산업은행 출자 (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	-	-	250,000	250,000	순증

(자료: 금융위원회)

-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24.5.23) 및 추진방안(’24.6.26)을 통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26조원 규모의 종합지원을 발표하고, 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17조원의 저리 대출프로그램(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하였음.

-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은 3년간 최대 2조원(현금 1조원,

91) 세부사업: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2414-320)

현물 1조원) 규모의 정부출자를 통해 산업은행의 대출공급 여력을 확충하여 국내에 신규투자하는 반도체 국내외 기업에 17조원 규모의 시설자금을 최저 국고채 수준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금융지원방안임.

〈 반도체 설비투자 특별지원 프로그램 개요 〉

(운용 목적) 반도체 산업의 제조역량 구축 지원 및 경쟁력 제고

(운용 기간) 2025년 ~ 2027년(3년)

* 2024.7월부터 저리대출 프로그램 가동 중

(지원 규모) 최대 2조원(현금 1조원+현물 1조원) 정부출자를 통해 산업은행 대출 공급 여력을 확충하여 17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지원

(단위: 억원)

구분	2025년	2026년 ~ 2027년	합계
운용규모	42,500	127,500	170,000
현금출자 요청액	2,500	7,500	10,000

*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 예정

(지원 대상) 국내에 신규투자하려는 반도체 전분야(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의 국내외 기업(중소·중견·대기업 포함)

(자금 용도) 설비, R&D 투자자금 등 시설자금(장기대출 위주) 지원, 기존 대출 대환이 아닌 신규투자에 대해 지원

(대출한도) 현행 「한국산업은행법」 상 동일계열 여신한도*까지 지원

* BIS개별자기자본(기본자본+후순위채 등 보완자본)×25%

(금리 조건) 국고채+가산금리(이용기업의 신용등급 및 담보조건 등에 따라 산업은행 조달금리 이하인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지원 가능)

*일반 한국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Delta 0.8 \sim \Delta 1.0\%p$, 중소·중견기업은 $\Delta 1.2 \sim \Delta 1.5\%p$ 우대

□ 한편, 산업은행은 내년 정부출자 연계 상품 출시 전까지 반도체 기업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재원을 활용한 저리대출 프로그램 2조원을 2024년 7월부터 이미 운영 중임.

○ 2024년 9월말 기준, 23개사로부터 약 1조 1,000억원의 대출 신청을 접수하여 17개사에 대해 8,248억원의 대출 승인이 완료되었음.

〈 산업은행 자체 재원을 통한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지원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개사	금액	만기	금리수준
대기업	1개사	5,000	3년	기준금리 + 0.20~0.25%
중견기업	5개사	2,148	1~10년	기준금리 + 0.21~0.77%
중소기업	9개사	1,100	5~13년	기준금리 + 0.27~1.42%
합 계	17개사	8,248	-	-

주: 2024.9월말 기준

(자료: 한국산업은행)

2) 검토의견

-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 특별지원프로그램)사업(2,500억원)은 기존 재정지원 정책자금으로부터 회수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정책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현금배당 규모 축소 등 자체적인 자구노력을 통한 현금출자 규모 감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 반도체 분야 신규대출 수요와 기존의 대출 지원 규모를 고려하여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규모(17조원)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의 일환인 동 사업에 대한 내용별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산업은행이 대출 등 기존 금융지원으로부터 회수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산업정책에 따른 정책자금 수요에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최근 10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등 산업은행 정책자금 공급을 위해 정부가 산업은행에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 규모는 약 7조 2,836억원(현금 2조 1,336억원, 현물 5조 2,500억원)⁹²⁾임.

이를 기반으로 시장 및 기업에 대해 지원된 대출, 투자, 보증 등이 회수되면, 회수된 재원은 산업은행의 일반대출 재원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반도체 등 정책자금 수요에 따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재정의 출자규모 감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근 10년 산업은행 정책자금공급을 위한 정부출자사업(경유출자제외)〉

(단위: 억원)

연도	현금출자	현물출자	용 도
2015	400	20,000	-설비투자펀드 지원 400: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이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중소·중견기업등의 설비투자자금을 저리로 지원(신용도에 따른 산출 대출금리에서 1%p 감면)함에 따른 예상손실분을 정부재정에서 자본금으로 출자 지원 -(현물)기투자 프로그램에 따른 자본보강 20,000: 다양한 방식의 자금지원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운용 규모 확대와 산업은행의 자산 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물 출자
2016	2,877	-	-설비투자펀드 지원 1,500 -기투자 프로그램에 따른 자본보강 1,377
2017	800	(2,500)	-4차산업혁명 파트너자금 지원 800: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 자체재원으로 2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자금 지원에 따른 산업은행의 BIS비율 하락 예상분 보전 -(현물)한국선박해양 출자금 지원 2,500 *한국선박해양(주) 설립 초기 자본금 출자

92) 2023년말 산업은행이 산정한 BIS 비율 민감도를 기준으로 할 때, BIS 비율 변동 없이 약 46.5조원의 대출 실행이 가능한 규모

연도	현금출자	현물출자	용도
2018	-	-	-
2019	4,550	-	-기업경영정상화 지원 4,000: 경영상황이 악화된 기업들의 재기 지원(2018년 한국GM에 대한 산업은행의 신규증자 8,090억원과 2018~2019년 STX조선해양에 대한 5,671억원의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승인에 따른 자본손실 및 BIS 비율 하락을 보전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400: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화, 신산업 등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출자 -환경안전투자 지원 150: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분야 관련 시설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이 기업에 저리로 대출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의 일부 보전 *산업은행·기업은행을 통해 3년간(2019~2021년) 총 5조원(산업은행: 2.5조원, 기업은행: 2.5조원)의 저리 대출자자금 공급
2020	7,776	-	-산업구조고도화지원 880 -환경안전투자 지원 375 -금융시장안정화 방안 6,521: 증권시장·채권시장 안정펀드 출자 및 LCC 긴급지원대책, 2차·5차 비상경제회의 관련 정책프로그램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BIS 비율 하락분 보전
2021	3,033	-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512 -환경안전투자 지원 225 -금융시장안정화 방안 2,296
2022	1,000	5,650	-KDB 탄소 넷제로 1,000: 국내 초기단계 탄소중립 핵심 기반분야(수소인프라 등)에 대출, 투자, 보증 지원 *기재부 소관, 산업은행출자(녹색금융) 사업 -(현물)산업은행 BIS 비율 제고 5,650
2023	400	4,350	-KDB 탄소 넷제로 400 -(현물)산업은행 BIS 비율 제고 4,350
2024	500	20,000	-KDB 탄소 넷제로 500 -(현물)산업은행 BIS 비율 제고 20,000
합계	21,336	52,500	

(자료: 산업은행 제출자료 및 각 년도 예산 및 결산 설명자료를 토대로 작성)

□ 둘째, 대규모 대출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산업은행의 건전성 비율을 유지하면서 17조원의 신규 저리 대출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대한 현금 및 현물출자 규모를 산정하였음.
- 2023년말 산업은행이 산정한 BIS 비율 민감도를 기준으로 할 때, 17조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할 경우 한국산업은행의 BIS비율은 약 68bp 하락⁹³⁾하며, 정부는 이 중 일부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금출자 1조 7,000억원(BIS비율 약 56bp 상승)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금출자 필요분 중 일부를 현물출자로 대체하여 현금 및 현물출자를 각 1조원(BIS비율 약 55bp 상승) 규모로 편성하였음.

〈 1조원 기준 주요 요인별 BIS비율 민감도 ('23년말 기준) 〉

요 인	현금출자	현물출자	대출 ^{주1)}
BIS비율 민감도	+33bp	+22bp	△ 4bp

주: BIS 비율 민감도는 한국산업은행의 BIS 비율 수준 및 대출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변동

주1) 산은 거래처 평균 신용등급(BBB-) 1년 신용대출 위험가중치 80.7% 기준

(자료: 한국산업은행)

- 다만, 현물출자⁹⁴⁾시 산업은행의 BIS비율 개선 등의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현물자산의 변동성으로 인해 산업은행의 재무건전성에 예측하지 못한 위험을 초래하는⁹⁵⁾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93) 1조원 대출시 4bp 하락하므로, 17조원 대출시 68bp(4bp×17) 하락

94) 2024년 7월 기준, 한국산업은행 자본금 약 26조 3천억원 중 약 15조 6천억원(59%)이 현물출자에 의한 것임.

95) 산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는 현물자산의 변동성으로 인해 산업은행의 재무건전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출자받은 기업에 손실이 나면 지분법 평가에 따라 그 손실이 지분률만큼 산업은행의 재무제표에 반영되므로, 출자 주식에 따라 산업은행의 BIS. 예를 들어, 산업은행은 한국전력의 최대 주주(32.9%)로, 한국전력이 1조원의 손실을 낼때마다 BIS비율 6bp가 낮아짐.)

있고, 현재 산업은행 법정자본금⁹⁶⁾에 여력이 없어⁹⁷⁾ 출자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규모 대출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산업은행은 최근 4년 동안 약 2조원 규모의 현금배당⁹⁸⁾을 실시한 바 있어, 배당 규모 축소 등을 통해 정책금융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한국산업은행의 연도별 정부 배당액 〉

(단위: 억원)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배당액	2,096	8,331	1,647	8,781	20,855

주: 전년도 실적에 따른 해당 연도 배당액

- 한편, 현행법상 현물출자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⁹⁹⁾ 이루어질 수 있으나, 국회가 산업은행 운영 및 정책금융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산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 실행시 현물출자 규모 및 대상, 사유, 출자로 인해 공급되는 정책자금 지원 내역 등을 지체없이

96) 「한국산업은행법」

제5조(자본금) ①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

97) 2024년 7월말 현재,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은 약 26조 3천억원으로, 현행 법정자본금 30조원 대비 87.6% 수준이며, 법정자본금 한도까지는 약 3조 7천억원의 여유가 있음.

- 참고로, 2025년 모펀드 조성을 위한 산업은행출자 예산은 3,700억원(반도체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제외)이며, 타 부처(과기부, 기재부) 산업은행출자 예산은 총 710억원임.

98) 산업은행의 배당률은 35.4%로, 금융지주 평균 27.12%, 기업은행 31.2% 등에 비해 높은 배당성향을 보임.

99)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②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¹⁰⁰⁾

□ 셋째, 지원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반도체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와 반도체 기업에 대한 기존의 대출 지원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금융위원회는 신규 설비 투자 수요 및 반도체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금융 수요가 충분하여 향후 3년간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저리대출 프로그램 공급 규모(17조원)를 모두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① 반도체 기업이 '47년까지 총 622조원 투자를 통해 팹 16기를 신설할 계획¹⁰¹⁾이고, ② 향후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해당기간('25~'28년) 중 연평균 약 47조원, 누적 약 190조원의 설비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어¹⁰²⁾ 향후 설비투자 수요가 충분할 뿐 아니라,
- ③ 산업은행이 '24.7월부터 자체재원으로 운영 중인 반도체 설비투자 특별지원 프로그램 상품이 출시 3개월만에 약 8,000억원 규모(17개사)로 승인된 바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 이용기업 17개사의 '23년말 차입금 규모가 28.9조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반도체 대출 프로그램

100) 동 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는 규모(1조원) 외에 출자 대상 현물과 시기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101)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산업부, '24.1월)

102) 글로벌 반도체 시장(매출액 기준)은 '22년 6,003억불 규모에서 연평균 9.2% 성장하여 '28년에는 8,229억불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연간 설비투자 규모도 '22년 1,825억불에서 매년 3.1% 증가한 '28년 2,006억불 수준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는 해당기간('25~'28년) 중 연평균 366억불(약 47조원), 누적 1,466억불(약 190조원)의 설비투자를 예상

* 출처 : Gartner('24.7월)

에 대한 금융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임.¹⁰³⁾

- 그러나 반도체 설비투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대환 대출이 아닌 신규투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반도체 분야 신규투자 수요가 중요한데, 반도체 신규투자 여부는 반도체 시장경기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향후 3년 내 17조원 규모 대출 프로그램의 소진 여부가 불확실하며, 이미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반도체 기업에 대해 대규모로 대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즉, 산업은행이 이미 2023년 중소·중견기업 대출프로그램 등을 통해 반도체 분야에 2조 893억원의 대출과 33억원의 보증을 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¹⁰⁴⁾하여 2024년 8월까지 2조 385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산업은행이 자체재원으로 운영 중인 상품 이용기업 17개사의 '23년말 차입금 규모가 28.9조원에 달하여, 이미 많은 자금이 민간을 통해 반도체기업에 조달되고 있을 뿐 아니라, 반도체 설비투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대환 대출이 아닌 신규투자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반도체 기업의 기존 차입금 규모는 신규 대출 수요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103) 다만, 별도의 수요조사가 있었던 것은 아님.

104) 초격차프로그램 금리우대 확대(3월) 및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출시(7월)

○ 반도체설비투자 특별지원프로그램의 수요가 예산편성시 예측한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대출 미실행액에 따른 출자금(자본손실분보전액)은 산업은행의 BIS 비율 제고에 활용되어 타 정책자금지원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¹⁰⁵⁾

□ 넷째, 산업은행의 최근 10년 금융지원 현황을 보면, 2014년 125조 8,726억원에서 2023년 268조 5,597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대규모 정책자금은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 특정 산업이나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나, 정책자금 공급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해당 부문으로의 원활한 민간자금유입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저해하여 유휴 민간자금의 흐름을 왜곡하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산업에 대한 불균형적인 보호는 시장원리에 따른 구조조정 및 민간의 혁신을 유인하지 못하여 장기적으로 시장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대규모 정책자금 공급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05) 2019년 STX조선해양에 대한 5억불 규모(5,671억원)의 선수금 환급보증에 따른 자본손실 및 BIS 비율 하락을 보전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1,384억원을 현금출자하였으나, 보증 수요가 당초 계획의 절반에 이르지 못하여 약 754억원의 출자금이 계획된 용도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산업은행의 BIS비율을 높이는 데에 사용됨.

〈 한국산업은행 금융지원 현황(2014년 이후) 〉

(단위 : 억원,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대출	집행	462,886	576,064	554,925	586,239	597,151	657,110	796,999	771,342	743,129	803,923
	잔액	932,881	1,240,026	1,237,348	1,220,342	1,216,374	1,286,395	1,456,720	1,586,101	1,772,568	1,786,967
보증	집행	35,872	74,802	25,481	29,593	39,598	46,022	41,470	68,025	81,046	54,384
	잔액	88,974	128,990	109,727	83,921	86,400	88,389	82,809	114,396	142,413	158,018
투자	집행	61,900	99,627	61,685	58,198	75,863	72,131	113,573	60,981	73,107	61,039
	잔액	236,871	576,197	510,119	485,979	507,304	504,268	597,812	697,604	698,542	740,612
총계	집행	560,658	750,493	642,091	674,030	712,612	775,263	952,042	900,348	897,282	919,346
	잔액	1,258,726	1,945,213	1,857,194	1,790,242	1,810,078	1,879,052	2,137,341	2,398,101	2,613,523	2,685,597

(자료: 한국산업은행)

11. 산업은행 출자(원전산업성장펀드)¹⁰⁶⁾: 주목적 투자비율 상향 검토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산업은행 출자(원전산업성장펀드)”는 원전생태계를 정상화하고 원전 사업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원전산업성장펀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재정을 출자하는 단년도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400억원이 신규로 반영됨.

〈2025년도 산업은행 출자(원전산업성장펀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산업은행출자 (원전산업성장펀드)	-	-	40,000	40,000	순증

(자료: 금융위원회)

-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SMR 시장 진출 마중물 지원을 위해 SMR 등 원전산업 신기술 분야 정책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발표함.¹⁰⁷⁾
- 이에 따라 2025년 신규로 추진될 예정인 원전산업성장펀드는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이하 “SMR”)¹⁰⁸⁾ 등 원전 관련 분야를 영위 중인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정부는 재정(400억원)과 한

106) 세부사업: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2414-320)

107) 관계부처 합동, 관광·원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2024.4.15.

108) 원자로 계통을 모듈화, 단순화한 전기출력 300MWe급 소형원자로로, 피동형 안전계통(전원차단시에도 원자로 냉각 유지가 가능한 자연순환 방식의 냉각방식) 채택이 가능하여 안전성이 높고, 산업적 활용도가 큰 특징이 있음.

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 공공기관 자금(300억원)¹⁰⁹⁾을 마중물로 민간 자금 300억원을 매칭하여 2025년 중 총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임. 투자 분야(원자력 발전 분야)가 협소하여 민간자금 매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반영하여 민간매칭 비중을 30%로 설정하고 있음.

〈원전산업성장펀드 조성계획(안)〉

(단위: 억원)

구 분	재정	원자력 공공기관	민간	합계
출자규모	400	300	300	1,000

2) 검토의견

원전산업성장펀드는 재정 및 공공기관 출자 비율에 비해 주목적 투자비율이 낮은 바, 민간투자 마중물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주목적 투자비율의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범용펀드에 비해 투자 분야가 비교적 한정되어 있는 섹터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특정 분야의 시장을 조성해야 하는 정책적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실패로 인해 해당 분야에 대한 민간자금 조달이 부족(Funding Gap)한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임.¹¹⁰⁾

109) 한수원은 300억원 규모로 펀드 출자를 위한 관련 절차(자체 예산반영, 출자 관련 관계부처 협의 및 이사회 의결 등)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펀드에 최종 출자할 계획임

* 한수원의 최종 출자금액은 관계부처 협의 및 이사회 결과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110) 섹터펀드는 정책 목표(특정 산업 육성)와의 연계성이 강하여 해당 산업의 성장가능성을 높이며, 특화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운용팀이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원전 분야 섹터펀드는 i) 정부가 글로벌 SMR 시장의 성장 전망¹¹¹⁾에 대응하여 범용펀드인 혁신성장펀드를 통해서도 SMR 분야 투자가 가능하도록 혁신성장펀드의 투자 기준인 혁신성장공동기준에 SMR을 신규로 포함(2023년)하였으나, 아직 투자사례가 없고, ii) SMR 등 원전 분야의 협소성 및 높은 투자리스크로 인해 향후에도 범용펀드를 통한 원전 분야 투자자금 조달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전 분야 투자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임.

□ 섹터펀드는 민간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체로 범용펀드에 비해 다소 높은 정책출자비율을 설정하되,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주목적 투자비율 등)를 마련하고 있으며,

○ 원전산업성장펀드도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주목적 투자비율을 설정하고 있는데,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약정총액의 50% 이상, 이 중 SMR 분야에는 50% 이상 투자하도록 하여 원전 분야, 특히 SMR 분야에 대해 투자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고 있음.

□ 원전산업성장펀드의 정책출자비율(70%)과 주목적 투자비율(50% 이상)을 2025년도 산업은행출자를 통해 조성하는 타 정책펀드와 비교해보면, 정책출자비율은 타 펀드에 비해 높으면서도, 주목적투자비율은 섹터펀드

111)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원은 최대 5천억달러(∼'35), 캐나다 천연자원부는 3천억달러(∼'40) 규모의 SMR 시장 전망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미국·영국·프랑스 등 세계 17개국에서 80종 이상의 SMR을 개발 중이며, 대부분 '30년대 전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인 반도체생태계펀드 뿐 아니라 범용펀드인 혁신성장펀드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으로, 정책출자비율(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정책펀드 정책출자비율 및 주목적 투자비율〉

(단위: 억원)

정책펀드		정책		민간	출자비율		주목적 투자비율
		재정	산은·기은 공공기관		재정	정책	
섹터 펀드	원전성장펀드	400	300	300	40%	70%	50%
	반도체생태계펀드	300	300	1,200	25%	60%	60%
범용 펀드	혁신성장펀드	2,000	7,000 ^{주1)}	21,000	6.7%	30.0%	60% (유형별 차이有)

주1) 산업은행 자체출자 6,000억원과 재투자액 1,000억원을 합산한 금액임.

주: 2025년도 예산안 기준

□ 원전산업성장펀드는 재정 400억원과 한국수력원자력 출자액 300억원, 민간출자액 300억원으로 구성하는데, 펀드조성액 1,000억원 중 원자력 발전 분야 투자 금액은 500억원 이상, 이 중 SMR 분야 투자금액은 25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정책출자금(700억원)보다 더 적은 금액이 원전 분야에 투자되고, 민간 유입자금은 원전 분야에 투자되지 않을 수 있어 원전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마중물로서의 기능이 약한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현재 SMR 산업은 시장 초기 형성 단계로 투자대상이 타 산업 대비 다소 협소한 점을 감안하여, 민간자본 투자 유인을 위해 주목적 투자 비율(50%)을 다소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으

로, 주목적 투자 비율을 과도하게 높게 산정할 경우, 운용사가 지원하지 않거나 민간출자자 모집이 저조하여 펀드 조성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을 우려하고 있음.

- 한국수력원자력의 에너지혁신성장펀드('20.5월~)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펀드 규모(445억) 대비 민간 출자(125억) 비중은 28%에 불과하나 주목적 투자비율을 50%로 설정하였다는 것임.

〈 원전산업 성장펀드 및 에너지혁신성장펀드 비교 〉

구 분	원전산업 성장펀드	에너지 혁신성장펀드
조성목적	SMR 등 원전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초격차 기술력 확보 등 경쟁력 강화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원전 산업계 이탈을 방지하고, 원전 생태계를 유지·보완하며, 원전 해체산업 육성
조성목표(규모)	1,000억원 (정부 400억원, 한수원 300억원, 기타 민간 출자 300억원)	445억원('20.11월) (한수원 300억원, 공기업 20억원, 기타 민간 출자 125억원)
주목적 투자 분야(비율)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50% 이상 투자(이중, SMR 분야에 50% 이상 투자)	원전 해체 및 유관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50% 이상 투자
모펀드 운용사	산업은행이 공모로 선정 예정	포스코기술투자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이 조성한 에너지혁신성장펀드의 경우, 455억 원 중 406억원을 투자하였는데, 이 중 258억원(투자액 대비 63.5%, 조성액 대비 56.7%)을 원전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한 바 있고,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SMR 투자 수요 조사 결과, SMR 등 원전 분야 투자 계획(500억원 이상)의 3배 이상의 수요를 확인하였음¹¹²⁾을 고려할 때,

원전성장지원펀드의 주목적투자비율을 정책출자비율보다 낮게 산정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112) 원산협회 수요조사(‘24.2월) 결과, SMR 분야에 총 1,581억원의 투자 수요 확인(중소·중견)

12.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¹¹³⁾: 정부 출자금모 조정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매입 비용 일부를 출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00억원(51.5%) 증가한 5,000억원이 편성됨.

〈2025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280,000	330,000	500,000	170,000	51.5

(자료: 금융위원회)

- 동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하였거나 곧 발생할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 관련 채권을 매입하여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새출발기금’을 신설하였음.

- 채무조정의 방식은 두 가지인데, ① 부실차주의 신용·보증 채권은 ‘매

113) 세부사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2432-303)

입형'(한국자산관리공사) 방식으로, ② 부실차주의 담보채권 및 부실 우려차주에 대하여는 '중개형'(신용회복위원회) 방식으로 지원함.

- 매입형은 새출발기금이 협약가입 금융회사¹¹⁴⁾로부터 대출채권¹¹⁵⁾을 매입하여 순부채를 감면하는 등 직접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중개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안을 바탕으로 협약가입 금융회사의 동의 하에 이자율 인하 등의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인데, 채권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이 이를 매입하여 채권자로 참여하게 됨.

□ 2024년 9월 기준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매입형의 경우 원금은 약 70%, 이자는 100% 감면되며, 중개형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약 5%p가 인하 되는 것으로 나타남.

< 매입형 및 중개형 지원 현황 >

(2024년 9월 기준)

구 분		매입형			중개형			
		부실차주(신용·보증채권)			부실차주(담보채권)		부실우려차주	
		원금 감면율	이자 감면율	분할 년수	이자율 인하(%p)	분할 년수	이자율 인하(%p)	분할 년수
2022년	4/4분기	69.8%	100%	8.7	5.3%	15.3	5.2%	9.8
2023년	1/4분기	70.0%	100%	9.1	5.8%	13.8	4.3%	10.2
	2/4분기	69.9%	100%	9.4	6.2%	15.9	4.7%	10.2
	3/4분기	70.2%	100%	9.4	6.4%	15.8	4.5%	10.3
	4/4분기	71.3%	100%	9.5	5.6%	15.3	4.4%	10.3
2024년	1/4분기	70.4%	100%	9.5	5.2%	16.9	4.2%	10.2
	2/4분기	70.6%	100%	9.6	5.9%	15.4	5.0%	10.2
	3/4분기	70.8%	100%	9.3	6.6%	14.9	5.0%	10.3

(자료: 금융위원회)

114) 2024년 8월 기준 2,667개 기관

115) 채무조정 한도는 총 15억원으로 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이며, ①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과 ② 채무조정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불가. 단, 신청일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채무 30% 이하인 경우는 가능

□ 또한, 새출발기금의 채권매입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10월 사업 시작 이후 약 2년간의 총 부실채권매입액은 6조 911억원이며, 이 채권매입을 위해 실제 사용된 금액은 2조 6,798억원임.

〈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실적 〉

(단위 : 억원, 2024년 9월 기준)

연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2	채권매입액	(‘22.10. 새출발기금 출범)									-	750	2,202
	매입가액										-	364	500
2023	채권매입액	1,693	2,222	1,777	2,114	2,130	1,859	576	2,784	2,819	2,868	2,695	2,608
	매입가액	406	611	826	947	976	796	311	1,432	1,410	1,320	1,119	1,155
2024	채권매입액	2,520	2,525	2,900	3,076	3,464	4,257	4,933	3,991	4,148			
	매입가액	1,209	1,158	1,350	1,306	1,596	1,861	2,313	1,830	2,004			
합 계		총 채권매입가액 26,798억원 / 총 부실채권매입액 60,911억원 (채권매입가율 44.0%)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 2024년 2월 지원대상 확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사업주 → 코로나19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2020.4.~2023.11. 중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

* 2024년 9월 지원대상 확대: 2020.4.~2023.11. 중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 → 2020.4.~2024.6. 중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

2) 검토의견: 정부 출자규모 조정 필요

새출발기금의 실제 부도율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부도율을 상향조정해 정부 출자 총 규모를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업비 분담 실적이 저조한 점, 새출발기금이 매입한 채권의 실제 손실 발생은 10년 이후에나 현실화되므로 사업 초기에 정부 출자 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부 출자규모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정부는 당초 2022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받아 총 30조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매입비용 18조원은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분담하기로 하였는데,
 - 이중 14조 4,000억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예상 부도발생률 20%를 적용하여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3조 6,000억원은 정부가 자본금 출자를 통해 보충한다는 계획이었음.
- 이 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정부는 총 1조 7,100억 원을 출자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총 1조 4,800억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하였음.

〈새출발기금 관련 정부 출자 및 공사채 발행 규모〉

(단위: 억원, 2024년 9월 기준)

구 분	'22년	'23년	'24년	투입합계	'25년계획
정부 출자(예산)	11,000*	2,800	3,300	17,100	5,000
공사채발행	-	3,600	11,200	14,800	미정
합 계	11,000	6,400	14,500	31,900	-

주: 현물출자 5,000억원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¹¹⁶⁾의 일환으로 2024년 9월에 새출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였음.

〈새출발기금 사업계획 변경 내역〉

구 분	종전	2024.9. 계획변경
지원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2020.4.-2023.11. 중 영업한 사업주	2020.4.-2024.6. 중 영업한 사업주 (7개월 확대)
새출발기금 신청기간	2025.10.까지	2026.12.까지 (15개월 연장)
부실차주 채무감면 범위	순부채의 60~80%, (취약계층은 90%까지)	순부채의 60~80%, 취업·재창업 교육이수 시 최대 10%p상향 (취약계층은 90%까지)
채무조정 제외 대상채무	영업과 무관한 개인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 등	
	신청일 6개월 이내의 신규대출 및 대환대출	신청일 6개월 이내의 신규대출 (대환대출은 채무조정 가능)
	단, 부실차주의 총채무 30%이하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가능	단, 총채무 30%이하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가능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 지원대상 사업영위 기간을 7개월 확대하고, 채무조정 신청기간도 15개월 연장하였으며,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채무를 최대 10%p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조정 신

116)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2024.7.3., 관계부처 합동

청일 기준 6개월 이내의 대환대출 뿐만 아니라 총 채무액 30% 이하의 신규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였음.

- 이와 같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부실채권 매입규모도 종전 ‘30조 원’에서 ‘33.4조원’으로 확대되었는데, 채권매입 소요재원은 종전 18조원에서 13.6조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였음.
- 이는 소요재원 산정 시 적용되는 채권매입가율을 종전 60%에서 40.7%로 하향조정 하였기 때문으로, 새출발기금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실제 채권매입가율을 반영해 현실화한 것으로 보임.

〈새출발기금 자원계획 변경 내역〉

구 분	종전	2024.9. 계획변경
부실채권 매입 규모	30조원	33.4조원
채권매입 소요재원	$\frac{18\text{조원}}{30\text{조원}} \times 60\%(\text{채권매입가율})$	$\frac{13.6\text{조원}}{33.4\text{조원}} \times 40.7\%(\text{채권매입가율})$
정부 출자 규모	$\frac{3.6\text{조원}}{18\text{조원}} \times 20\%(\text{예상부도율})$	$\frac{4.01\text{조원}}{13.6\text{조원}} \times 29.5\%(\text{예상부도율})$
공사채 발행 규모	$\frac{14.4\text{조원}}{18\text{조원}} - \text{정부출자금}$	$\frac{9.59\text{조원}}{13.6\text{조원}} - \text{정부출자금}$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 그런데, 채권매입 소요재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출자 규모는 종전 3.6조원에서 4.01조원으로 오히려 증액되었음.
- 이는 당초 계획상 새출발기금의 손실 가능성을 고려해, 예상부도율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 출자를 통해 보전하기로 하였는데, 이 예상부도율을 29.5%로 상향조정하였기 때문임.

-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시 일반적으로 1년~3년의 거치기간을 설정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새출발기금의 정확한 부도율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유사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에 따른 손실률을 참고하여 부도율을 산정하였다고 설명함.
 - 그러나 최초 제도 설계 시에도 유사 채무조정프로그램의 부도율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 이전과 달리 새출발기금의 실제 부도율도 아닌 유사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참조해 부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음.
- 또한, 2025년도 예산안과 같이 새출발기금에 정부가 5,000억원을 추가 출자할 경우 목표 대비 정부 출자 실적은 55.1%에 이르는 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사채 발행 규모는 목표 대비 2024년 9월 기준 15.43%에 머물러 있어,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간의 사업비 분담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정부출자 및 공사채발행 규모 비교 〉

(단위 : 억원)

구 분	2024.9.변경 목표규모	2024.9.까지 투입 실적	목표 대비 실적	2025년 투입계획	총투입 (예상)	목표 대비 실적(예상)
정부 출자	40,100	17,100	42.6%	5,000	22,100	55.1%
공사채 발행	95,900	14,800	15.43%	미정	-	-

□ 한편, 새출발기금 운용계획 상 채무 상황과 관련하여 1년~3년의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10~20년의 장기 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 부실(우려)차주가 제때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 시
작 후 최소 10년 이후에나 매입채권에 대해 실제 손실이 발생한다
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 초기에 정부 출자 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임.

□ 새출발기금의 실제 부도율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부도율을
상향조정해 정부 출자 총 규모를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업비 분담 실적이 저조한 점, 새출발기
금이 매입한 채권의 실제 손실 발생은 10년 이후에나 현실화되므로
사업 초기에 정부 출자 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출자규모 감액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13.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 구축¹¹⁷⁾: 포렌식 장비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 구축” 사업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24.7.)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4억 3,000만 원이 신규 반영됨.

〈2025년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 감	
		본 예산	추경(A)		(B-A)	(B-A)/A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 구축	-	-	-	430	430	순증
가상자산 디지털 포렌식 장비 도입	-	-	-	265	265	순증
온체인 거래 분석 서비스 이용료	-	-	-	165	165	순증

(자료: 금융위원회)

- ☐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불공정거래는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자기발행 자산 매매 등¹¹⁸⁾이며,

117) 세부사업: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 구축(7135-322)

11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 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호 생략)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제절차는 “① 이상거래 상시 감시 및 모니터링 → ②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 → ③ 조치안 마련 및 금융위원회 의결 → ④ 수사기관 통보·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 조치”로 이루어짐.

-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 상시 감시를 수행하고, 발견된 이상거래에 대해 심리하여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역할을 수행함.119)

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가상자산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짝 후 매매를 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가상자산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짝 후 매매를 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의 매매를 할 때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⑤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으로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약속한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2. 가상자산의 특성으로 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불가피하게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불공정거래 행위의 방지 또는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경우

11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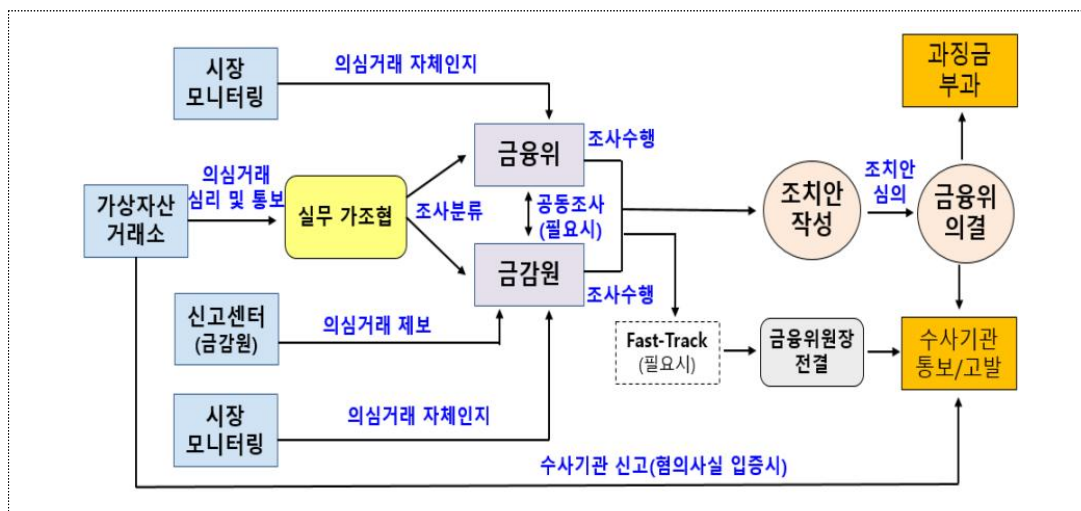
제12조(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①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10조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를 위반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전반을 총괄·조정하고, 불공정 거래행위 혐의에 대한 직접 조사 업무를 수행함.¹²⁰⁾

○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업무를 위탁받아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활동 등을 수행함.¹²¹⁾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및 제재 절차〉



(자료: 금융위원회)

120)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
3.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제10조를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2.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을 통한 업무·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12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이 사업은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는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가상자산 디지털 포렌식 장비 도입 사업과 온체인 거래 분석 서비스 이용료 사업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가상자산 디지털 포렌식 장비 도입” 사업은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자의 휴대폰·컴퓨터 디스크를 분석함으로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또는 시세조종 과정에서의 공모 혐의 등을 밝혀내기 위한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2억 6,500만원의 자산취득비(430-01목)가 신규 반영됨.

○ “온체인 거래 분석 서비스 이용료” 사업은 가상자산의 가명성에 따른 자금 추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내에 저장된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온체인¹²²⁾ 데이터 분석 솔루션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1억 6,500만원의 일반수용비(210-01목)가 신규 반영됨.

122) 오프체인이란 블록체인 이외의 외부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방식을 뜻함.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으로는 온체인(On-chain)과 오프체인(Off-chain)으로 나뉘는데, 온체인은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방식을 의미함(출처: [시사금융용어] 오프체인(Off-Chain), 연합뉴스인포맥스(<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0358>), 2022. 11. 27)

2) 검토의견 : 포렌식 장비의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단에서 포렌식 시스템의 활용 실적이 저조했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인력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함양 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포렌식 시스템의 활용을 위하여 2017년부터 모바일포렌식(2017년, 2020년), 디스크포렌식(2020년), 클라우드포렌식(2022년)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구축하였음.

〈자본시장조사단 포렌식 시스템 도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도입일자	개수	예산액	집행액	이용부서
모바일 포렌식	2017.4.	1	128	88	조사부서
	2020.8.	2	286	276	조사부서
	2023.12.	2	222	217	수사부서
디스크 포렌식	2020.8.	1	61	60	조사부서
	2023.12.	2	37	37	수사부서
클라우드 포렌식	2022.9.	2	41	40	조사부서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러나, 자본시장조사단의 포렌식 시스템 활용한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도입한 디스크 포렌식 시스템은 2022년까지 활용되지 않았고, 2022년 9월 도입한 클라우드 포렌식은 2023년 상반기까지 활용실적이 없었으며, 이에 국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금융위원회는 포

렌식 장비 도입 시 운용인력 확보 여부 및 필요성을 검토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이미 도입한 포렌식 장비의 활용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시정요구하였음.

- 당시 포렌식 시스템 활용실적 부진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 타 부처와 달리 포렌식 장비 관리·운용을 위한 전문인력 및 조직이 없는데, 디스크 포렌식의 경우 운용 난이도가 높아 전문교육(최소 3개월 소요)이 선행되어야 하나 인력 부족으로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¹²³⁾

〈자본시장조사단 포렌식 시스템 활용 실적〉

(단위: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6.
모바일 포렌식	80	81	63	49	34	19	232	24
자체 포렌식	80	81	63	49	28	19	232	24
대검찰청 의뢰	-	-	-	-	6	-	-	-
디스크 포렌식	32	7	1	-	10	15	36	64
자체 포렌식	-	-	-	-	-	-	14	64
대검찰청 의뢰	32	7	1	-	10	15	22	-
클라우드 포렌식	-	-	-	-	-	-	2	1
자체 포렌식	-	-	-	-	-	-	2	1
대검찰청 의뢰	-	-	-	-	-	-	-	-
합 계	112	88	64	49	44	34	270	89

주: 2023년 모바일포렌식에 유심 포렌식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1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부처별 I)」, 2023.8. pp. 339~340.

- 한편, 금융위원회는 내년에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 모바일 및 디스크 등에서 증거 데이터 추출 및 삭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 포렌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가상자산 포렌식 시스템 주요기능〉

기능	내용
모바일 포렌식	○ 각종 스마트폰의 통합 증거 데이터 추출 및 추출된 스마트폰 증거 데이터 정밀 분석
디스크 포렌식	○ HDD, USB 등 각종 저장 디스크에서 증거 데이터 추출 및 추출된 증거 데이터 정밀 분석
파일 복구	○ 증거 데이터 및 파일을 복구하여 삭제된 주요 혐의 증거를 도출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런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수행하는 인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수행 인력(26명)에 비해 크게 부족한 5명¹²⁴⁾에 불과하고, 조사 담당자 중 포렌식 시스템 사용경험이 있는 인력은 1명에 불과한 실정임.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포렌식 활용실적의 부진 원인이 전문인력의 부족에 기인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담당자 전문 교육 등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포렌식 시스템의 활용실적이 저조했던 사례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시스템의 구축비용 및 향후 소요될 유지보수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124) 가상자산 정책·제도 총괄,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 및 사건처리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 업무는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디지털금융정책관 가상자산과에서 수행하며, 정원은 총 9명임. 이 중, 조사인력은 가상자산과 소속 공무원 4인 및 파견 검찰수사관 1명 등 총 5명임.

〈자본시장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가상자산	자본시장	
			조사	조사	수사
금융위원회 (자체인력)	서기관		1	2	-
	사무관		1	6	2
	주무관		2	6	1
	소계		4	14	3
파견인력	법무부(검찰)	수사관	1	5	2
	금융감독원	수석/선임	-	3	4
	한국거래소	차장	-	2	-
	예금보험공사	차장/선임	-	-	1
	한국증권금융	과장	-	1	-
	한국예탁결제원	과장	-	1	-
	소계		1	12	7
총 원			5	26	10

(자료: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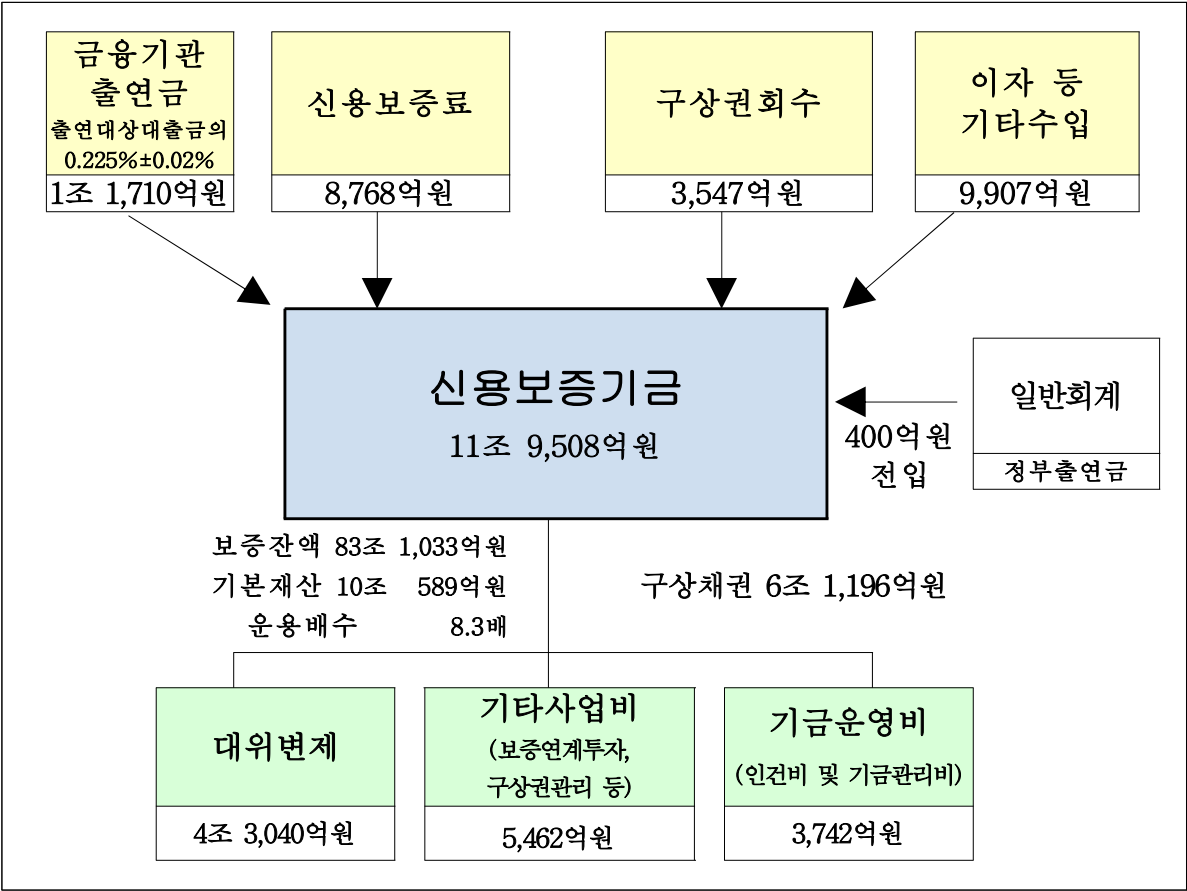
□ 그러므로, 금융위원회는 포렌식 시스템이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인력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함양 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제2장 신용보증기금

I. 개 요

□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1976년에 설치되었으며, 2024년 9월 말 기준 보증잔액은 81조 3,384억원, 보증업체수는 52만 2,287개임.

〈2025년도 신용보증기금 주요 수입·지출 항목〉



(자료: 금융위원회)

- 2025년도 신용보증기금 운용 규모는 11조 9,508억원으로, 금융기관 출연금(1조 1,710억원), 신용보증료(8,768억원), 구상권 회수(3,547억원), 이자 등 기타수입(9,907억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 이를 대위변제(4조 3,040억원), 기금운영비(3,742억원), 보증연계투자 등 기타사업비(5,462억원)에 지출할 계획으로 있음.
- 최근 5년간 기금의 운용규모 추이를 보면, 2021년 9조 6,668억원 수준에서 2022년 12조 9,881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후 2023년 12조 3,287억원, 2024년 11조 4,703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025년 11조 9,508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음.

1. 수입계획안

- 2025년도 신용보증기금 수입계획안은 11조 9,507억 5,900만원으로 2024년 수정계획 대비 4,804억 8,400만원(4.2%) 증액 편성됨.

〈2025년도 신용보증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도 계획안(B)	증 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10,465,063	11,470,275	11,470,275	11,950,759	480,484	4.2
□ 재산수입	242,632	223,370	223,370	181,828	△41,542	△18.6
□ 경상이전수입	2,002,014	1,972,300	1,972,300	2,227,484	255,184	12.9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913,807	1,172,303	1,172,303	980,618	△191,685	△16.4
□ 관유물매각대	64	7	7	3,255	3,248	46,400.0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6,971,548	8,022,295	8,022,295	8,517,574	495,279	6.2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334,998	80,000	80,000	40,000	△40,000	△50.0

(자료: 금융위원회)

- ‘재산수입’은 기금의 예치금, 유가증권 등에 대한 이자수입, 투자 배당금, 건물대여료 등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치금 및 유가증권 이자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415억 4,200만원(18.6%) 감소한 1,818억 2,800만원이 편성됨.
- ‘경상이전수입’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구상권 회수, 공탁금 반환, 매출 채권 상환 수입, 새출발기금 채권매각대금 등으로, 출연대상 대출금 증가에 따른 금융기관 출연금 증가, 팩토링금융 사업 확대에 따른

매출채권 상환 수입 증가 및 매출받기금 채권매각 수입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551억 8,400만원(12.9%) 증가한 2조 2,274억 8,400만원이 편성됨.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은 신용보증료, 수수료, 위탁보증부담금, 고정 자산 매각 이익 등으로, 대환보증 신규 공급 종료에 따른 보증료 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916억 8,500만원(16.4%) 감소한 9,806억 1,800만원이 편성됨.
- ‘관유물매각대’는 고정자산 매각 수입, 무형자산 매각 수입 등으로 업무용 건물 및 토지 매각 수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2억 4,800만원 (46,400%) 증가한 32억 5,500만원이 편성됨.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는 국공채매각대,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등 여유자금회수에 따른 수입으로, 여유자금 만기도래 규모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4,952억 7,900만원(6.2%) 증가한 8조 5,175억 7,400만원이 편성됨.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는 정부출연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관련 수입으로, 정부출연금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400억원(50.0%) 감소한 400억원이 편성됨.

2. 지출계획안

1) 총괄

- 2025년도 신용보증기금 지출계획안은 11조 9,507억 5,900만원으로 2024년 수정계획 대비 4,804억 8,400만원(4.2%) 증액 편성됨.

〈2025년도 신용보증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10,465,063	11,470,275	11,470,275	11,950,759	480,484	4.2
□ 사업비	2,703,024	4,116,079	4,116,079	4,850,144	734,065	17.8
○ 신보대위변제	2,287,255	3,565,457	3,565,457	4,303,979	738,522	20.7
○ 기타사업비	415,769	550,622	550,622	546,165	△4,457	△0.8
□ 기금운영비	407,820	367,551	367,703	374,229	6,526	1.8
○ 인건비	265,840	275,035	275,035	285,770	10,735	3.9
○ 기타운영비	141,980	92,516	92,668	88,459	△4,209	△4.5
□ 여유자금운용	7,354,219	6,986,645	6,986,493	6,726,386	△260,107	△3.7

(자료: 금융위원회)

- 신용보증기금의 사업비 계획안은 4조 8,501억 4,400만원으로 대위변제 증가 및 팩토링금융 확대 등으로 인해 2024년도 계획 대비 7,340억 6,500만원(17.8%) 증가하였으며,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3,742억 2,900만원으로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2024년도 계획 대비 65억 2,600만원(1.8%) 증가함.
- 2025년도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6조 7,263억 8,600만원으로 2024년도 계획 대비 2,601억 700만원(3.7%) 감소함.

□ 최근 5년간 신용보증기금의 프로그램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본경비성 프로그램인 기금운영비와 여유자금성 프로그램을 제외한 사업비는 모두 신용보증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음.

〈최근 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별 지출계획 내역〉

(단위: 억원, %)

프로그램명	2020년		2021년		2022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신용보증금융지원(2400)	23,877	25,441	28,746	28,997	31,899	33,240
기금운영비(3300)	3,544	3,557	3,604	3,604	3,695	3,770
기금간거래(예탁금)(9000)	-	2,500	-	-	-	-
여유자금운용(9700)	49,006	75,508	63,512	64,067	85,287	92,871
합 계	76,427	107,006	95,862	96,668	120,881	129,881
프로그램명	2023년		2024년		2025년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계획안	
신용보증금융지원(2400)	36,935	37,351	41,161	41,161	48,502	
기금운영비(3300)	3,700	4,134	3,676	3,677	3,742	
기금간거래(예탁금)(9000)	-	-	-	-	-	
여유자금운용(9700)	82,652	81,802	69,866	69,865	67,264	
합 계	123,287	123,287	114,703	114,703	119,508	

(자료: 금융위원회)

2) 사업비

□ 2025년도 신용보증기금 소관 사업비 계획안은 4조 8,501억 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340억 6,500만원(17.8%)이 증가됨.

○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도 계획 대비 일반보증 대위변제 2,867억 8,200만원(12.2%), 대환보증 대위변제 4,594억 8,500만원(180.6%), 팩토링 금융 501억 1,100만원(33.4%)이 증액 편성되고, 신규사업으로 신용보증제도 조사·연구 12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2,075억 2,800만원(37.4%), 보증료환급 352억 7,300만원(26.8%), 이차보전 지원 310억 4,200만원(69.1%)이 감액 편성되었음.

〈2025년도 신용보증기금 사업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도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 사업비	2,703,024	4,116,079	4,116,079	4,850,144	734,065	17.8
○ 신보대위변제	2,287,255	3,565,457	3,565,457	4,303,979	738,522	20.7
- 일반보증 대위변제	1,720,522	2,358,443	2,358,443	2,645,225	286,782	12.2
-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34,590	397,104	397,104	596,887	199,783	50.3
-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507,355	555,474	555,474	347,946	△207,528	△37.4
- 대환보증 대위변제	24,788	254,436	254,436	713,921	459,485	180.6
○ 기타사업비	415,769	550,622	550,622	546,165	△4,457	△0.8
- 보증료환급	95,873	131,650	131,650	96,377	△35,273	△26.8
- 구상권관리	60,107	99,462	99,462	99,462	-	-
- 업무용건물	4,707	11,900	11,900	14,294	2,394	20.1
- 경영지도	15,952	18,710	18,710	20,252	1,542	8.2
- 보증연계투자	66,578	67,540	67,540	67,540	-	-
- 미래성장성평가	1,922	2,335	2,335	6,335	4,000	171.3
- 프론트윈운영	5,569	6,720	6,720	7,060	340	5.1
- 이차보전지원	56,802	44,893	44,893	13,851	△31,042	△69.1
- 팩토링금융	89,980	150,049	150,049	200,160	50,111	33.4
- 신용정보(정보화)	2,301	1,364	1,364	2,034	670	49.1
- 신용보증제도 조사·연구	-	-	-	1,294	1,294	순증
- 신보IT운영(정보화)	15,978	15,999	15,999	17,506	1,507	9.4

(자료: 금융위원회)

- ‘일반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부실률 증가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2,867억 8,200만원(12.2%) 증가한 2조 6,452억 2,500만원이 편성됨.
-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기부실금액 및 부실발생 예상금액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997억 8,300만원(50.3%) 증가한 5,968억 8,700만원이 편성됨.
-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보증잔액 감소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2,075억 2,800만원(37.4%) 감소한 3,479억 4,600만원이 편성됨.
-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부실발생 예상금액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4,594억 8,500만원(180.6%) 증가한 7,139억 2,100만원이 편성됨.
- ‘보증료환급’ 사업은 보증기간 중 선취한 보증료를 중도해지 시 환급하여 주는 의무적 지출로, 보증해지 추이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352억 7,300만원(26.8%) 감소한 963억 7,700만원이 편성됨.
- ‘구상권관리’ 사업은 부실발생기업 및 대위변제기업 등에 대하여 채권 보전조치, 소송, 채권회수활동 등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전년 수준과 동일한 994억 6,200만원이 편성됨.
- ‘업무용건물’ 사업은 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노후지점 건물 수선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23억 9,400만원(20.1%) 증가한 142억 9,400만원이 편성됨.
- ‘경영지도’ 사업은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컨설팅, 경영혁

신형 중소기업 인증, 창업종합지원 등의 사업으로, 전년 대비 15억 4,200만원(8.2%) 증가한 202억 5,200만원이 편성됨.

- ‘보증연계투자’ 사업은 미래가치 및 성장가능성은 높으나 민간으로부터 투자자금 조달이 어려운 창업·혁신형기업 등에 대한 투자지원 사업으로서 전년 수준과 동일한 675억 4,000만원이 편성됨.
- ‘미래성장성평가’ 사업은 기업의 양적·질적 성장가능성을 결합한 미래성장성평가 체계 등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미래성장성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출장비 및 연구용역비 이관,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으로서 원활한 평가 수행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40억원(171.3%) 증가한 63억 3,500만원이 편성됨.
- ‘프론트원운영’ 사업은 전문 창업 보육공간인 프론트원 건물의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3억 4,000만원(5.1%) 증가한 70억 6,000만원이 편성됨.
- ‘이차보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 대출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대상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지원이 순차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310억 4,200만원(69.1%) 감소한 138억 5,100만원이 편성됨.
- ‘팩토링금융’ 사업은 구매기업의 신용거래위험 확산 방지를 위해 판매기업의 상거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는 사업으로, 팩토링

공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501억 1,100만원(33.4%) 증가한 2,001억 6,000만원이 편성됨.

- ‘신용정보(정보화)’ 사업은 중소기업의 데이터 경쟁력 향상을 위한 빅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개방 데이터의 최신화 등을 위해 전년 대비 6억 7,000만원(49.1%) 증가한 20억 3,400만원이 편성됨.
- ‘신용보증제도 조사·연구’ 사업은 국내·외 연구 및 제도 전파 등을 통해 신용보증제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보형 금융교육 수행을 통해 금융소비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12억 9,400만원이 편성됨.
- ‘신보IT운영(정보화)’ 사업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서, 디지털 혁신 추진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5억 700만원(9.4%) 증가한 175억 600만원이 편성됨.

3) 기금운영비

- 2025년도 신용보증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3,742억 2,900만원으로,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5억 2,600만원 (1.8%) 증가함.

〈2025년도 신용보증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기금운영비	407,820	367,551	367,703	374,229	6,526	1.8
○ 인건비	265,840	275,035	275,035	285,770	10,735	3.9
○ 기타운영비	141,980	92,516	92,668	88,459	△4,209	△4.5
- 기금관리비	122,462	92,516	92,668	88,459	△4,209	△4.5
- 선급법인세	19,518	-	-	-	-	-

(자료: 금융위원회)

- ‘인건비’는 인력증원에 따른 추가소요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7억 3,500만원(3.9%) 증가한 2,857억 7,000만원이 편성됨.
- ‘기금관리비’는 전년 대비 42억 900만원(4.5%) 감소한 884억 5,900만원이 편성됨.

4) 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은 신용보증기금의 총수입액 중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자금을 정기예금, 연기금투자폴, 국채, 금융채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2,601억 700만원(3.7%) 감소한 6조 7,263억 8,6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운용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여유자금운용	7,354,219	6,986,645	6,986,493	6,726,386	△260,107	△3.7
○ 정기예금	1,945,640	2,995,669	2,995,517	2,438,062	△557,455	△18.6
○ 연기금투자폴	3,780,000	2,926,910	2,926,910	3,506,872	579,962	19.8
○ 국채	846,998	401,980	401,980	306,738	△95,242	△23.7
○ 국채외채권(금융채 등)	606,638	488,683	488,683	343,255	△145,428	△29.8
○ 기타유가증권	174,943	173,403	173,403	131,459	△41,944	△24.2

(자료: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운용 수익률 추이〉

(단위: %)

자산별	2020	2021	2022	2023	2024.9.	2025(전망)
□ 예치금	1.75	1.27	2.16	3.89	4.31	3.84
□ 채권	2.34	△0.15	△1.86	6.38	4.81	3.47
□ 수익증권	3.96	0.17	△4.38	8.15	6.61	4.03
계	2.61	0.63	△0.63	6.04	5.58	3.90

(자료: 금융위원회)

3. 주요경영지표계획

- 2025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은 일반보증 61.3조원, 소상공인 위탁보증 0.3조원, 대환보증 8.6조원, 유동화회사보증 12.9조원 등 83.1조원 규모로 운용할 예정임. 이는 2024년 대비 3조 9,136억원 감소한 수준으로, '22.1월 신규 공급 종료된 소상공인 위탁보증 해지 증가와 코로나 19 및 복합 위기 대응과정에서 확대된 보증규모의 점진적 정상화 등을 감안한 것임.
- 2025년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은 2024년 계획(전망치) 대비 1조 620억원 감소한 10조 589억원 수준으로 운용배수는 8.3배로 예상됨.

〈2025년도 신용보증기금 주요경영지표 계획안〉

(단위: 억원, %, 배)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도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 보증공급	669,483	732,726	743,243	653,403	△89,840	△12.1
□ 보증잔액	816,227	862,663	870,169	831,033	△39,136	△4.5
□ 기본재산	117,227	90,983	111,209	100,589	△10,620	△9.5
□ 운용배수	7.0	9.5	7.8	8.3	0.5	6.4

주: 총보증 기준

〈최근 신용보증기금 주요경영지표〉

(단위: 억원, 배)

구 분	2018년 결산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 보증공급	470,550	490,878	653,758	652,866	646,493	669,483
□ 보증잔액	505,317	522,161	671,531	785,888	833,689	816,227
□ 기본재산	50,909	53,377	81,922	88,791	105,482	117,227
□ 운용배수	9.9	9.8	8.2	8.9	7.9	7.0

주: 총보증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II. 검토의견

1. 기타경상이전수입¹²⁵⁾: 팩토링 매출채권의 자금 회전기간을 고려하여 감액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구상채권 회수금, 선급법인세 환수, 공탁금반환 등 각종 반환금 수입을 계상한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226억 5,800만원(16.1%)이 증가한 8,839억 8,3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계획안〉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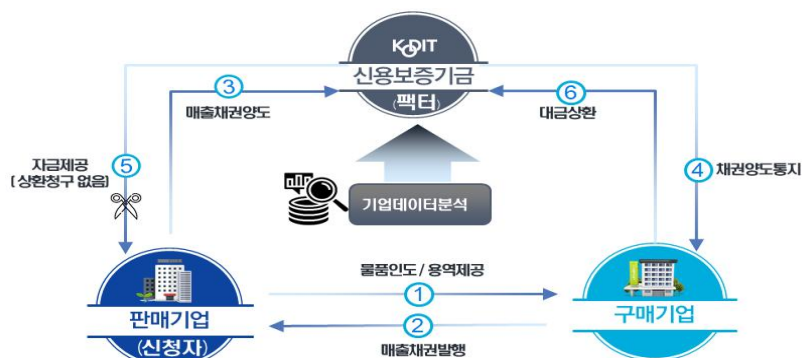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기타경상이전수입	669,170	761,325	761,325	883,983	122,658	16.1
- 팩토링 매출채권 회수	73,225	149,456	149,456	198,470	49,014	32.8

(자료: 금융위원회)

- “팩토링 매출채권 회수”는 매출채권 만기일에 팩토링¹²⁶⁾ 매출채권

125) 세부사업: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126) <팩토링 서비스 기본 구조>



(자료: 신용보증기금)

구매기업으로부터의 대금 회수수입을 계상한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490억 1,400만원(32.8%)이 증가한 1,984억 7,000만원이 편성됨.

〈팩토링금융 지원 요건〉

구분	구매기업	판매기업
대상채권	결제기일이 30~90일인 매출채권	
대상기업	신용등급 보통 이상인 상장법인 또는 외부감사의견 '적정' 등급 중소·중견기업	구매기업과 6개월 이상 거래 중인 중소·중견기업
매입한도	최고 50억원 (신용등급 등에 따라 한도 상이)	최고 100억원 (매출액 규모별, 구매기업 신용도별 한도 상이)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팩토링 매출채권 결제기일 소요에 따른 회수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타경상이전수입이 과다계상되었으므로,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반영하여 팩토링 매출채권 회수 수입계획안을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음.

□ 신용보증기금은 ‘팩토링금융’ 사업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025년도 ‘팩토링금융’ 사업 지출계획안 중 매출채권 매입액은 1회

매출채권 매입규모 500억원을 4회전하는 것을 전제로 2,000억원이 편성되었고, 이에 상응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에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의 대금 회수분 1,984억 7,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음.

〈2025년도 신용보증기금 팩토링금융 계획안〉

수입계획안	지출계획안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 팩토링금융 매출채권 상환	팩토링금융(2431-314)
1,984억 7,000만원	2,001억 6,000만원
팩토링 운용(2,000억원) - (500억원× 3.06%(예상 年부실률)	매출채권 매입 2,000억원[=500억원(1회 매입액)×4회전(평균 만기 90일 기준)] + 사업운영비 1억 6,000만원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런데 최근 3년(2021~2023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 중 ‘팩토링금융 매출채권 상환’ 항목의 계획액 대비 수납률을 보면, 2021년 34.2%, 2022년 72.8%, 2023년 73.7%로 매년 저조함.¹²⁷⁾

〈연도별 팩토링 매출채권 회수 수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A)	징수결정액	수납액(B)	수납률(B/A)
2021년	39,750	13,592	13,592	34.2
2022년	79,500	57,890	57,890	72.8
2023년	99,375	73,225	73,225	73.7
2024.8월말	149,456	87,027	87,027	58.2

(자료: 금융위원회)

127) 2021년의 경우 사업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개시됨에 따라 2022~2023년에 비해 수납률이 낮음.

□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수납률이 저조한 사유는 팩토링 매출채권의 평균 결제기일이 69일로 매입 채권 중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다 음연도에 이월되어 회수되기 때문으로, 부실액·사고 발생액은 없으며 미수납액 전액이 만기 미도래액으로 파악됨.

○ 그럼에도 수입계획안 편성 시 자금 회전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예상 채권 회수액을 산정함에 따라 매년 수입계획액과 수납액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매년 팩토링 공급금액이 동일할 경우 자금 회전기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수입계획액과 수납액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되나, 최근 팩토링 공급금액이 증가 추세임¹²⁸⁾에 따라 매년 만기미도래 채권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점에서 반복적으로 수입결손이 나타나고 있음.

- 2025년에도 팩토링금융 매출채권을 2,000억원 매입할 계획인바 전년(1,500억원) 대비 공급계획이 증가하였는데, 이에 따라 만기미도래 채권이 상당규모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수입추계 시 이를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수입계획안이 실제 수납가능액에 비해 과다 추계되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반영하여 팩토링 매출채권 회수 수입계획안을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음.¹²⁹⁾

128) 팩토링금융 지원규모: (‘21년) 202억원, (‘22년) 596억원, (‘23년) 900억원, (‘24년e) 1,500억원, (‘25년e) 2,000억원

□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시 “금융위원회는 차년도 신용보증기금 수입계획안 편성 시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반영하여 수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제도개선)”이 의결된 바 있음.

129) 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은 수입계획액 산식 변경을 검토하여 계획액과 실제 수납액 간 차이를 좁히고 자금 운용의 적정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함.

<2025년도 수입계획안 산식 변경(안)>

(정부안) 수입계획액(연간) 198,470백만원 $= \{ \text{예산액(연간)} \times 4\text{회전(결제기일 90일}^{\text{주)})} \} \times (1 - \text{부실률}/4\text{회전})$ (변경안) 수입계획액(연간) 186,066백만원 $= \{ \text{예산액(연간)} \times 4\text{회전(결제기일 90일}^{\text{주)})} \} \times 0.75(\text{기중 만기도래 채권비율}) + \text{전기 만기도래 채권 예상액} \times (1 - \text{부실률}/4\text{회전})$
--

주) 업체의 자금 사정에 따라 결제기일과 자금 집행 시기는 매년 변동되고, 결제기일 단축 운용 시 업체 상환 부담 우려가 있어 최장 결제기일인 90일 적용

(자료: 금융위원회)

2. 대환보증 대위변제¹³⁰⁾: 저조한 대환보증 공급실적을 고려하여 감액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대환보증 대위변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보증부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대환보증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대응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4,594억 8,500만원(180.6%) 증가한 7,139억 2,1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대환보증 대위변제	24,788	254,436	254,436	713,921	459,485	180.6

(자료: 금융위원회)

- 소상공인 대환보증은 2022년 9월 말 사업이 개시되어 2024년 말까지 운영될 예정으로, 신용보증기금은 9조 5,000억원 공급목표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에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6,800억원, 2023년도 본예산으로 800억원의 출연을 받았고, 대환보증 대위변제 지출계획액(안)을 2023년부터 편성하고 있음.¹³¹⁾

130) 세부사업: 대환보증 대위변제(2431-317)

131) <소상공인 대환보증 추진을 위한 출연금 편성내역>

구분	2022년도 제2회 추경	2023년도 예산
출연금	6,800억원	800억원
산출근거	8조 5,000억원÷12.5배	1조원÷12.5배

(자료: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 개요〉

구 분	당초	2023.3월	2023.8월	2024.3월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 사실 확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대환대상 채무	'22. 5. 31.까지 취급된 고금리(연 7% 이상) 사업자대출		'22. 5. 31.까지 취급된 고금리(연 7% 이상) 사업자대출 및 사업목적 가계대출	'23. 5. 31.까지 취급된 고금리(연 7% 이상) 사업자대출 및 사업목적 가계대출
접수기한	2023년 말	2024년 말		
총량한도	8.5조원	9.5조원		
상환구조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10년(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한도	(개인기업) 5천만원, (법인기업) 1억원	(개인기업) 1억원, (법인기업) 2억원		
보증료율	연 1% 고정보증료율	최초 3년간 0.3%p 차감 및 최초 대환 시점에 보증료(10년) 전액 납부 시 총액의 15% 일시납 할인		최초 1년간 보증료 0.7% 추가 감면 (은행 출연)
보증비율	90%			
보증방식	위탁보증(15개 은행에 업무 위탁)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iM뱅크(舊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토스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소상공인 대환보증은 2024년 말까지의 보증공급목표(9조 5,000억원) 중 8월 말 기준 16.2%만을 공급하여 실적이 부진한데, 그럼에도 대환 보증 대위변제 계획안이 공급목표를 전액 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과다하게 산출되었으므로 이를 감액할 필요성이 있음.

□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2025년 대위변제액 7,139억 원은 ‘2024년 말 부실잔액’과 ‘2025년 부실순증액’의 합에 ‘대위변제발 생률’을 곱하여 산정한 것임.

- 이중 '2025년 부실순증액'은 사업 시작 이후 연도별 보증공급액에 예상부실률¹³²⁾을 곱한 값이므로, 대환보증 대위변제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증공급 실적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 계획안 산정내역〉

○ 2025년도 예상 대위변제액 7,139억원 = [①'24년말 부실잔액(782억원) + ②'25년 부실순증액(9,328억원)] × (구)위탁보증 대위변제 발생률 5년 누계값(70.61%)
- ① '24년말 부실잔액(782억원) = ['23년말 부실잔액(362억원) + '24년 부실순증액(2,205억원)] - '24년 대위변제해지액(1,785억원)
- ② '25년 부실순증액(9,328억원) = '22년 보증공급액의 '25년 예상부실금액(190억원 = 2,321억원 × 8.18%) + '23년 보증공급액의 '25년 예상부실금액(962억원 = 9,333억원 × 10.31%) + '24년 보증공급액의 '25년 예상 부실금액(8,176억원 = 8조 3,346억원 × 9.81%)

(자료: 금융위원회)

- 소상공인 대환보증 공급계획에 따르면, 2024년 말까지 9조 5,000억원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 공급실적을 보면, 2023년 말 기준 보증공급 누계액은 1조 1,654억원으로, 공급목표(9조 5,000억원) 대비 12.3%에 불과함.

〈연도별 소상공인 대환보증 공급실적〉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공급목표 (누계)	대환보증 공급실적	대환보증 공급실적 (누계)	공급목표 대비 실적 (누계)	향후 공급가능액 (누계)
2022년 ~ 2023년	9,500,000	1,165,373	1,165,373	12.3%	8,334,627
2024년 8월기준	(2024년 말까지)	370,435	1,535,808	16.2%	7,964,192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132) 실제 부실률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운용기간이 필요한데, 현재는 사업초기이므로, 일반보증 중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공급 후 N년 시점의 예상부실률을 산정하고 있음.

□ 그런데, 2025년도 사업 계획안은 총 공급목표(9조 5,000억원)에서 2023년 말까지의 대환보증 누적 공급액(1조 1,654억원)을 제한 8조 3,346억원을 전액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025년 부실순증액(9,328억원)을 산출하였음.

○ 그러나,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보증공급액 평균치를 기준으로 할 때 동 실적이 연말까지 지속되더라도 2024년에는 약 5,557억원¹³³⁾ 공급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2025년도 부실순증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임.

<2024년 보증공급 규모에 따른 예상 대위변제액 변화>

8조 3,346억원 보증공급	5,557억원 보증공급 (가정)
○ 예상 대위변제 발생액 7,139억원 = [①'24년말 부실잔액(782억원) + ②'25년 부실순증액(9,328억원)] × (구)위탁보증 대위변제 발생률 5년 누계값(70.61%)	○ 예상 대위변제 발생액 1,750억원 = [①'24년말 부실잔액(782억원) + ②'25년 부실순증액(1,697억원)] × (구)위탁보증 대위변제 발생률 5년 누계값(70.61%)
- ①'24년말 부실잔액(782억원) - ②'25년 부실순증액(9,328억원) = '22년 보증공급액의 '25년 예상부실금액(190억원 = 2,321억원 × 8.18%) + '23년 보증공급액의 '25년 예상부실금액(962억원 = 9,333억원 × 10.31%) + '24년 보증공급액의 '25년 예상 부실금액(8,176억원 = 8조 3,346억원 × 9.81%)	- ①'24년말 부실잔액(782억원) - ②'25년 부실순증액(1,697억원) = '22년 보증공급액의 '25년 예상부실금액(190억원 = 2,321억원 × 8.18%) + '23년 보증공급액의 '25년 예상부실금액(962억원 = 9,333억원 × 10.31%) + '24년 보증공급액의 '25년 예상 부실금액(545억원 = 5,557억원 × 9.81%)

○ 2024년도 보증공급액을 5,557억원으로 반영할 경우, 2025년 부실순증액은 1,697억원이며, 최종 2025년도 예상 대위변제액은 1,750억원으로 산정되므로, 2025년도 계획안의 7,139억원과 5,389억원의 차이가 발생함.

133) 2024년 예상 대환보증 공급액 5,557억원 =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보증공급액 3,704억원) ÷ 8개월 × 12개월

□ 보증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유사 대환프로그램을 출시하여 대환대출의 수요가 분산되었고, 당초 사업구조상 짧은 상환기간(거치기간 2년 도과 시 3년간 분할상환)에 대해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이 있었다고 설명함.

- 신용보증기금도 대환보증의 저조한 공급실적을 고려하여 2025년 상반기 중 저금리 대환보증 계정의 여유재원을 소상공인위탁보증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설명하고 있어 대환보증의 공급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대환보증의 저조한 보증실적을 고려하여 대환보증 대위변제 계획안을 약 5,000억원 감액할 필요성이 있음.

□ 참고로, 2023년에도 대환보증 대위변제 계획액을 과다편성한 후 공급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타 사업의 지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자체변경 감액하였고, 그럼에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시 동 사업에 대해 과다한 수준의 공급계획 수립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시정요구사항¹³⁴⁾이 의결되었음.

134) 2023회계연도 결산 국회 정무위원회 예비심사 시정요구사항: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대환보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 수요와 지원 요건 등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여 과다한 수준의 공급계획 수립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주의)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B)	집 행 륜 (B/A)	불 용 액
	당 초(A)	증 감 액	수 정				
2023년	222,731	△120,600	103,131	103,131	24,788	11.1	78,343
2024.7월 말	254,436	-	254,436	254,436	64,495	25.3	-

(자료: 금융위원회)

3. 업무용건물¹³⁵⁾: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의 사업지연 방지 및 연내 집행을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마련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업무용건물”은 신용보증기금의 영업점포를 취득하거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소요비용 또는 소유건물에 대한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23억 9,400만원(20.1%) 증가한 142억 9,4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업무용건물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업무용건물	4,707	11,900	11,900	14,294	2,394	20.1

(자료: 금융위원회)

- 2024년 8월 말 기준, 신용보증기금은 사무실(60개), 연수지원센터(3개) 및 합숙소(17개) 등 총 80개의 업무용건물을 보유하고 있음.
- 2025년도 계획안은 광진지점 대수선 추가 공사비 52억 5,000만원, 스타트업 지원 공간 13억 3,400만원, 자가점포 취득 56억 1,000만원, 지방점포 직원합숙소 취득에 21억원이 편성되었음.

135) 세부사업: 업무용건물(2431-305)

○ 그중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는 광진지점(서울 광진구 소재)의 건물¹³⁶⁾이 1992년 12월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건물 노후화로 안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추진하는 대수선 공사비용으로, 2024년에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2025년에 추가 공사비가 반영된 것임.¹³⁷⁾

136) <광진지점 건물 현황>

구분	내용	비고
소재지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520(구의동)	지하철역 도보 18분
건축규모	지하2층, 지상6층	1~4층 업무시설
신축일	1992.12.21.	31년 경과
대지면적	2,154.40m ² (652평)	공시지가: 약186억원
연면적	8,284.65m ² (2,506평)	-

(자료: 신용보증기금)

137)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 내용>

구 분	공사 前		공사 後		증축 등*
옥탑	물탱크실		창고		42.52㎡
6층	공조기실, 기계실, 옥상정원		회의실, 미화원휴게실, 옥상정원		70.96㎡
5층	농구장(제외)	샤워실, 휴게실	농구장(제외)	다목적 로비	38.81㎡
4층	이행전담팀, 임금피크직원		업무시설		38.81㎡
3층	동부채권관리단		업무시설		44.15㎡
2층	광진지점		로비 (신설)	업무시설	△16.32㎡
1층	기업은행, 동부신용보험1센터			업무시설	66.38㎡
지하1층	주차 25대		주차 27대		13.79㎡
지하2층	주차 16대	전기실, 기계실	주차 18대	전기실, 기계실	8.43㎡
연면적	8,284.65㎡ (2,506평)		8,265.51㎡ (2,500평)		총 307.53㎡
엘리베이터	1대		2대		1대 추가
주차대수	지하41대, 지상4대		지하45대(전기차 2대 포함)		차단기설치
비고	▪ 외장재 전면교체(기존 커튼월 존치) 및 일부 증축 ▪ 엘리베이터 1대 신설, 기존 기계, 전기, 통신, 소방시설 전면 교체 등				

주) 증축 및 건축용도 변경을 통해 실제 사용가능 면적 증가

(자료: 신용보증기금)

2) 검토의견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의 사업지연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연내 집행을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 사업은 2024년에 설계부터 준공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설계비 3억 3,000만원, 공사비 52억 6,800만원, 감리비 2억 6,400만원 등 60억원이 반영되었으나, 2024년 8월 말 기준 계획현액 60억원 중 집행률이 3.6%(2억 1,700만원)에 불과함.

〈2024년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2025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¹⁾	집행률 (B/A)	계획안
	당초	수정				
기본조사설계비(420-01)	66	66	66	10	15.2	29
실시설계비(420-02)	264	264	264	205	77.7	364
공사비(420-03)	5,268	5,268	5,268	-	0.0	4,609
감리비(420-04)	264	264	264	-	0.0	130
시설부대비(420-05)	138	138	138	2	1.4	118
계	6,000	6,000	6,000	217	3.6	5,250

주 1) 집행액은 2024년 8월 말 기준

(자료: 신용보증기금)

- 추진경과를 보면, 공사범위 증가 및 지방자치단체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당초 2024년 4월에 실시설계와 인·허가를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하려던 계획과 달리 인·허가 절차가 8월까지 진행되었고, 10월 초 기준 아직 시공사 선정 중으로 착공하지 못한 상황임.

- 아울러 신용보증기금은 2024년도 계획안 편성 시 공사기간을 8개월로 설정하였으나, 연도 중 공사기간을 14개월로 연장하여 2024년 10월에 착공, 2025년 12월에 준공하고자 계획을 변경하였음.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24.9월 기준)〉

구분	세부내용	당초 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 기본설계 및 공사비 추정	'24.1월	'23.12월
설계공모	▪ 제안공모 및 선정(심사위)	'24.1월	(공모)'24.1월 (선정)'24.2월
실시설계용역	▪ 실시설계	'24.2월 ~ 4월	'24.2월 ~ 8월
인·허가	▪ 인·허가(경관심의 포함)		
공사입찰 및 계약	▪ 시공사 선정(입찰)	'24.5월	'24.9월
착공	▪ 착공신고 및 구조물 철거	'24.5월	'24.10월
시공	▪ 공종별 공사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건폐)	'24.5월 ~ '24.12월	'24.10월 ~ '25.11월
준공	▪ 사용승인 및 세금납부	'24.12월	'25.12월

(자료: 신용보증기금)

- 이에 더하여, 신용보증기금은 안전 관련 법령 강화로 안전관련 필수 공사가 증가했고, 건물 노후화로 내진보강 지하 저수조, 급·배수펌프 등 주요 설비의 전면 교체가 필요했으며, 건설 자재비 상승, 서울시 경관심의·광진구 건축허가 진행 과정에서의 요청¹³⁸⁾ 등에 따라 공사비 증액 및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2025년에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의 총사업비를 52억 5,000만원 증액하였음.

138) 재료의 안정성 보강, 교통약자 편의시설·안전시설 등을 추가하도록 공사계획이 변경되었고, 도시기반시설 이설(광진구청 요청에 따른 배수관 조정) 및 신설(관할 경찰서 요청에 따른 인도 신설) 등

- 2025년도 계획안 52억 5,000만원은 설계비 3억 9,300만원, 공사비 46억 900만원, 감리비 1억 3,000만원 및 부대비용 1억 1,80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2024년에는 기존 노후시설 해체 및 철거, 외장재 전면 교체, 기존 노후설비 철거 및 교체를 진행하고, 2025년에는 안전 난간, 계단 등 안전시설 공사, 지하주차장 안전시설 및 마감공사, 구조보강 등을 진행할 계획임.

〈2024·2025년도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 소요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① 기배정 (’24년 예산)	② 추가공사 (’25년 예산안)	총 예산 (① + ②)	추가공사금액 산출근거
설계비	330	393	723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대가기준 • (기본조사) 실시설계비용 × 8% • (실시설계) 설계비*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료**의 합 * 공사금액 4,148백만원(부가세 제외) × 5.2766% × 1.5(리모델링) × 1.1(부가세) = 362백만원 ** 설계비 328백만원(부가세 제외) × 0.492% (보험요율) = 2백만원
기본조사	66	29	95	
실시설계	264	364	628	
순공사비	5,268	4,609	9,877	총공사비의 87.8%
감리비	264	130	394	• 건축/전기/소방 감리 95백만원 • 설계의도 구현비 35백만원
부대비용	138	118	256	• 대수선공사 취득세(113)*, 기타경비(5) * 5,132백만원 × 2.2%(세율) = 113백만원
총공사비	6,000	5,250	11,250	

(자료: 신용보증기금)

□ 그러나 이와 같은 예산 편성 및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먼저, 신용보증기금은 2025년도 계획안 제출 시 2024년 9월 중 시공

사를 선정하고, 10월에 착공하여 2024년 중 3개월간 공사하는 것을 전제로 총 공사비(98억 7,700만원)의 약 21.3%(=3개월÷14개월)에 해당하는 금액(21억 700만원)을 2024년에 집행하고, 잔여분(77억 7,000만원)을 2025년에 집행하도록 잔여 공사비 전액을 편성하였음.¹³⁹⁾

- 그러나 해당 계획과 달리 10월 7일 기준 계약이 완료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외에는 건축공사·소방공사는 입찰 진행 중이고, 전기공사·통신공사는 입찰 준비 중으로,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고 있어 변경계획에 비해서도 착공이 추가로 지연됨에 따라 2024년 중 3개월의 공사기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2025년에 구조보강 및 방수공사, 각종 안전시설 공사 등 확대되는 공사범위에 대하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재추진하고 건축허가 변경을 실시할 예정이나, 실시설계 절차 및 이에 따른 기존 설계 변경 시의 인·허가 절차가 추가로 지연될 가능성 및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공사기간이 재차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광진지점 대수선 공사의 사업지연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연내 집행을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39) 2025년도 공사비 예산안 46억 900만원 = 총 공사비 98억 7,700만원 - 2024년으로부터의 이월예상액 31억 6,100만원*

* 이월예상액 31억 6,100만원 = 2024년 공사비 예산액 52억 6,800만원 - 2024년 연말까지 집행예상액 21억 700만원(=총 공사비 98억 7,700만원×3개월÷21개월)

4. 프론트원 운영¹⁴⁰⁾: 연례적 불용을 고려한 감액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프론트원 운영”은 청년 창업 보육공간인 프론트원(FRONT1) 건물의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청년창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3억 4,000만원(5.1%) 증가한 70억 6,0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프론트원 운영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프론트원 운영	5,569	6,720	6,720	7,060	340	5.1

(자료: 금융위원회)

□ 프론트원은 민간 주도의 개방형 창업생태계를 표방하는 청년창업기업 전문 보육공간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마포사옥¹⁴¹⁾ 리모델링(2018년~2020년)을 통해 조성되어 2020년 7월 개관하였으며 입주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금융·네트워크·컨설팅·해외진출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원이 제공됨.

140) 세부사업: 프론트원 운영(2431-312)

141) 신용보증기금이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의해 2014년 12월에 본사를 대구로 이전하면서 마포사옥의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15회나 유찰이 되는 등 매각이 장기 지연됨에 따라 사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포사옥 리모델링이 추진됨. 정부는 2018년 3월,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마포사옥을 마포 청년혁신타운으로 전환하여 200-300개의 청년 기업과 정책금융기관 등의 입주를 통한 창업지원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마포청년혁신타운 조성방안」, 2018.4.16.

□ 프론트윈의 운영은 은행권 청년창업재단¹⁴²⁾(이하 “디캠프”)과 신용보증기금이 공동 관리기관이 되고, 실제 운영은 디캠프 및 각 입주 전문기관이 맡는 체계로 구성됨.

○ 디캠프는 신용보증기금 영업점(3개층)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스퀘어(2개층)을 제외한 건물 전체를 임대하여 프론트윈의 운영을 총괄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스타트업에 창업 공간 제공, 건물 유지·보수, 공공요금·세금 납부 및 보안·통신 관리 등 건물 관리를 맡고 있음.

2) 검토의견

프론트윈 운영 사업은 실소요액에 비해 과다편성됨에 따라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였음에도 전년 대비 증액되었으므로 계획안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 프론트윈 운영 사업의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결산내역을 보면, 연례적으로 계획액 대비 불용률이 14.7%(6억 2,000만원), 16.7%(10억 9,700만원), 15.9%(10억 5,100만원)으로 높게 나타났음.

○ 2022년과 2023년의 불용액을 비목별로 살펴보면, 관리용역비(210-15목)의 경우 각각 3억 3,900만원, 2억 9,5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210-02목)의 경우 7억 200만원, 4억 4,900만원이었음.

142)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청년 생태계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은행연합회의 20개 회원 금융기관이 총 5,000억원을 출연하여 2012년 설립한 비영리재단임.

〈최근 3년간 프론트원 운영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비목)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집 행 률 (B/A)
	당 초(A)	수 정					
2021년	4,219	4,219	4,219	3,599	-	620	85.3
210-14	1,678	1,697	1,697	1,542	-	155	91.9
210-02	1,732	1,654	1,654	1,240	-	414	71.6
210-09	600	610	610	598	-	12	99.7
210-01	119	158	158	142	-	16	119.3
210-15	90	100	100	77	-	23	85.6
2022년	6,568	6,568	6,568	5,471	-	1,097	83.3
210-15	3,163	3,273	3,273	2,934	-	339	92.8
210-02	2,281	2,382	2,382	1,680	-	702	73.7
210-09	900	660	660	650	-	10	72.2
210-01	224	253	253	207	-	46	92.4
2023년	6,620	6,620	6,620	5,569	-	1,051	84.1
210-15	3,215	3,266	3,266	2,971	-	295	92.4
210-02	2,281	2,281	2,281	1,832	-	449	55.8
210-09	900	806	806	550	-	256	61.1
210-01	224	267	267	216	-	51	96.4

주: 관리용역비(210-15목)는 2021년에 일반용역비(210-14목)와 관리용역비(210-15목)로 나누어 편성되었음.

(자료: 금융위원회)

□ 이처럼 프론트원 운영 사업에서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는 것은 실제 소요액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액이 매년 과다편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실제로 동 사업의 집행내역을 보면, 관리용역비의 경우 2022년에 31억 6,300만원, 2023년에 32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입찰공고서 기준 발주금액이 2022년 29억 3,500만원, 2023년 29억 5,400만원

으로 계획액에 비해 발주금액 자체가 매년 낮음.

- 그럼에도 신용보증기금은 동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안을 전년 대비 3억 4,000만원(5.1%) 증액한 7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보임.

〈프론트원 운영 사업 예산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도 계획액(A)	2025년도 계획안(B)	B-A	(B-A)/A
관리용역비 (210-15)	3,294	3,444	150	4.6
공공요금및제세 (210-02)	2,282	2,422	140	6.1
시설장비유지비 (210-09)	900	900	-	0.0
일반수용비 (210-01)	244	294	50	20.5
계	6,720	7,060	340	5.1

(자료: 금융위원회)

- 특히 공공요금및제세(210-02목) 중 가스료는 전년 대비 4,100만원(18.4%) 증액된 2억 6,400만원, 관리용역비(210-15목)는 전년 대비 1억 5,000만원(4.6%) 증액된 34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융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가스료 및 관리용역비의 증액분은 2024년도 예산액에 예상 물가상승률이 적용된 것임.
- 그런데 2025년도 계획안 산출 시 적용된 예상 물가상승률이 세부 항목별로 편차(5%~20%)가 나타나고, 2024년도 실제 소비자물가상

승률(2024년 9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1.6%)에 비해 높게 설정되는 등 예산안 산출이 면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계획안 산출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⁴³⁾

〈프론트원 운영 사업 2025년도 계획안 산출 근거 일부〉

- | |
|--|
| <p>□ 공공요금 및 제세 2,422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수도료(985) : 821백만원(24년 소요예산) × 1.2배(단가상승, 인원증가 등 반영) • 종합부동산세(504) : '25년 별도합산토지 종부세 예상액(2,100) × 토지 공시지가 비중(24%) • 재산세 건물분(113) : '24년 건물 재산세 부과액(103) × 예상 연평균 시가표준 상승률(10%) • 재산세 토지분(379) : '24년 토지 재산세 부과액(345) × 예상 연평균 시가표준 상승률(10%) • 간주임대료 부가세(79) : 보증금(20,649) × 이자율(3.5%) × 세율(10%) × 추가임대협약에 따른 증가 버퍼(1.1) • <u>가스료(264) : 220백만원('24년 소요예산) × 예상 물가 상승률 반영(1.2)</u> • 기타(98) : 통신비(23) + 교통유발부담금(75) <p>□ 관리용역비 3,444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종합관리(3,290) : 3,133백만원('24년 소요예산) × 예상 물가 상승률 반영(1.05) • <u>기타 환경·시설유지 등(78) : 71백만원('24년 소요예산) × 예상 물가 상승률 반영(1.1)</u> • 각종 검사용역(76) : 72백만원('24년 소요예산) × 예상 물가 상승률 반영(1.05) <p>* 물탱크·정화조 청소, 실내공기질 검사 등 법정검사 및 점검료</p> |
|--|

(자료: 금융위원회)

- 따라서, 프론트원 운영 사업에서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년 대비 계획안이 증액된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실소요액에 기반하여 예산이 산출되도록 감액할 필요가 있음.

143) 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은 프론트원 건물의 시설 노후화가 지속되고 있어 실제 물가상승분에 더하여 추가적인 상승률을 적용했다고 설명하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수가 필요할 경우 물가상승분을 인상하는 것이 아닌 예산안 산출 시 그 세부 내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고, 관리용역비와 공공요금및제세의 경우 매년 불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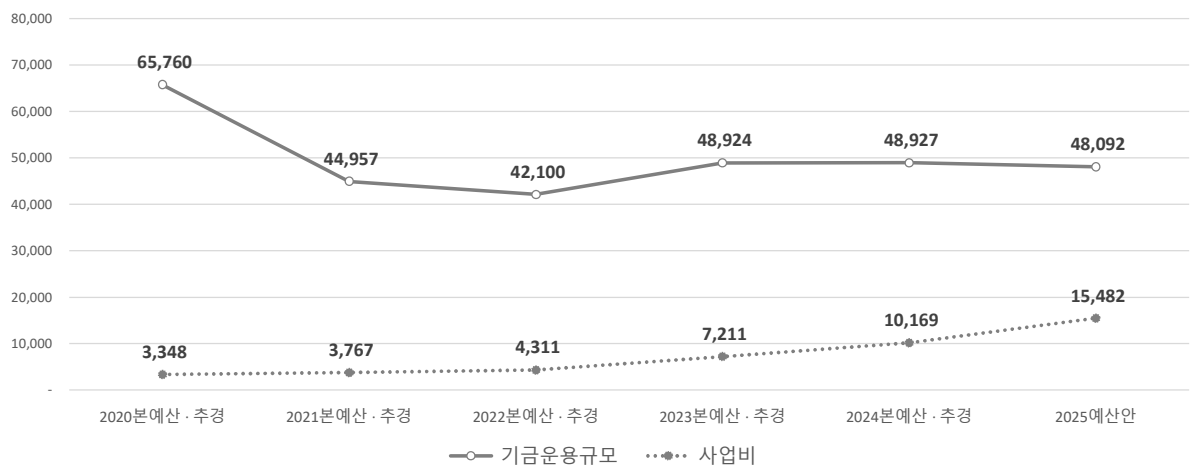
제3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I. 개 요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주택금융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7년에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2004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설치근거법이 변경되었음.
- 최근 5년간 기금의 운용규모 추이를 보면, 2020년 6조 5,760억원, 2021년 4조 4,957억원, 2022년 4조 2,100억원 수준으로 축소되었다가 2023년 4조 8,924억원, 2024년 4조 8,972억원, 2025년 4조 8,092억원으로 운용규모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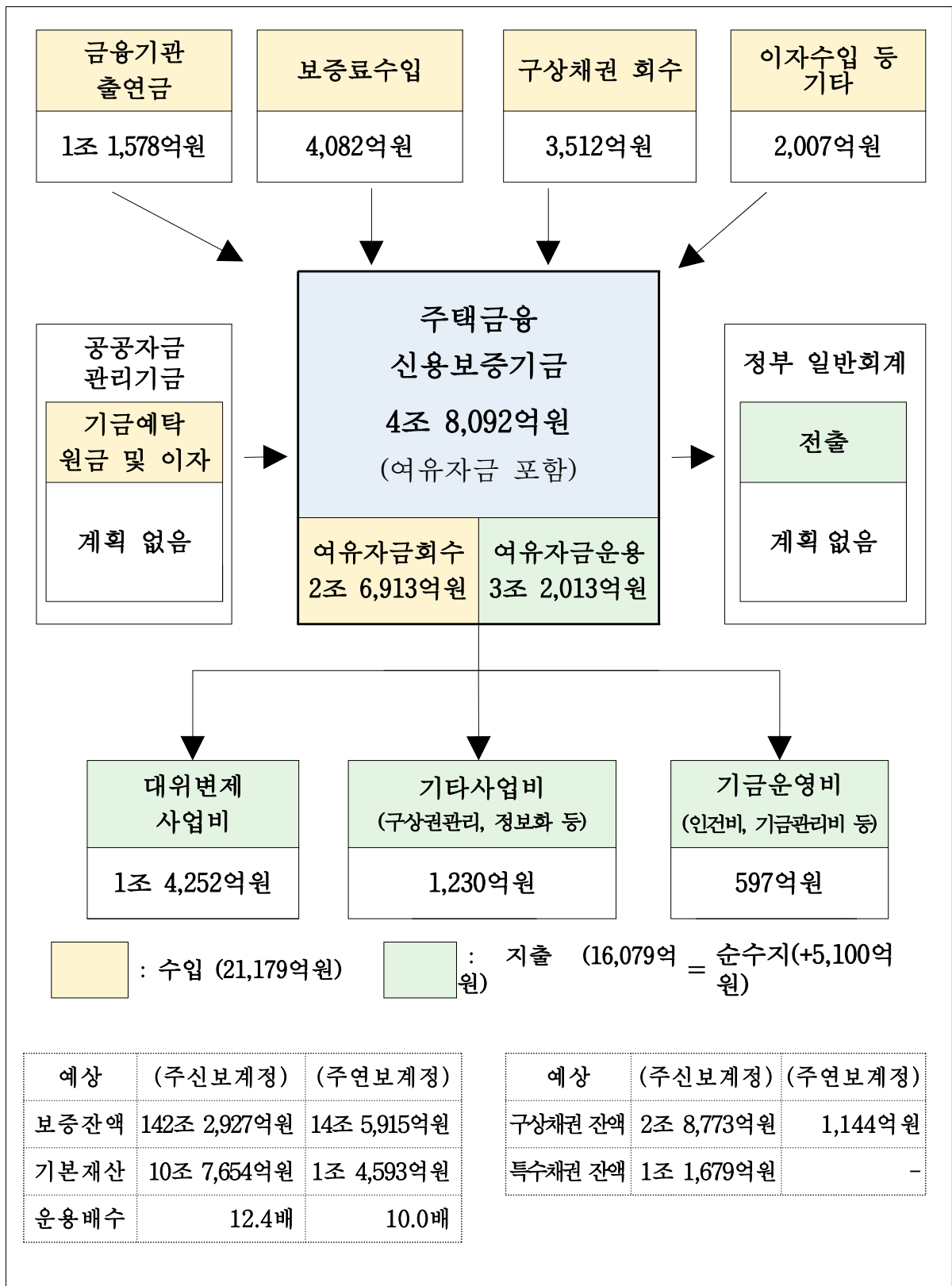
<최근 5년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용규모 및 사업비 내역>

(단위: 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2025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요 수입·지출 항목〉



(자료: 금융위원회)

1. 수입계획안

□ 2025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수입계획안은 4조 8,091억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80억 2,700만원(△1.8%)이 감액 편성됨.

〈2025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도 계획안(B)	증 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4,825,263	4,897,189	4,897,189	4,809,162	△88,027	△1.8
□ 재산수입	144,570	180,300	180,300	200,554	20,254	11.2
□ 경상이전수입	1,333,439	1,353,971	1,353,971	1,508,989	155,018	11.4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315,724	386,932	386,932	408,276	21,344	5.5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2,498,573	2,975,986	2,975,986	2,691,343	△284,643	△9.6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532,957	-	-	-	-	-

(자료: 금융위원회)

○ ‘재산수입’은 기금의 예치금, 유가증권 등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여유자금 운용규모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02억 5,400만원(11.2%) 증가한 2,006억원이 편성됨.

○ ‘경상이전수입’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구상권 회수, 공탁금 반환 등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주택자금대출 및 주택연금 잔액 증가에 따른 금융기관 출연금 수입 증가와 구상권 회수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550억 1,800만원(11.4%) 증가한 1조 5,089억 8,900만원이 편성됨.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은 신용보증료 수입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주택보증 및 주택연금 공급규모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13억 4,400만원(5.5%) 증가한 4,082억 7,600만원이 편성됨.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는 국채, 기타유가증권 매각대 및 통화 금융기관예치금 회수 등 여유자금회수에 따른 수입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5년 만기 도래되는 여유자금 회수금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846억 4,300만원(△9.6%) 감소한 2조 9,759억 8,600만원이 편성됨.
- ‘정부내부수입’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원금회수 및 예탁이자수입으로, 2025년도는 예탁 및 회수계획 이 없음

2. 지출계획안

1) 총괄

□ 2025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지출계획안은 4조 8,091억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80억 2,700만원(△1.8%)이 감액 편성됨.

〈2025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도 계획안(B)	증 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4,825,263	4,897,189	4,897,189	4,809,162	△88,027	△1.8
□ 사업비	699,594	781,432	1,016,859	1,548,198	531,339	52.3
○ 대위변제	635,639	700,850	926,435	1,425,214	498,779	53.8
○ 기타사업비	63,955	80,582	90,424	122,984	32,560	36.0
□ 기금운영비	72,838	57,905	58,812	59,637	825	1.4
○ 인건비	41,975	44,455	44,455	46,562	2,107	4.7
○ 기타운영비	30,863	13,450	4,357	13,075	△1,282	△8.9
□ 정부내부지출	-	-	-	-	-	-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	-	-	-	-
○ 일반회계전출	-	-	-	-	-	-
□ 여유자금운용	4,052,831	4,057,852	3,821,518	3,201,327	△620,191	△16.2

(자료: 금융위원회)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사업비 계획안은 1조 5,481억 9,800만원으로 주택보증 및 주택연금 대위변제 증가추세 등을 반영하여 2024년도 수정 계획 대비 5,313억 3,900만원(52.3%) 증가함.

○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596억 3,700만원으로 예산절감 노력 등의 감액

요소도 반영되었으나, 인건비의 증원 및 인상률 반영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8억 2,500만원(1.4%) 증가함.

- 2025년도 여유자금운용 규모는 3조 2,013억 2,700만원으로 사업비
지출규모 증가 및 2025년도 만기도래 여유자금 회수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201억 9,100만원(△16.2%) 감소함.

- 최근 5년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프로그램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본
경비성 프로그램인 기금운영비와 내부거래·보전거래 성격의 프로그램
을 제외한 사업비는 모두 주택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음.

〈최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별 지출계획 내역〉

(단위: 억원, %)

프로그램명	2020년		2021년		2022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주택금융지원(2600)	3,176	3,348	3,766	3,766	4,023	4,311
기금운영비(3400)	726	828	626	881	633	660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8500)	5,000	5,300	-	-	-	-
일반회계전출금(8900)	3,000	8,000	2,000	2,000	2,320	2,320
여유자금운용(9700)	53,858	48,286	38,565	38,310	35,124	34,809
합 계	65,760	65,762	44,957	44,957	42,100	42,100
프로그램명	2023년		2024년		2025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계 획 안	
주택금융지원(2600)	3,959	7,213	7,814	10,169	15,482	
기금운영비(3400)	638	753	579	588	597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8500)	-	-	-	-	-	
일반회계전출금(8900)	-	-	-	-	-	
여유자금운용(9700)	44,327	40,958	40,579	38,215	32,013	
합 계	48,924	48,924	48,972	48,972	48,092	

(자료: 금융위원회)

2) 사업비

□ 2025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소관 사업비 계획안은 1조 5,481억 9,800만원으로 2024년 수정 계획 대비 5,313억 3,900만원(52.3%) 증액됨.

○ 2025년도 사업비 계획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대위변제 4,987억 7,900만원(53.8%), 보증료환급 21억 7,800만원(6.7%), 구상권관리 106억 4,500만원(33.0%), 사업수수료 28억 8,000만원(20.6%), 담보설정비용 194억 5,000만원(614.0%)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신보IT운영 25억 9,300만원(△31.4%)이 감액 편성됨.

〈2025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사업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사업비	699,594	781,432	1,016,859	1,548,198	531,339	52.3
○ 주신보운영	693,571	774,955	1,008,603	1,542,535	533,932	52.9
- 대위변제	635,639	700,850	926,435	1,425,214	498,779	53.8
- 보증료환급	23,268	28,657	32,715	34,893	2,178	6.7
- 구상권관리	21,223	24,277	32,274	42,919	10,645	33.0
- 사업수수료	11,017	18,003	14,011	16,891	2,880	20.6
- 담보설정비용	2,424	3,168	3,168	22,618	19,450	614.0
○ 주신보 IT운영(정보화)	6,023	6,477	8,256	5,663	△2,593	△31.4

(자료: 금융위원회)

○ ‘대위변제’ 사업은 보증이용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금이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채무를 금융기관에 직접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지출 항목으로, 주택신용보증 및 주택연금보증의 대위변제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4,987억 7,900만원(53.8%) 증가한 1조 4,252억 1,400만원으로 편성됨.

- ‘보증료환급’ 사업은 보증기간 중 중도해지 시 선취한 보증료를 환급하여 주는 지출 항목으로, 보증료환급이 잦은 구입자금보증 공급확대 및 주택연금 중도해지 증가추세에 따른 환급액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1억 7,800만원(6.7%) 증가한 348억 9,300만원이 편성됨.
- ‘구상권관리’ 사업은 부실 및 대위변제가 발생한 개인 및 사업자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 소송, 채권회수활동 등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주택보증 및 주택연금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구상권 관리비용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106억 4,500만원 (33.0%) 증가한 429억 1,900만원이 편성됨.
- ‘사업수수료’ 사업은 보증 취급관련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취급수수료 및 기타 보증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지출 항목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공급 증가 및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8억 8,000만원이 증가(20.6%)한 168억 9,100만원이 편성됨.
- ‘담보설정비용’ 사업은 주택연금 대상 주택에 대한 담보설정 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및 제반비용을 납부하기 위한 지출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주택연금 가입주택 담보설정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이

2024년말 일몰되는 점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94억 5,000만원(614.0%)이 증가한 226억 1,800만원이 편성됨.

- ‘주신보 IT운영(정보화)’ 사업은 전산장비 및 시스템 유지 등을 위한 비용으로, 전년대비 25억 9,300만원(△31.4%) 감소한 56억 6,300만원이 편성됨.

3) 기금운영비

□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596억 3,700만원으로 예산절감 노력 등의 감액 요소도 반영되었으나, 인건비의 증원 및 인상률 반영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8억 2,500만원(1.4%) 증액 편성됨.

〈2025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기금운영비	72,838	57,905	58,812	59,637	825	1.4
○ 인건비	41,975	44,455	44,455	46,562	2,107	4.7
○ 기타운영비	30,863	13,450	14,357	13,075	△1,282	△8.9
- 기금관리비	13,926	13,450	13,450	13,075	△375	△2.8
- 법인세	16,937	-	907	-	△907	△100.0

(자료: 금융위원회)

- ‘인건비’는 정부지침에 의한 공통 처우개선 및 증원인력(2025년 9명)의 6개월 인건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1억 700만원(4.7%) 증가한 465억 6,200만원이 편성됨.
- ‘기금관리비’는 예산절감 노력으로 전년 대비 3억 7,500만원(△2.8%) 감소한 130억 7,500만원이 편성됨.
- ‘법인세’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법인세에 대한 예산편성 및 결산절차 변경으로 2025년도 계획안에 편성되지 않아 전년 대비 9억 700만원 (100.0%) 감소됨.

4) 정부내부지출

☐ 2025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정부내부지출 계획은 없으며, 전년과 동일함.

〈2025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정부내부지출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정부내부지출	-	-	-	-	-	-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	-	-	-	-
○ 일반회계전출	-	-	-	-	-	-

(자료: 금융위원회)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기금 여유재원의 일부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의 경우 예탁계획 없음.
- ‘일반회계전출’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금 여유재원의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의 경우 전출계획 없음.

5) 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총수입액 중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정부내부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자금을 정기예금, 연기금투자상품, 국채, 회사채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사업비 지출규모 증가 및 2025년 만기도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201억 9,100만원 (16.2%) 감액된 3조 2,013억 2,7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운용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여유자금운용	4,052,831	4,057,852	3,821,518	3,201,327	△620,191	△16.2

(자료: 금융위원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운용 수익률 추이〉

(단위: %)

자산별	2020	2021	2022	2023	2024.9
□ 예치금	1.77	1.33	2.16	4.18	3.12
□ 채권	2.18	△0.28	△1.13	6.39	3.61
□ 수익증권	8.53	3.16	△5.11	9.97	5.65
계	4.46	1.68	△2.58	7.97	4.75

(자료: 금융위원회)

3. 주요경영지표 계획

☐ 주택신용보증계정

- 2025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신용보증계정(이하 “주신보계정”)의 보증공급은 최근 공급실적 추이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년 계획대비 4조 1,300억원(5.8%) 증가한 75조 3,300억원, 보증잔액은 전년 계획대비 6조 5,036억원(4.8%) 증가한 142조 2,927억원으로 계획하였음.
- 2025년 주신보계정의 기본재산은 전년 계획 대비 3,902억원(3.8%) 증가한 10조 7,654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운용배수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을 계획하였음.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 2025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이하 “주연보계정”)의 보증공급은 최근 공급실적 추이 등을 감안하여 전년 계획대비 6,300억원(Δ 2.5%) 감소한 24조 8,700억원, 연금지급잔액은 전년 계획대비 2조 4,967억원(20.6%) 증가한 14조 5,915억원으로 계획하였음.
- 2025년 주연보계정의 기본재산은 전년 계획 대비 2,318억원(18.9%) 증가한 1조 4,593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운용배수는 전년 대비 0.1배 증가한 10.0배에 이를 것을 계획하였음.

〈2025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요경영지표 계획안〉

(단위: 억원, %, 배)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도 계획안(B)	증 감 (B-A)	(B-A)/A
		당초	수정(A)			
□ 주택신용보증계정						
○ 보증공급	755,260	712,000	712,000	753,300	41,300	5.8
○ 보증잔액(A)	1,308,230	1,357,891	1,357,891	1,422,927	65,036	4.8
○ 기본재산(B)	100,176	103,752	103,752	107,654	3,902	3.8
○ 운용배수(A/B)*	12.6	12.4	12.4	12.4	-	-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 보증공급	225,016	255,000	255,000	248,700	△ 6,300	△ 2.5
○ 연금지급액	23,856	29,207	29,207	33,072	3,865	13.2
○ 연금지급잔액(C)	98,466	120,948	120,948	145,915	24,967	20.6
○ 기본재산(D)	10,205	12,275	12,275	14,593	2,318	18.9
○ 운용배수(C/D)	9.6	9.9	9.9	10.0	0.1	1.0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전세보증과 반환보증의 중복금액을 제외하고 계산

(자료: 금융위원회)

〈최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요경영지표〉

(단위: 억원, 배)

구 분	2018년 결산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 주택신용보증계정						
○ 보증공급	454,692	545,778	646,593	650,943	729,907	755,260
○ 보증잔액(A)	775,180	898,511	1,057,518	1,169,990	1,236,335	1,308,230
○ 기본재산(B)	71,125	81,695	79,175	86,654	88,993	100,176
○ 운용배수(A/B)*	10.9	11.0	13.3	13.4	13.7	12.6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 보증공급	98,991	113,325	111,028	150,255	249,692	225,016
○ 연금지급액	8,966	10,973	12,105	14,547	19,242	23,856
○ 연금지급잔액(C)	34,286	43,407	52,484	62,811	78,860	98,466
○ 기본재산(D)	2,312	2,889	4,524	6,495	7,844	10,205
○ 운용배수(C/D)	14.8	15.0	11.6	9.7	10.1	9.6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전세보증과 반환보증의 중복금액을 제외하고 계산

(자료: 금융위원회)

II. 검토의견

1. 담보설정비용(주연보 계정)¹⁴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몰 기한 연장 조기 확정 시 등록면허세 지급분 삭감 필요

1)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담보설정비용”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및 신탁등기 설정(보완등기 포함) 등 담보설정 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및 제반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94억 5,000만원(614.0%) 증가한 226억 1,8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담보설정비용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담보설정비용	2,424	3,168	3,168	22,618	19,450	614.0

(자료: 금융위원회)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가입자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보를 취득(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신탁등기)하고, 일정 금액을 노후자금으로 지급받는 보증 사업으로, 「지방세법」 제24조에 따라 담보 주택에 대한 등록을 하는 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¹⁴⁵⁾

144) 세부사업: 담보설정비용(2631-305)

○ 그런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담보 설정 시 등록
면허세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게 될 경우, 비용의 증가로 인
해 가입자의 월지급금이 감소¹⁴⁶⁾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음.¹⁴⁷⁾

□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주택담
보노후연금의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그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가 운영되고 있음.¹⁴⁸⁾

○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등록면허세 감면 조항은 2007년 7월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음.

145) 「지방세법」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46) 보증료수입의 현재가치와 예상손실액의 현재가치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월지급금을 책정(수지상등의 원칙)하고 있으며, 등록면허세 부담액은 예상손실액의 현재가치에 추가되어 월지급금이 감소하게 되는 것임.

147) 【 등록면허세 부담주제별 월지급금 산출 예시 】 (조건 : 일반형 주택연금, 가입연령 72세, 주택가격 5억 원)

구분	가입자 부담 시(현행)	공사 부담 시*	100세말 기준 지급액 차이
월지급금	1,615,010원	1,583,290원	11,038,560원

* 공사 부담 등록면허세 약 208만원[867백만원(근저당권설정액 : 100세기준 예상주택가격)×0.24%(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율)] 가정

14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연금보증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 그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등”이라 한다)이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한다) 소유자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제1호 외의 등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감면
 - 가. 등록면허세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 나. 등록면허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을 공제한다.

- 참고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등록면허세 감면 조항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일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연혁〉

개정 시행일	등록면허세 (제35조 제1항)	재산세 (제35조 제2항)
출시 직후 (‘07.7월~)	▶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전액 감면 (출시 ~ ‘10.12.31.)	▶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25% 감면 (‘08년 과세분~‘10.12.31.)
‘11.1.1.*	▶ 전액 감면 (~‘12.12.31.)	▶ 25% 감면 (~‘12.12.31.)
‘13. 1. 1.	▶ 전액 감면 (~‘15.12.31.)	▶ 25% 감면 (~‘15.12.31.)
‘16. 1. 1.	▶ 전액 감면 (~‘17.12.31.) ▶ 75% 감면 (~‘19.12.31.)	▶ 25% 감면 (~‘18.12.31.)
‘20.1.15.	▶ 75% 감면 (~‘21.12.31.)	▶ 25% 감면 (~‘21.12.31.)
‘22. 1. 1.	▶ 75% 감면 (~‘24.12.31.)	▶ 25% 감면 (~‘24.12.31.)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으로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감면근거를 일원화

2) 검토의견

동 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일몰기한 연장이 조기에 확정되는 경우 저당권방식에 따른 등록면허세 지급분을 삭감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신탁방식 확대 등 장기적인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저당권 설정방식의 담보설정 비용 195억 3,800만원과 신탁방식의 등록면허세 5,000만원, 법무사 수수료 30억 3,000만원 등을 포함하여 226억 1,800만원을 계획하고 있음.

- 이는 전년도 대비 194억 4,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증가분의 대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 도과에 대비하여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저당권 설정방식으로 보증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 195억 3,800만원을 반영한 것임.

〈2024년, 2025년 담보설정비용 계획안 산출 내역〉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안
○ 사업수수료(일반수용비) : 3,168백만원	○ 사업수수료(일반수용비) : 22,618백만원
▪ 신탁방식 등록면허세 : 56백만원 [7,491건(신탁방식 신규 공급건수) + 222건(신탁방식 전환 공급건수)] × 7.2천원(건당 세액) ▪ 법무사수수료 : 3,112백만원 16,363건(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이사 + 추가설정건수) × 190천원(건당 수수료)	▪ 근저당권방식 세액 : 19,538백만원 [8,699건(일반주택 신규 예상건수) × 2.1백만원(일반주택 등록면허세)] + [196건(고가주택 신규 예상건수) × 5.0백만원(고가주택 등록면허세)] ▪ 신탁방식 등록면허세 : 50백만원 [6,958건(신탁방식 신규 공급건수) + 207건(신탁방식 전환 공급건수) × 7천원(건당세액)] ▪ 법무사수수료 : 3,030백만원 16,200건(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이사 + 추가설정건수) × 187천원(건당 수수료)

(자료: 금융위원회)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은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자가 부담하는 등록면허세의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어, 일몰기간 연장 등 동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25년부터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의 가입자가 부담하던 등록면허세를 부담할 계획임.

○ 다만, 2024년 10월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도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되, 등록면허세의 감면율을 기존 75%에서 50%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¹⁴⁹⁾한 상황임.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등록면허세의 일몰기한이 연장된다면 저당권방식에 따른 담보설정비용(195억 3,800만원)은 2025년도에도 불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기금 운용에 있어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음.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등록면허세 감면을 위한 일몰기간의 연장은 201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4차례 이루어졌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일몰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설정비용을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하고, 불용하는 방식으로 동 사업을 운영해왔음.

○ 따라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심사 경과에 따라 일몰기한 연장이 조기에 확정되는 경우 저당권방식에 따른 등록면허세 지급분(195억 3,800만원)을 삭감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149) 기간: 2024.9.24.~2024.9.26.

〈등록면허세 감면 조항 연혁 및 담보설정비용 계획·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9월
감면기간 개정연혁 (일몰기한)	'103월 제정			'131월 개정			'15.12월 개정			'20.1월 개정			'21.12월 개정		
감면비율	100%			100%			100%			75%			75%		
감면상한액	-			-			-			300만원			225만원		
당초예산*	-	-	-	-	-	-	-	-	-	-	17,028	1,747	23,907	3,427	3,168
감면반영	-	-	-	-	-	-	-	-	-	-	일몰가정 (192월 확정)	감면	일몰가정 (212월 확정)	감면	감면
결산	-	-	-	-	-	-	-	-	-	-	13	579	2,653	2,424	1,7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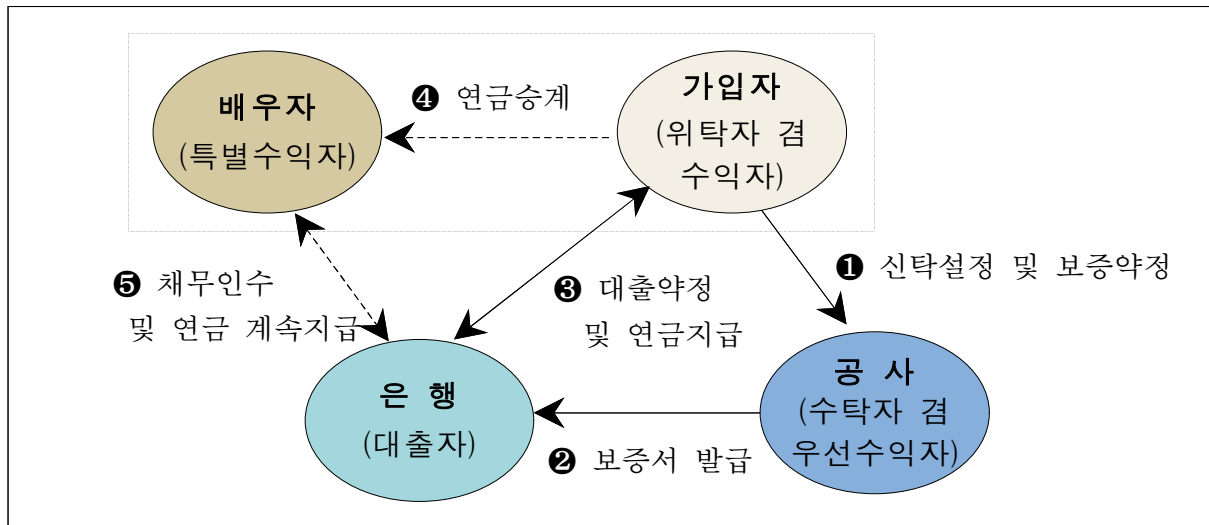
* 담보설정비용 예산에는 등록면허세(근저당권 및 신탁), 법무사수수료 등이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이 종료되는 연도마다 등록면허세 관련 금액을 계획안에 반영하고, 일몰기한이 연장되면 이를 불용하는 행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신탁방식 확대 등 장기적인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참고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20.12월)을 통해 2021년 6월부터 신탁 방식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주택연금의 가입자(위탁자 겸 수익자)가 수탁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우선수익자)에 주택 소유권을 이전(신탁 등기)하고, 수탁자는 신탁의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보증하는 방식을 의미함.

〈신탁방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구조도〉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 신탁방식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경우 기존의 저당권 설정방식 (일반주택: 건당 평균 약 210만원, 고가주택: 건당 500만원)에 비해, 건당 신탁등기 비용(7,200원)이 저렴하여 담보설정비용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음.
- 가입자 입장에서든 해당 주택에 보증금 있는 임대 가능하고, 가입자 사망 시 자녀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받고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유리한 측면이 있음.
- 재산세의 경우 기존에는 주택연금 가입자 대상 특별감면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도 근저당권 방식과 동일하게 재산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주택연금 근저당권방식, 신탁방식 비교〉

구분	근저당권방식	신탁방식
의미	▶ 주택연금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공사에게 담보 제공 ※ 공부상 소유자는 가입자	▶ 주택연금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해 주택을 공사(수탁자 겸 우선 수익자)에 신탁하여 담보 제공 ※ 공부상 소유자는 공사(정비사업 참여 등이 어려울 수 있음)
배우자의 연금승계	▶ 가입자 사망 시 자녀 동의가 없을 시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받지 못할 수 있음	▶ 가입자 사망 시 자녀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받고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음
임대차 가능여부	▶ 보증금 있는 임대 불가능 (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	▶ 보증금 있는 임대 가능
채권실행 절차	▶ 절차 복잡, 장기간 소요 (약 8~14개월) ▶ 폐쇄시장에서의 경매	▶ 절차 간편, 단기간 소요 (약 2~6개월 내외) ▶ 일반공개시장에서의 공매
담보해지	▶ 근저당권 말소만으로 해지 가능	▶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종료 절차 진행으로 일정 기간 소요될 수 있음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 (등록세) '24년까지 75% 감면 ▶ (재산세) ①「지방세법」에 따른 1가구1주택자 대상 일반감면과 ②「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주택연금 가입자 대상 특별감면 (~'24년) 중 경감효과 더 큰 1가지만 적용	▶ (등록세) 감면 없음 ▶ (재산세) ①1가구1주택자 대상 일반감면만 적용되며, ②주택연금 가입자 대상 특별감면은 비적용 ※ 신탁방식에도 특별감면을 도입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 예정(정부)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 참고로, 신탁방식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가입 현황을 보면, 해당 방식이 출시된 2021년 이후 신규가입건수 중 약 40%가 신탁방식으로 가입하고 있음.

〈주택연금 근저당권방식, 신탁방식 비교〉

(단위: 명, 억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	합 계
신탁 방식	신규가입건수	2,558	6,841	6,396	4,119	19,914
	비중(%)	23.7	46.9	43.0	38.1	39.0
	보증공급액	36,501	124,646	103,379	58,155	322,681
	비중(%)	24.3	49.9	45.9	40.2	41.9
	담보취득방식 변경건수 (근저당→신탁)	-	266	147	75	488
전 체	신규가입건수	10,805	14,580	14,885	10,818	51,088
	보증공급액	150,255	249,692	225,016	144,598	769,561

주: 신탁방식 주택연금 출시('21.6.9), 담보취득방식 변경제도 도입('22.7.11)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제4장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 개 요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하여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원활한 지원과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치된 기금임.

1971년 1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정 후 1972년 2월 기금 관리주체¹⁵⁰⁾인 농협중앙회가 1억원을 출연하며 보증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25년도 계획안 기준 보증잔액은 18조 1,480억원임.

□ 2025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운용 규모는 2조 2,651억원으로, 금융기관 출연금(2,412억원), 보증료수입(703억원), 이자수입 등(600억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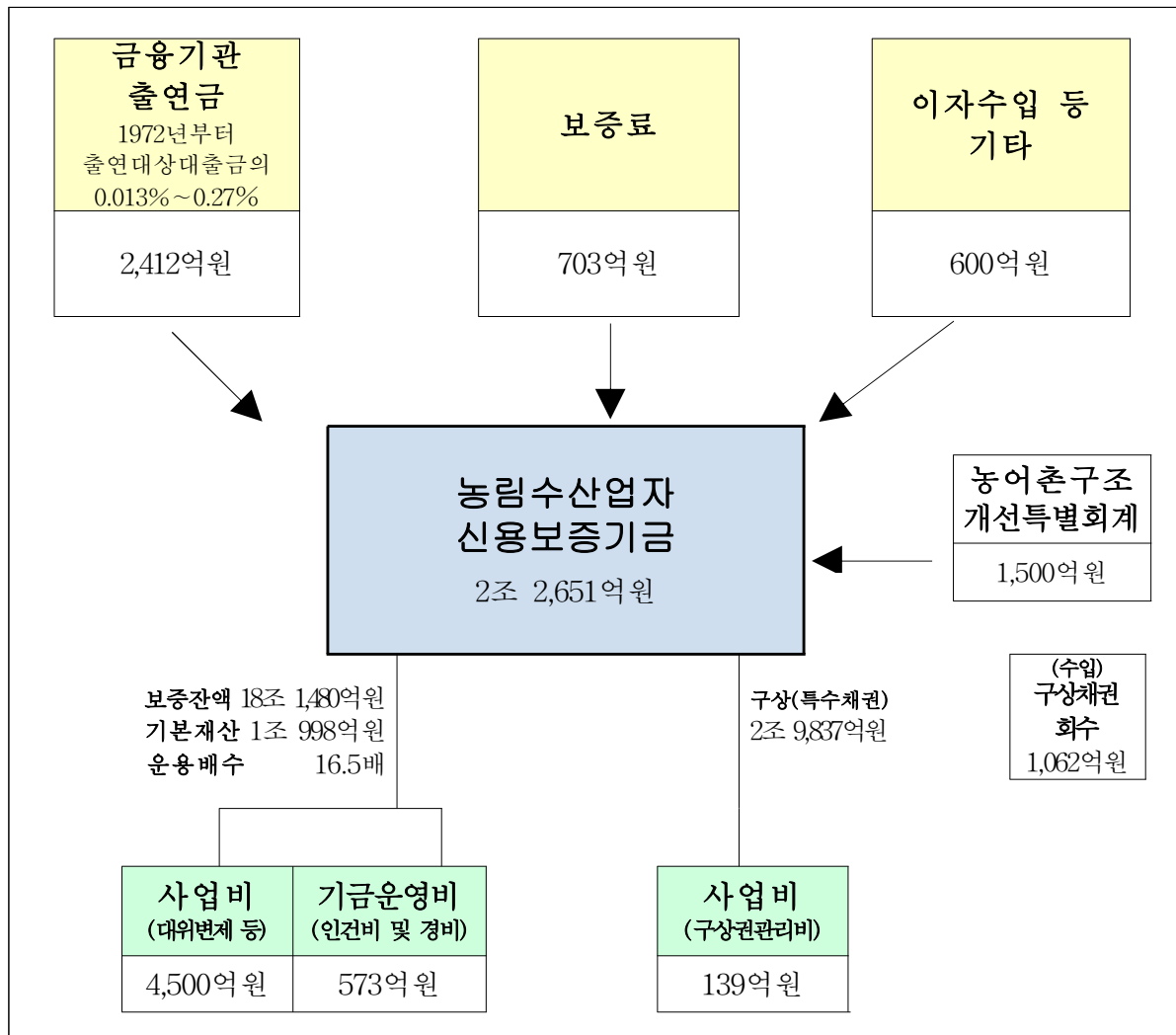
○ 이를 대위변제 등 사업비(4,639억원), 기금운영비(573억원) 등에 지출할 계획으로 있음.

15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5조(관리기관)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취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와 그 기관의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2025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요 수입·지출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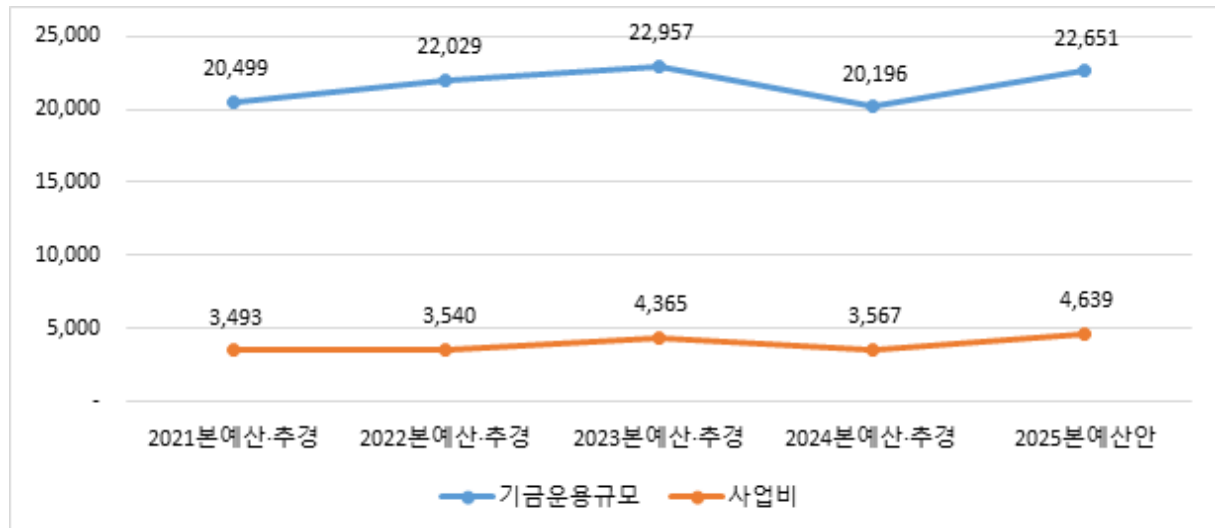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 최근 5년간 기금의 운용규모 추이를 보면 2021년 2조 499억원, 2022년 2조 2,029억원, 2023년 2조 2,957억원, 2024년 2조 196억원이며, 2025년도 계획안은 2조 2,651억원으로 전년대비 운영규모가 다소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운용규모 및 사업비 내역〉

(단위: 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1. 수입계획안

- 2025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수입계획안은 2조 2,651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54억 7,800만원(12.2%)이 증액 편성됨.

〈2025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1,486,546	2,019,636	2,019,636	2,265,114	245,478	12.2
□ 재산수입	35,140	64,892	64,892	44,895	△19,997	△30.8
□ 경상이전수입	295,408	391,458	391,458	358,429	△33,029	△8.4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68,217	96,286	96,286	74,417	△21,869	△22.7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1,087,781	1,437,000	1,437,000	1,637,373	200,373	13.9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	30,000	30,000	150,000	120,000	400.0

(자료: 금융위원회)

- ‘재산수입’은 기금의 예치금, 유가증권 등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전년 대비 199억 9,700만원(△30.8%) 감소한 448억 9,500만원이 편성됨.
- ‘경상이전수입’은 금융기관 출연금, 구상권 회수금 등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융기관 출연금 증가(2,412억 3,100만원), 구상채권 회수금 감소(1,062억 2,400만원)로 전년대비 330억 2,900만원(△8.4%) 감소한 3,584억 2,900만원이 편성됨.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은 보증료 수입 및 수수료, 매각채권 잔여

이익금 등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대비 218억 6,900만원(△22.7%) 감소한 744억 1,700만원으로 편성됨.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는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등 여유자금회수에 따른 수입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5년 만기 도래하는 예치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003억 7,300만원(13.9%) 증가한 1조 6,373억원 7,300만원이 편성됨.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는 농특회계전입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회수 및 예탁이자 수입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농특회계 전입금 1,500억원 반영에 따라 전년 대비 1,200억원(400.0%) 증가한 1,500억원으로 편성됨.

2. 지출계획안

1) 총괄

□ 2025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출계획안은 2조 2,651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54억 7,800만원(12.2%)이 증액 편성됨.

〈2025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1,486,546	2,019,636	2,019,636	2,265,114	245,478	12.2
□ 사업비	430,138	356,654	356,654	463,959	107,305	30.1
○ 대위변제	407,437	330,300	330,300	438,010	107,710	32.6
○ 보증료환급	5,409	5,637	5,637	5,689	52	0.9
○ 구상권관리비	11,371	14,245	14,245	13,884	△361	△2.5
○ 위탁사업비	3,439	3,850	3,850	3,754	△96	△2.5
○ 농신보IT유지비(정보화)	2,482	2,622	2,622	2,622	-	-
□ 기금운영비	53,495	55,609	55,609	57,281	1,672	3.0
○ 인건비	47,729	48,965	48,965	50,434	1,469	3.0
○ 기타운영비	5,766	6,644	6,644	6,847	203	3.1
□ 여유자금운용	1,002,913	1,607,373	1,607,373	1,743,874	136,501	8.5
○ 통화금융기관예치	736,214	1,607,373	1,607,373	1,713,874	106,501	6.6
○ 예치금융가증권매입	266,699	-	-	30,000	30,000	순증

(자료: 금융위원회)

○ 2025년도 사업비 계획안은 4,639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73억 500만원(30.1%) 증가하였으며,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572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7,200만원(3.0%) 증가함.

○ 여유자금운용 규모는 1조 7,438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65억 100만원(8.5%) 증가함.

□ 최근 5년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프로그램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본경비성 프로그램인 기금운영비와 여유자금운용 프로그램을 제외한 사업비는 모두 산업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음.

〈최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별 지출계획 내역〉

(단위: 억원, %)

프로그램명	2020년		2021년		2022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산업금융지원(2400)	3,796	3,796	3,493	3,493	3,540	3,540
기금운영비(3300)	576	576	557	557	548	548
여유자금운용(9700)	6,935	7,935	16,449	16,449	17,941	17,941
합 계	11,307	12,307	20,499	20,499	22,029	22,029
프로그램명	2023년		2024년		2025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계획안(B)	
산업금융지원(2400)	3,460	4,365	3,566	3,566	4,639	
기금운영비(3300)	548	548	556	556	573	
여유자금운용(9700)	18,948	18,044	16,074	16,074	17,439	
합 계	22,957	22,957	20,196	20,196	22,651	

(자료: 금융위원회)

2) 사업비

□ 2025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소관 사업비 계획안은 4,639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73억 500만원(30.1%) 증가함.

○ 2025년도 사업비 계획안의 주요 증액내역으로 ‘대위변제금’은 전년 대비 1,077억 1,000만원(32.6%) 증액된 4,380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사업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 감 (B-A)	(B-A)/A
		당초	수정(A)			
□ 사업비	430,138	356,654	356,654	463,959	107,305	30.1
○ 대위변제	407,437	330,300	330,300	438,010	107,710	32.6
○ 보증료환급	5,409	5,637	5,637	5,689	52	0.9
○ 구상권관리비	11,371	14,245	14,245	13,884	△361	△2.5
○ 위탁사업비	3,439	3,850	3,850	3,754	△96	△2.5
○ 농신보IT유지비(정보화)	2,482	2,622	2,622	2,622	-	-

(자료: 금융위원회)

- ‘대위변제금’은 전년 대비 1,077억 1,000만원(32.6%) 증액된 4,380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보증료환급’은 전년 대비 5,200만원(0.9%) 증액된 56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구상권관리비’는 전년 대비 3억 6,100만원(△2.5%) 감액된 138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위탁사업비’는 전년 대비 9,600만원(△2.5%) 감액된 37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3) 기금운영비

- 2025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572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7,200만원(3.0%) 증가함.

〈2025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기금운영비	53,495	55,609	55,609	57,281	1,672	3.0
○ 인건비	47,729	48,965	48,965	50,434	1,469	3.0
○ 기타운영비	5,766	6,644	6,644	6,847	203	3.1
- 기금관리비	5,550	5,736	5,736	5,939	203	3.5
- 선급법인세	216	908	908	908	-	-

(자료: 금융위원회)

- ‘인건비’는 전년 대비 14억 6,900만원(3.0%) 증액된 504억 3,400만원이 편성됨.
- ‘기금관리비’는 전년 대비 2억 300만원(3.5%) 증액된 59억 3,900만원으로 편성됨.
- ‘선급법인세’는 전년과 동일한 9억 800만원으로 편성됨.

4) 여유자금운용

- ☐ 여유자금운용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총수입액 중 사업비, 기금 운영비 및 정부내부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자금을 정기예금, 연기금 투자품, 국채, 금융채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1,365억 100만원(8.5%) 증액된 1조 7,438억 7,4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운용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여유자금운용	1,002,913	1,607,373	1,607,373	1,743,874	136,501	8.5

(자료: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운용 수익률 추이〉

(단위: %)

자산별	2020	2021	2022	2023	2024.9.	2025(전망)
☐ 예치금	1.52	1.09	2.05	4.24	3.90	3.50
☐ 채권	1.99	△0.36	△0.32	4.75	3.77	1.53
☐ 수익증권	3.18	0.01	△4.41	8.05	4.40	-
계	2.04	0.67	0.49	5.06	4.09	-

(자료: 금융위원회)

3. 주요경영지표 계획

□ 2025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액은 8조 8,714억원이며, 보증잔액은 2024년 추정 규모인 18조 1,320억원 대비 160억원 증가한 18조 1,480억원으로 계획하였음.

□ 2025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은 금융기관 출연금 2,412억원 등에 따라 2024년도 추정 규모인 1조 220억원 대비 778억원 증가한 1조 998억원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운용배수는 2024년 17.7배 대비 1.2배 하락한 16.5배로 계획하였음.

〈2025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요경영지표 계획안〉

(단위: 억원, %, 배)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보증공급	89,599	84,000	84,000	88,714	4,714	5.6
□ 보증잔액	176,420	181,320	181,320	181,480	160	0.1
□ 기본재산	10,476	10,220	10,220	10,998	778	7.6
□ 운용배수	16.8	17.7	17.7	16.5	△1.2	△6.8

(자료: 금융위원회)

〈최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요경영지표〉

(단위: 억원, 배)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보증공급	79,201	86,112	81,871	80,147	96,402	89,599
□ 보증잔액	148,906	161,117	164,399	163,585	171,852	176,420
□ 기본재산	15,306	10,449	9,847	10,792	11,741	10,476
□ 운용배수	9.7	15.4	16.7	15.2	14.6	16.8

(자료: 금융위원회)

II. 검토의견

1. 구상권관리비¹⁵¹⁾: 채권 회수율 제고 노력 강화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구상권관리비”는 대위변제 이후 구상채권 및 특수채권을 궁극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3억 6,100만원(2.5%) 감소한 138억 8,4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구상권관리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본 예산	수정(A)		(B-A)	(B-A)/A
구상권관리비	11,371	14,245	14,245	13,884	△361	△2.5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채권 회수율 제고 노력 강화 필요

구상채권, 특수채권, 포기채권의 회수실적이 저조하므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채권 회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경기침체와 원자재 가격 및 유류비 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2023년도 대위변제액은 4,074억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대위변제율은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2.31%로 나타났다.

151) 세부사업: 구상권관리비(2432-302)

〈최근 5년(2019~2023년) 대위변제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보증잔액	161,117	164,399	163,585	171,852	176,420
대위변제액	3,265	3,073	3,021	2,904	4,074
대위변제율	2.03	1.87	1.85	1.69	2.31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이와 같이 대위변제 규모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구상채권, 특수채권¹⁵²⁾, 포기채권¹⁵³⁾ 등의 채권잔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3년 기준 채권잔액은 전년 대비 1,399억 7,900만원(5.8%) 증가한 2조 5,370억 7,100만원임.

〈최근 5년(2019~2023년) 채권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구상채권 잔액	1,082,240	1,242,073	1,346,788	1,448,855	1,663,566
증감	173,666	159,833	104,715	102,067	214,711
증감률	19.1	14.8	8.4	7.6	14.8
특수채권 잔액	883,789	772,865	724,510	697,370	662,115
증감	△90,531	△110,924	△48,355	△27,140	△35,255
증감률	△9.3	△12.6	△6.3	△3.7	△5.1
포기채권 잔액	478,914	366,435	289,151	250,867	211,390
증감	△206,155	△112,479	△77,284	△38,284	△39,477
증감률	△30.1	△23.5	△21.1	△13.2	△15.7
합계	2,444,943	2,381,373	2,360,449	2,397,092	2,537,071
증감	△123,020	△63,570	△20,924	36,643	139,979
증감률	△4.8	△2.6	△0.9	1.6	5.8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52) 특수채권 : 구상채권 중 회수 불가로, 상각기준에 따라 상각한 채권

153) 포기채권 : 특수채권 중 소멸시효 경과 등에 따라 회수 포기한 채권

□ 그런데, 채권의 회수액은 202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62억 3,500만원 감소한 711억 4,200만원에 그쳤는데, 이는 농신보가 당초 계획했던 900억원에 크게 미달한 실적일 뿐만 아니라 2004년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임.

○ 채권별 회수실적을 살펴보면, 구상채권은 전년 대비 98억 7,900만원 (15.7%), 특수채권은 전년 대비 39억 400만원(21.8%), 포기채권은 전년 대비 24억 5,200만원(36.6%) 각각 감소하였음.

〈최근 5년(2019~2023년) 채권 회수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구상채권 회수	44,789	54,544	71,944	62,782	52,903
증감	894	9,755	17,400	△9,162	△9,879
증감률	2.0	21.8	31.9	△12.7	△15.7
특수채권 회수	26,089	24,776	24,131	17,888	13,984
증감	△6,640	△1,313	△645	△6,243	△3,904
증감률	△20.3	△5.0	△2.6	△25.9	△21.8
포기채권 회수	8,249	9,190	9,035	6,707	4,255
증감	△2,459	941	△155	△2,328	△2,452
증감률	△23.0	11.4	△1.7	△25.8	△36.6
합계	79,127	88,510	105,110	87,377	71,142
증감	△8,205	9,383	16,600	△17,733	△16,235
증감률	△9.4	11.9	18.8	△16.9	△18.6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결과적으로, 채권 잔액 대비 회수율은 2019년 3.2%에서 2021년 4.5% 까지 개선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23년에는 2.8%까지 감소하였음.

〈최근 5년(2019~2023년) 채권 회수율〉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구상채권	4.1	4.4	5.3	4.3	3.2
특수채권	3.0	3.2	3.3	2.6	2.1
포기채권	1.7	2.5	3.1	2.7	2.0
합 계	3.2	3.7	4.5	3.6	2.8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이러한 채권 회수실적 부진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라 자산 대비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경영활동 및 보유재산 처분 등을 통해 채무의 상환이 불가능한 무자력 법인채무자의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임.

〈최근 5년(2019~2024년) 무자력 법인채무자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건수	1,680	1,635	1,813	2,064	2,334
금액	2,736	2,627	3,028	3,558	4,130

주: 회생, 파산, 새출발기금 신청 및 경영실권자 연대보증 면제 법인 구상채무자를 모두 포함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그러나, 농신보 운용배수가 적정운용배수(12.5배)를 매년 초과하는 등 기금 건전성 악화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농신보의 건전성 관리방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고, 2025년 수입 계획안에 재정으로부터의 전입금 1,500억원을 반영¹⁵⁴⁾하였다는 점 등

154) 수입과목: 기타특별회계전입금(91-912)

을 고려할 때, 기금의 건전성 제고 및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보증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서는 채권 회수실적의 제고를 위한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운용배수 현황〉

(단위: 억원, 배)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기본재산(A)	15,306	10,449	9,847	10,792	11,741	10,476
보증잔액(B)	148,906	161,117	164,399	163,585	171,852	176,420
운용배수(B/A)	9.7	15.4	16.7	15.2	14.6	16.8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그러므로, 농신보는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의 공급을 위해 채권 회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등 구상권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제5장 공적자금상환기금

Ⅰ. 개 요

-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예금보험공사) 및 부실채권정리기금¹⁵⁵⁾(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해당 기금에 자금을 출연할 목적으로 「공적자금상환기금법」¹⁵⁶⁾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2003년 1월 1일부터 운용되고 있으며, 한시법인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의 유효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임.¹⁵⁷⁾
- 공적자금상환기금은 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해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담한 채무 상환을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국채발행자금 49조원을 예수받아 예금보험공사(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5.7조원)와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 3.3조원)에 각각 출연하였음. 이후 동 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등을 받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받은 49조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2025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규모는 6조 4,384억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2조 5,000억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전입금(3조 8,000억원),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특별회계 전입금(1,186억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5조 9,977억원), 예수이자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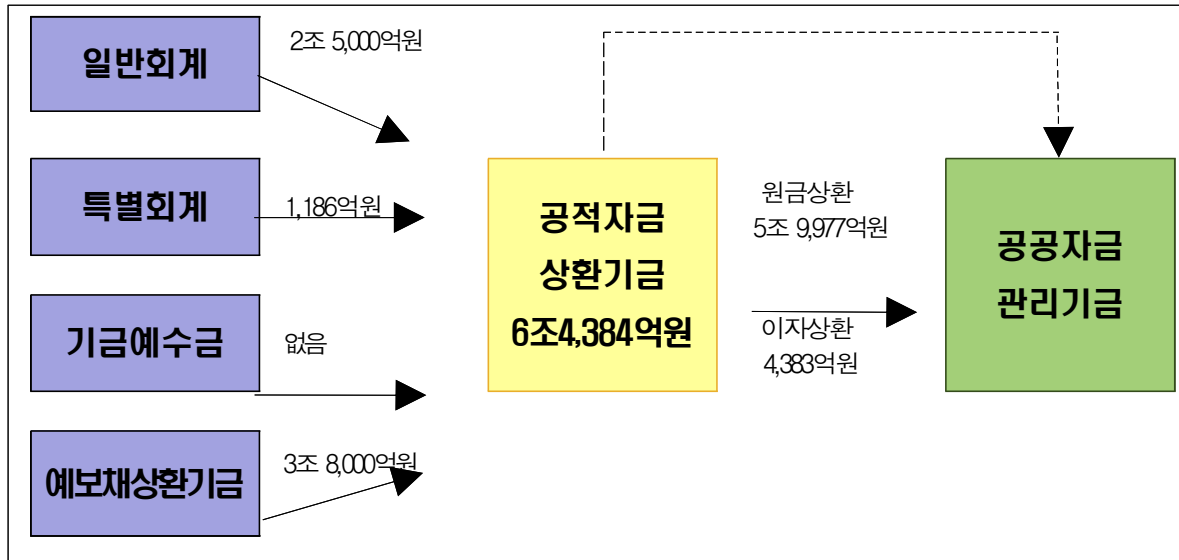
155) 부실채권정리기금은 2012.11.22일 운용을 종료하고, 2013.2.22일 잔여재산을 반환함.

156)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자금을 출연(出捐)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57) 「법률 제6804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4,383억원)에 지출할 계획임.

〈2025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주요 수입·지출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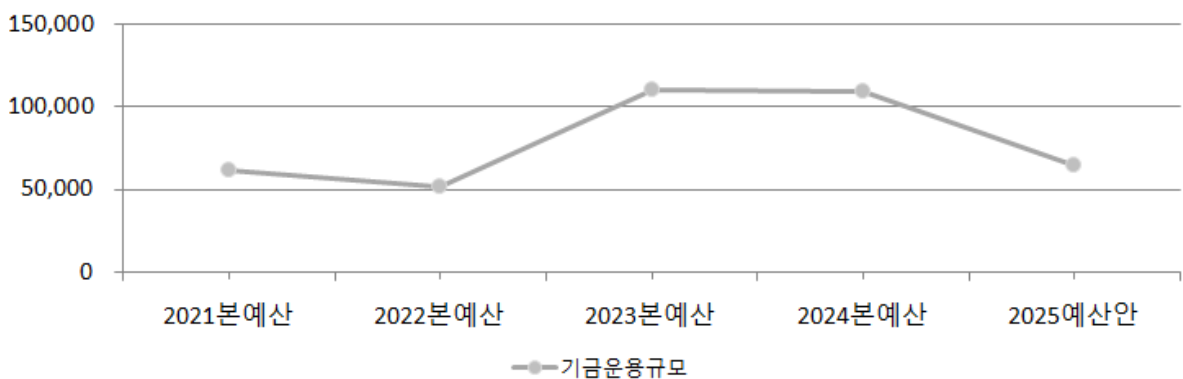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 최근 5년간 기금의 지출 계획 추이를 보면, 2021년 6조 1,424억 원에서, 2022년 5조 1,370억 원, 2023년 11조 193억 원, 2024년 10조 8,893억 원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25년도 계획안에 따른 운용규모는 6조 4,384억 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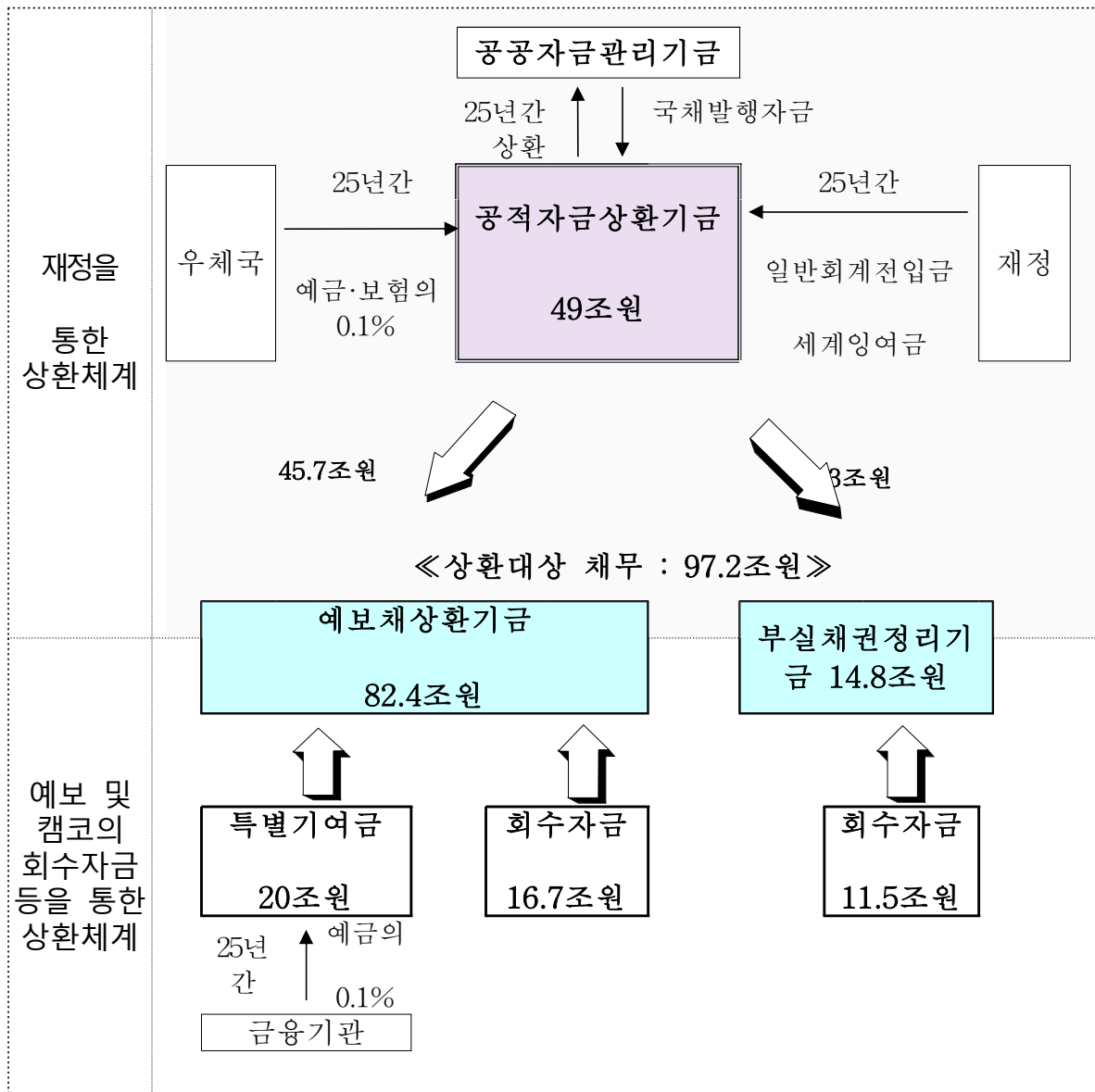
〈최근 5년간 공적자금상환기금 지출 계획 추이〉

(단위: 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 참고 : 2002년 공적자금 상환체계 〉



- 주 1) 정부는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구조조정을 투입한 자금 중, 2002년 말 기준 69조원(상환대상 채무 97.2조원 - 회수자금 28.2조원)을 회수불능으로 판단하고, 총 69조원 중 20조원은 금융회사가, 나머지 49조원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적자금상환 대책을 수립함.
- 2) 2003년 ~ 2027년까지 금융회사 부담분 20조원은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매년 특별기여금(부보예금평잔의 0.1%)을 납부하여 충당하고, 정부 부담분 49조원은 재정에서 매년 2조원씩 출연하여 상환하도록 하였음.
- 3) 정부는 국채발행을 통해 정부 부담분(49조원)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예금보험공사) 및 부실채권정리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시 지원한 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해 국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계획을 세움.

1. 수입계획안

- 2025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수입계획안은 6조 4,384억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조 4,508억 2,900만원(40.9%)이 감액 편성됨.

〈2025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8,883,298	10,889,253	10,889,253	6,438,424	△4,450,829	△ 40.9
□ 재산수입	1,463	888	888	885	△ 3	△ 0.3
□ 경상이전수입	2,600,000	4,250,000	4,250,000	3,800,000	△ 450,000	△ 10.6
□ 재고자산매각대	534	30,099	30,099	18,908	△ 11,191	△ 37.2
□ 세계잉여금	1,684,340	-	-	-	-	-
□ 일반회계전입금	303,860	2,500,000	2,500,000	2,500,000	-	-
□ 특별회계전입금	110,705	115,655	115,655	118,631	2,976	2.6
□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4,124,204	3,992,611	3,992,611	-	△3,992,611	△100
□ 여유자금 회수	58,193	-	-	-	-	-

(자료: 금융위원회)

- 2025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수입계획안은 일반회계전입금 2조 5,000억원, 경상이전수입 3조 8,000억원, 특별회계전입금 1,186억 3,100만원, 재고자산매각대 189억 800만원 등으로 편성됨.

2. 지출계획안

1) 총괄

□ 2025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지출계획안은 6조 4,384억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조 4,508억 2,900만원(40.9%)이 감액 편성됨.

〈2025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8,883,298	10,889,253	10,889,253	6,438,424	△4,450,829	△40.9
□ 기금운영비	5	128	128	57	△71	△55.5
○ 기금관리비	3	5	5	5	-	-
○ 자산매각비	2	123	123	52	△71	△57.7
□ 정부내부지출	8,883,281	10,339,173	10,339,173	6,436,021	△3,903,152	△37.8
○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원금상환	8,345,572	9,789,418	9,789,418	5,997,739	△3,791,679	△38.7
○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	537,709	549,755	549,755	438,282	△111,473	△20.3
□ 여유자금운용	12	549,952	549,952	2,346	△547,606	△99.6
○ 통화금융기관예치	-	549,952	549,952	2,346	△547,606	△99.6
○ 한국은행예치	12	-	-	-	-	-

(자료: 금융위원회)

○ 2025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지출계획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리금 상환 6조 4,360억원, 기본경비 및 현물자산 매각을 위한 기금운영비 5,700만원 등으로 편성됨.

□ 최근 5년간 공적자금상환기금의 프로그램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본경비성 프로그램인 기금운영비와 내부거래·여유자금 관련 프로그램을 제외한 사업비는 모두 금융정책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음.

〈최근 공적자금상환기금 프로그램별 지출계획 내역〉

(단위: 억원, %)

프로그램명	2020년		2021년		2022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금융정책(1100)	131	131	159	159	1	1
기금운영비(3500)	1	1	1	1	1	1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9100)	93,236	93,236	52,544	62,902	44,054	64,025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9200)	10,643	10,643	8,444	8,448	7,031	7,031
여유자금운용(9700)	301	301	276	276	283	283
합 계	104,313	104,313	61,424	71,785	51,370	71,341
프로그램명	2023년		2024년		2025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계획안(B)	
금융정책(1100)	-	-	-	-	-	
기금운영비(3500)	1	1	1	1	1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9100)	103,426	83,456	97,894	97,894	59,977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9200)	6,584	6,515	5,498	5,498	4,383	
여유자금운용(9700)	182	182	5,500	5,500	23	
합 계	110,193	90,153	108,893	108,893	64,384	

(자료: 금융위원회)

2) 기금운영비

- 2025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100만원(55.5%)이 감소함.

〈2025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 기금운영비	5	128	128	57	△71	△55.5
○ 기금관리비	3	5	5	5	-	-
○ 자산관리비	-	-	-	-	-	-
○ 자산매각비	2	123	123	52	△71	△57.7

(자료: 금융위원회)

- ‘기금관리비’는 500만원으로 2024년도 계획안과 동일함.
- ‘자산매각비’는 한화오션(舊대우조선해양) 주식 매각시 필요한 매각 주권사 수수료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100만원(57.7%) 감소함.

3) 정부내부지출

- 2025년도에 공적자금상환기금 정부내부지출 계획은 6조 4,360억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조 9,031억 5,200만원(37.8%)이 감소함.

〈2025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정부내부지출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 정부내부지출	8,883,281	10,339,173	10,339,173	6,436,021	△3,903,152	△37.8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8,345,572	9,789,418	9,789,418	5,997,739	△3,791,679	△38.7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537,709	549,755	549,755	438,282	△111,473	△20.3

(자료: 금융위원회)

4) 여유자금운용

- 공적자금상환기금 총수입액 중 사업비, 기금운영비 및 정부내부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자금을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5,476억 600만원(99.6%) 감액된 23억 4,6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여유자금운용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여유자금운용	12	549,952	549,952	2,346	△547,606	△99.6
○ 통화금융기관예치	-	549,952	549,952	2,346	△547,606	△99.6
○ 한국은행예치금	12	-	-	-	-	-

(자료: 금융위원회)

<공적자금상환기금 여유자금운용 수익률 추이>

(단위: %)

자산별	2020	2021	2022	2023	2024.9	2025(전망)
□ 예치금	1.45	0.72	1.33	4.01	3.74	3.34
□ MMDA	-	0.35	0.2	-	-	-
계	1.45	0.71	1.33	4.01	3.74	3.34

(자료: 금융위원회)

II. 검토의견

1. 재고자산매각대¹⁵⁸⁾: 면밀한 주식 매각계획 수립 후 재고자산매각대 수입계획안 편성 필요

1) 사업 및 자금운용계획안 개요

□ “재고자산매각대”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2013.2.)에 따라 현물로 반환받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주식의 매각대금 수입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11억 9,100만원(△37.2%) 감소한 189억 800만원임.

〈2025년도 재고자산매각대 수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	수정(A)		(B-A)	(B-A)/A
재고자산매각대	534	30,099	30,099	18,908	△11,191	△37.2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면밀한 주식 매각계획 수립 후 재고자산매각대 수입 계획안 편성 필요

금융위원회는 면밀한 주식 매각계획 수립 후 재고자산매각대 수입을 계상하고, 향후 한화오션 주식의 거래가격 및 변동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한 최적 매각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158) 세부사업: 재고자산매각대(73-731)

□ 2013년 2월 부실채권정리기금¹⁵⁹⁾이 청산되면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주식 약 3,283만주(지분 17.15%)를 현물로 반환받았는데, 이후 일부 매각, 주식병합 및 유상증자 등을 거치면서 현재는 약 233만주(지분 0.76%)를 보유하고 있음.

<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주식 보유규모 변동현황 >

시 기	변동 사유	보유주식수(주)	지분비율(%)
'13.02.22.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	32,825,316	17.15
'13.11.20.	블록세일 (매각규모 : 지분율 5%, 3,402억원)	23,255,778	12.15
'15.12.23.	유상증자		8.50
'16.12.29.	주식병합(10:1), 유상증자	2,325,577	3.55
'17.06.~12.	유상증자, 채권단 출자전환		2.17
'23.05.~06.	유상증자		1.07
'23.11.28.	유상증자		0.76
'24.7.25.	유상증자		

(자료: 금융위원회)

□ 매년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한화오션 주식과 관련하여 재고자산매각대 수입을 편성하고 있는데, 2018년도부터의 재고자산매각대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을 제외하고는 수입 실적이 없는 상태임.

159)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7년에 설치되었던 기금으로서 부채 상환을 완료하고 2013년 2월에 청산됨.

< 재고자산매각대 수입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기준	2025년 (안)
계획액	44,117	28,256	30,085	22,749	28,295	18,028	30,099	18,908
수납액	-	-	-	-	-	534	-	-

(자료: 금융위원회)

- 2023년도에는 유상증자 시에 받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하여 5억 3,400만원을 수납하였지만, 주식 매각은 2013년 11월 이후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 2025년도 기금계획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에 보유주식 약 233만주 중 68%에 해당하는 159만주를 매각하고 그 나머지 74만주는 2025년도에 매각한다는 계획인데, 2024년 10월 현재까지 한화오션 주식의 매각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음.

연 도	금 액	예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4계획	30,099백만원	○ 산출내역 : (주)한화오션 주식 1,586,737주를 매각 $- 1,586,737\text{주}^{(주1)} \times 18,969\text{원}^{(주2)} = 30,099\text{백만원}$ 주1) '23년 말 예상 보유 주식 수의 68% 주2) '22년 4/4분기('22.10.1~'22.12.31까지)의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2025계획안	18,908백만원	○ 산출내역 : 한화오션 주식 738,840주 매각 $- 738,840\text{주}^{(주1)} \times 25,591\text{원}^{(주2)} = 18,908\text{백만원}$ 주1) '24년말 매각 계획 이후 예상 잔여 주식수 주2) '23년 4분기 거래량가중평균주가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매년 한화오션 주식 매각을 전제로 재고자산매각대 수입을 계상하고 있는데,

- 기금 수입액에 맞추어 지출액이 결정되는 구조를 고려할 때, 재고자산 매각대 미수납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상환 등도 계획액 보다 적게 집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면밀한 주식 매각계획 수립 후 재고자산매각대 수입을 계상하고, 향후 한화오션 주식의 거래가격 및 향후 변동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회수 자금의 극대화를 위한 최적 매각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제6장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 개 요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은 「예금자보호법」¹⁶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기금관리주체)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부보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를 정리하고, 금융구조조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 예금보험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 승계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운용을 개시하였음.¹⁶¹⁾

□ 상환기금은 「예금자보호법」¹⁶²⁾에 따라 2027년 말 청산 예정이며, 그 자산 및 부채는 공적자금상환기금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가 정해짐.

□ 상환기금의 총채무 규모는 82.4조원이었으나,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

160)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① 부보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로 한정한다)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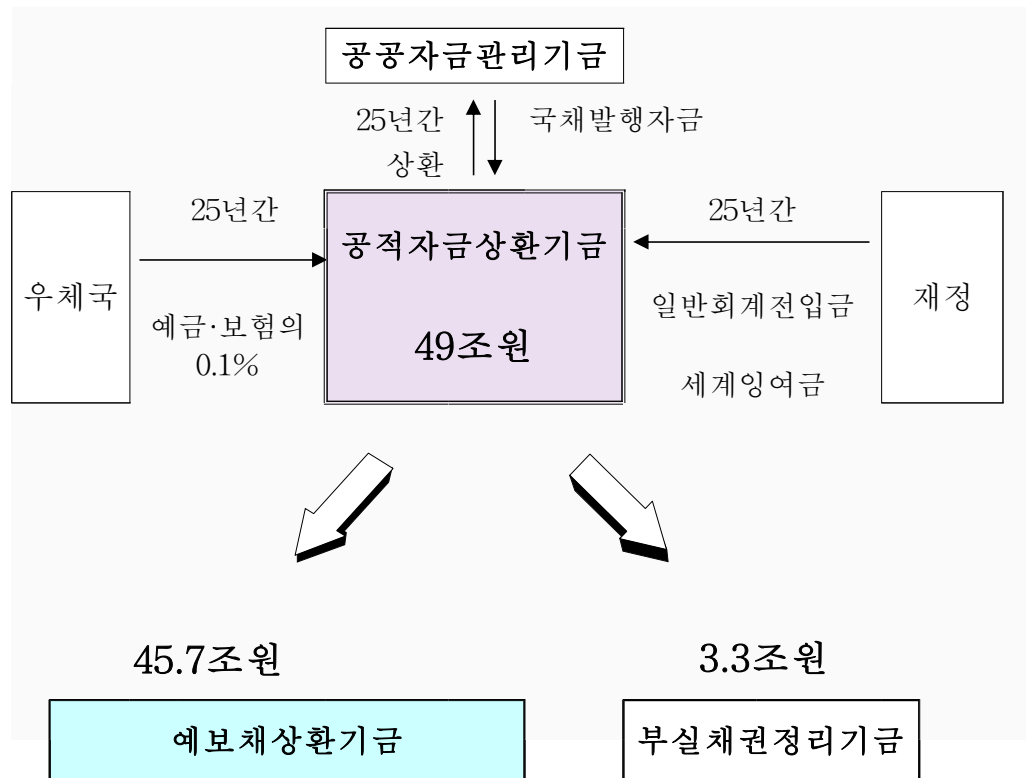
161) 이와 동시에 예금보험공사에는 2003년 1월 1일 통상적인 예금보험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예금보험기금이 신설되었음.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부칙 제9조 (상환기금의 계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예금보험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이 법 시행일 이전에 납부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보험료를 제외한다)는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환기금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된 신용협동조합계정은 2010년 1월 1일에 이를 폐지하고, 같은 날 그 자산과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로 이관한다.

162)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10조 (상환기금의 청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이라 한다)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다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 상환기금의 청산 시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상환기금의 청산 전에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다.

터 출연받은 45.7조원과 금융기관의 특별기여금(예금평잔의 0.1%) 등
재원으로 2021년에 부채 상환을 완료하였으며,

- 현재는 2003년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출연(45.7조원) 받을 때 체결한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간 약정¹⁶³⁾에 따라 상환기금의 여유재원 중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의 부채 상환을 위해 전출하고 있음.¹⁶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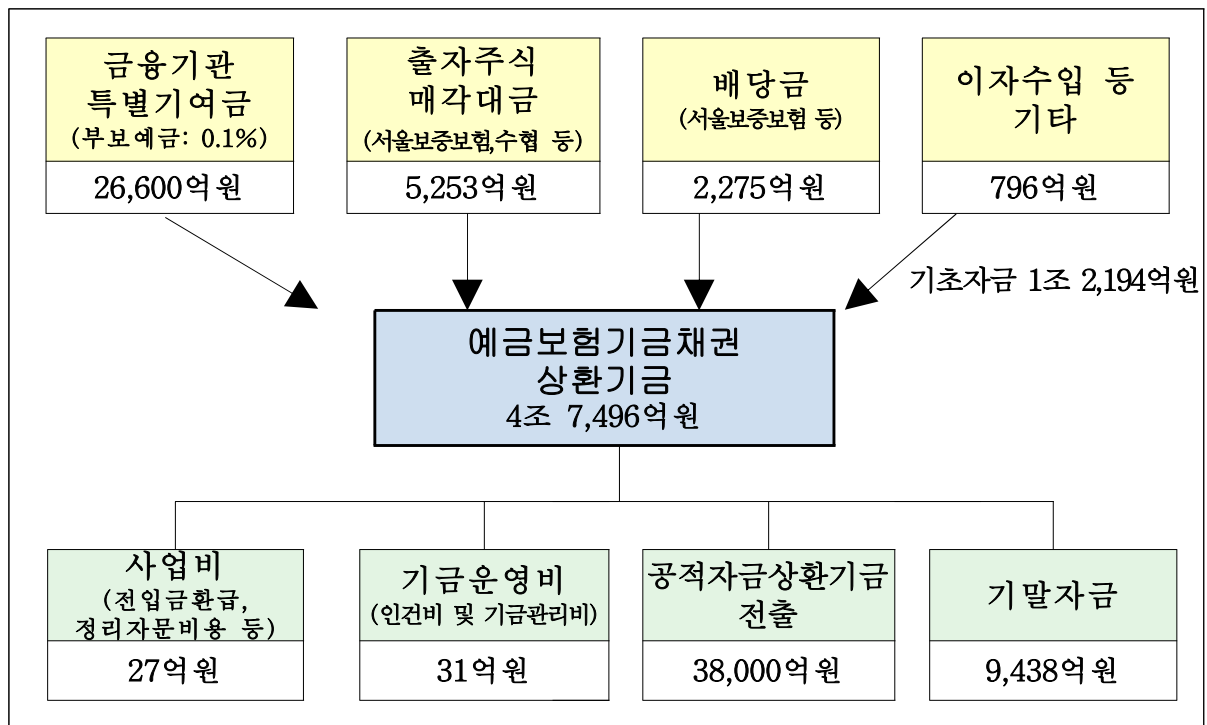
163)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금의 정산에 관한 약정」(2003), 제2조(출연금의 반환) 상환기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계산(이하 “재계산”이라 한다) 후 또는 기금의 부채 상환과 자산의 정리 등을 완료한 후 정부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출연한 경우에는 “을“은 그 초과분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이 경우 반환하는 출연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164)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10조 (상환기금의 청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이라 한다)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다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 상환기금의 청산 시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상환기금의 청산 전에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다.

□ 2025년도 상환기금 운용규모는 4조 7,496억원으로 금융기관 특별기여금 (2조 6,600억원), 출자주식 매각대금(5,253억원), 배당금(2,275원) 및 이자수입 등(796억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 이를 사업비(27억원), 기금운영비 (31억원), 공적자금 상환기금 전출 (3조 8,000억원) 등에 지출할 계획으로 있음.

〈2025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요 수입·지출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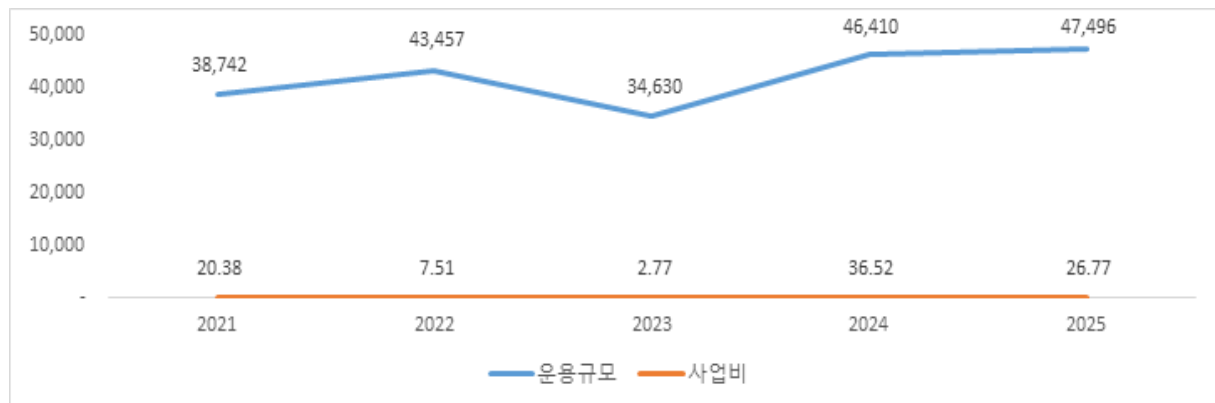


(자료: 예금보험공사)

□ 최근 5년간 기금의 운용규모 추이를 보면 2021년 3.9조원, 2022년 4.3조원, 2023년 4.9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4년 4.6조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5년 4.7조원으로 다시 증액 편성 계획임.

〈최근 5년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운용규모 및 사업비 내역〉

(단위: 억원)



(자료: 예금보험공사)

1. 수입계획안

- 2025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수입계획안은 4조 7,496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6억원(2.3%)이 증액 편성됨.

〈2025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4,904,634	4,641,030	4,641,030	4,749,605	108,575	2.3
□ 재산수입	385,703	292,107	292,107	344,855	52,748	18.1
□ 경상이전수입	2,497,406	2,544,120	2,544,120	2,660,038	115,918	4.6
□ 관유물매각대	80,000	1,033,172	1,033,172	525,330	△507,842	△49.2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1,941,526	771,631	771,631	1,219,382	447,751	58.0

(자료: 예금보험공사)

- ‘재산수입’은 출자금융기관 주식 배당금, KR&C(정리금융회사) 대출금 이자수입 및 기금의 대기성 자금 이자수입 등으로, 출자금융기관 주식 배당금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527억 4,800만원(18.1%) 증가한 3,448억 5,500만원이 편성됨.
- ‘경상이전수입’은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른 금융권 특별기여금 수입 등으로, 최근 특별기여금 수납액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159억 1,800만원(4.6%) 증가한 2조 6,600억 3,800만원이 편성됨.
- ‘관유물매각대’는 출자금융회사 주식 매각수입으로 ‘24년 중 우리 금융지주 지분 매각 완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5,078억 4,200만원 (49.2%) 감소한 5,253억 3,000만원이 편성됨.

- ‘차입금 및 여유자금 회수’는 상환기금채권의 발행 및 기초 보유자금으로 2025년에는 기초 보유자금만 존재하여, 전년 대비 4,477억 5,100만원(58.0%) 증가한 1조 2,193억 8,200만원이 편성됨.

2. 지출계획안

1) 총괄

- 2025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지출계획안은 4조 7,496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6억원(2.3%)이 증액 편성됨.

〈2025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4,904,634	4,641,030	4,641,030	4,749,605	108,575	2.3
□ 사업비	277	3,652	3,652	2,677	△975	△26.7
○ 전입금환급	-	3	3	3	-	-
○ 소송및법적절차비	220	8	8	7	△1	△12.5
○ 기타정리자문경비등	57	3,641	3,641	2,667	△974	△26.8
□ 기금운영비	3,229	3,450	3,450	3,103	△347	△10.1
○ 인건비	2,930	3,095	3,095	2,844	△251	△8.1
○ 기금관리비	299	355	355	259	△96	△27.0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2,600,000	4,250,000	4,250,000	3,800,000	△450,000	△10.6
□ 채권 원리금 상환	-	-	-	-	-	-
○ 채권 원금 상환	-	-	-	-	-	-
○ 채권 이자 상환	-	-	-	-	-	-
□ 여유자금운용	2,300,794	383,928	383,928	943,825	559,897	145.8

(자료: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사업비 계획안은 26억 7,700만원으로
출자 주식 매각계획 상 기타정리자문경비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9억원 7,500만원(26.7%) 감액되었으며,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31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700만원(10.1%) 감소함.
- 2025년도 기금의 여유자금은 9,438억 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98억 9,700만원(145.8%)이 증가함.

□ 최근 5년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프로그램별 현황을 살펴보면,
차입금등원금상환(9800)이 '21년까지 주요 지출 항목이며 그 외 사업비
성격의 금융정책(1100), 경상비용 성격의 기금운영비(3500), 기말
자금인 여유자금운용(9700)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1년 부채상환
완료 이후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8901)을 신규 편성함.

〈최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프로그램별 지출계획 내역〉

(단위: 억원, %)

프로그램명	2020년		2021년		2022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금융정책(1100)	1,473	1,473	1,059	1,059	808	808
기금운영비(3500)	37	37	36	36	36	40
여유자금운용(9700)	14,993	14,993	134	134	7,126	7,123
차입금등원금상환(9800)	24,000	24,000	16,800	16,800	-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8901)	-	-	12,500	12,500	24,000	24,000
합 계	40,503	40,503	30,529	30,529	31,970	31,970
프로그램명	2023년		2024년		2025년 계획안(B)	
	당초	수정	당초	수정		
금융정책(1100)	879	879	37	37	27	
기금운영비(3500)	34	34	35	35	31	
여유자금운용(9700)	7,716	7,716	3,839	3,839	9,438	
차입금등원금상환(9800)	-	-	-	-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8901)	26,000	26,000	42,500	42,500	38,000	
합 계	34,630	34,630	46,410	46,410	47,496	

(자료: 예금보험공사)

2) 사업비

□ 2025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소관 사업비 계획안은 26억 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원 7,500만원(26.7%) 감소함.

〈2025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사업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사업비	277	3,652	3,652	2,677	△975	△26.7
○ 전입금환급	-	3	3	3	-	-
○ 소송및법적절차비	220	8	8	7	△1	△12.5
○ 기타정리자문경비등	57	3,641	3,641	2,667	△974	△26.8

(자료: 예금보험공사)

- ‘전입금환급’ 사업은 금융구조조정 지원자금 관련 사후정산비용으로 2024년 계획과 동일한 300만원이 편성됨.
- ‘소송 및 법적절차비’ 사업은 종결재단 관련된 소송비용 등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12.5%) 감액한 700만원이 편성됨.
- ‘기타정리자문경비등’ 사업은 ‘24년 중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 완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9억 7,400만원(26.8%) 감액한 26억 6,700만원이 편성됨.

3) 기금운영비

- 2025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31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700만원(10.1%) 감소함.

〈2025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기금운영비	3,229	3,450	3,450	3,103	△347	△10.1
○ 인건비	2,930	3,095	3,095	2,844	△251	△8.1
○ 기금관리비	299	355	355	259	△96	△27.0

(자료: 예금보험공사)

- ‘인건비’는 기금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상환기금 전담인력의 인건비 부담액으로, 전년 대비 2억 5,100만원(8.1%) 감액된 28억 4,400만원이 편성됨.
- ‘기금관리비’는 상환기금 관리에 소요되는 각종 경상적인 경비로, 전년 대비 9,600만원(27.0%) 감액된 2억 5,900만원이 편성됨.

4)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은 부채 상환 완료 후 여유자금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4,500억원(10.6%) 감액된 3조 8,000억원이 편성됨.

〈2025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2,600,000	4,250,000	4,250,000	3,800,000	△ 450,000	△ 10.6

(자료: 예금보험공사)

5) 채권 원리금 상환

☐ 2025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채권 원리금 상환은 없음.

○ '21년 중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부채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채권 및 이자 상환금액이 발생하지 않음.

6) 여유자금운용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여유자금운용규모는 기말보유자금으로
전년 대비 5,598억 9,700만원(145.8%) 증가한 9,438억 2,5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여유자금운용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여유자금운용	2,300,794	383,928	383,928	943,825	559,897	145.8

(자료: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여유자금운용 수익률 추이〉

(단위: %)

자산별	2020	2021	2022	2023	2024.9.	2025(전망)
☐ 예치금	1.55	0.95	2.45	4.05	3.96	-
☐ 채권	-	0.65	2.28	3.80	3.67	-
☐ 수익증권(MMF)	1.04	0.82	2.32	3.92	-	-
☐ 수익증권(국공채형)	-	-	-	5.02	-	-
☐ 수익증권(완전위탁)	-	-	-	-	3.91	3.16
계	1.53	0.94	2.40	4.12	3.92	3.16

(자료: 예금보험공사)

II. 검토의견

1. 재고자산매각대¹⁶⁵⁾: 보유주식 매각 및 매각 가치 극대화 필요

1)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재고자산매각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출자금용회사의 주식 매각 수입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5,078억원 4,200만원(△49.2%) 감소한 5,253억 3,0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재고자산매각대수입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계획액		2025년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재고자산매각대	80,000	1,033,172	1,033,172	525,330	△507,842	△49.2

(자료: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에 공적자금 110.9조원을 지원하고 2023년 말 기준 62.7조원을 회수하였으며, 미회수액은 48.2조원임.
- 공적자금 지원방식 중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 방식 지원의 경우 파산채권 또는 대출채권 등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공적자금지원(2002년 이전) 후 장시간이 경과했으므로¹⁶⁶⁾, 향후 추가적으로 회수되는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¹⁶⁵⁾ 세부사업: 재고자산매각대(73-731)

¹⁶⁶⁾ 상환기금은 금융회사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발생한 2002년 12월까지의 예금보험기금 자산 및 부채를 포괄 승계하여 설치된 것임.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 현황>

(단위: 억원, %)

지원방식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97~'23)			
	지원액	회수액	미회수액	미회수율
출자	507,937	324,330	183,607	36.1
출연	186,117	35,436	150,681	80.9
예금대지급	303,124	173,131	129,993	42.9
대출	5,969	6,005	-	-
자산매입	105,799	87,912	17,887	16.9
합 계	1,108,946	626,814	482,168	43.5

(자료: 「공적자금 운용으로 취득한 자산의 관리현황 보고(금융위원회, 2024.3.)」 재구성)

- 반면, 출자방식의 공적자금지원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향후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 가격에 매각하는 경우 추가적인 공적자금 회수가 가능한데, 2024년 8월 기준 상환기금 보유 주식은 한화생명 지분 10%, 서울보증보험 지분 93.85% 등임.

< 출자방식 자금지원·회수 실적 및 보유 주식 현황 >

(단위: 억원, 2024.8.기준)

구분	지원 및 회수			보유 주식 현황 및 평가	
	지원액	회수액 (~2023.12.)	회수액 (~2024.8.)	보유주식	평가액
은행	222,039	237,417	238,794 ¹⁶⁷⁾	수협(국채로 상환 ¹⁶⁸⁾)	6,774 ^{주1)}
금융투자	99,769	12,121	12,121	-	-
생명보험	56,697	25,345	25,476	한화생명지분 10%	2,580 ^{주2)}
손해보험	102,501	46,137	48,092	서울보증보험 지분 93.85%	29,914 ^{주3)}
종금	26,931	3,309	3,358	-	-
저축은행	1	-	-	-	-
합 계	507,938	324,329	327,841		39,268

(자료: 예금보험공사)

주1) 수협중앙회로부터 수령한 국채의 연도별 회수 금액 총합계('24~'27년)

주2) 한화생명 보유주식을 '24.8월말 시가 기준으로 평가

주3) 서울보증보험 보유주식에 대한 평가금액으로서 '23년 IPO 추진시 증권신고서상 공모희망가액 밴드 중간값을 적용

167) 상환기금은 2024년에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1.24%(936만주)를 전량 매각하여 1,366억원 회수함.

168) 수협은 2022년 9월 우선출자증권을 매입·소각하여 잔여가액을 국채로 지급하였으며, 예금보험공사는 국채 만기 도래 시마다 현금으로 회수하고 있음.

2) 검토의견: 보유주식 매각 및 매각가치 극대화 필요

예금보험공사는 서울보증보험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여 상환기금 보유지분을 원활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한화생명보험 잔여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시장 변화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보유주식의 신속한 매각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 2025년도 재고자산매각대 수입 계획안은 5,253억 3,000만원인데,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수협중앙회로부터 수령한 국채의 2025년 만기 도래분 800억원 외에 한화생명보험 지분 5%, 서울보증보험 지분 10%에 대한 매각 계획이 있음.

< 재고자산매각대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산정근거
한화생명보험	126,594	43,428,501주 ^① × 2,915원 ^② ^① '25년 매각예상 수량(5%) ^② 최근 12개월('23.4월~'24.3월) 거래량가중평균 주가
서울보증보험	318,736	6,982,160주 ^① × 45,650원 ^② ^① '25년 매각예상 수량(10%) ^② 서울보증보험 증권신고서 공모희망가액 39,500원~51,800원 중간값
수협중앙회	80,000	'25년 국채 만기 도래 액면가 ※ '22.6월 개정 상환합의서에 따라 공사가 수령한 국채의 연도별 만기가액
합계	525,330	

(자료: 예금보험공사)

□ 상환기금은 현재 한화생명보험 주식 약 8,686만주, 서울보증보험 주식 약 6,553만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은 각각 10%, 93.85%임.

< 상환기금 보유주식 현황 >

(단위: 억원, 2024.9.기준)

구 분	공적자금('97~'23)			보유 주식	
	지원액	회수액	미회수액	주식 수	지분율
한화생명보험	35,500	25,071	10,429	86,857,001주	10%
서울보증보험	102,500	46,136	56,364	65,528,906주	93.85%

(자료: 예금보험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예금보험공사는 한화생명보험에 대하여 3조 5,5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지분 매각 등을 통해 2023년까지 2조 5,071억원을 회수했지만, 2017년 이후 남아있는 지분 10%에 대한 매각이 더이상 진행되지 못하였고, 이후 배당수입만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실정임.

- 한화생명보험에 대한 미회수금액은 1조 429억원인데, 현재 1주당 가치가 2,900원 수준이므로, 보유지분 전량(8,686만주)을 매각한다고 가정하여도 현재 상황으로서는 대략 2,520억원 정도만 회수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공적자금 10조 2,500억원이 지원되었는데, 2011년 우선주 상환 이후 더이상의 주식 매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분 93.85%에 대한 배당수입만 있는 상태로서, 2023년 말까지 4조 6,136억원을 회수한데 그치고 있음.

- 예금보험공사는 2023년 10월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¹⁶⁹⁾를

169) “기업공개”란 비상장기업이 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에 공식적으로 거래되기 위해, 외부 투자자가 공개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기업이 자사의 주식과 경영내역을 시장에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거래소에 상장신청 → 심사 및 승인 → 증권신고서 작성 → 수요예측을 통한 적정 공모가 결정 → 공모주 청약 → 상장 순서를 거침.

통한 상장 추진 실패 후, 2024년 8월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서울보증보험 지분매각 로드맵(2024.3.)¹⁷⁰⁾에 따라 소수지분(10% 내외)에 대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였고 2025년 상반기에 상장 추진 예정임.

- 또한, 상장 이후에 시장상황, 기업실적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소수지분 및 경영권 지분 매각 등을 추진할 예정임.

<서울보증보험 지분매각 추진계획>

방식	IPO(기업공개)	소수지분 추가 매각	경영권 지분 매각
시기	'25년 상반기 이내	상환 완료 이후~상환기금 청산시점('27년말) 이내	향후 검토
물량	10% 이상 (시장상황 및 수요예측 결과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최대 33.85% (단, 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50%+1주 이상

(자료: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공사는 한화생명보험과 서울보증보험 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향후 시장동향, 보험업 전망, 기업실적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잔여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힘.

-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 청산 예정이며, 그 청산 이전에도 추정되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켜 공적자금 상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¹⁷¹⁾ 원활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서는

170)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제224차 회의(2024.3.18.) 「서울보증보험 지분매각 추진계획 수정(안)」

171)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10조 (상환기금의 청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이라 한다)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다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 상환기금의 청산 시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보유자산의 매각과 함께 매각 가치를 극대화 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예금보험공사는 서울보증보험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여 상환기금 보유 지분을 원활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한화생명보험 잔여 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시장 변화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보유 주식의 신속한 매각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상환기금의 청산 전에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다.

2. 기타민간이자수입¹⁷²⁾: KR&C에 대한 대출금 회수 노력 제고 필요

1)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기타민간이전수입”은 KR&C(舊 정리금융공사)에 대한 대출금 이자 수입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05억 3,100만원(△21.8%) 감소한 378억 2,0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기타민간이자수입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계획액		2025년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기타민간이자수입	36,442	48,351	48,351	37,820	△10,531	△21.8

(자료: 예금보험공사)

□ KR&C는 「예금자보호법」¹⁷³⁾에 따라 예금 대지급, 부실금융회사 자산 인수, 대출 채권 회수 등 부실금융회사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1999년 12월에 설립된 정리금융회사로서 상환기금의 자회사임.

- KR&C의 영업기간은 설립일부터 5년 이내이나 동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영업기간이 연장되고 있는데, 현재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영업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임.¹⁷⁴⁾

172) 세부사업: 기타민간이자수입(54-5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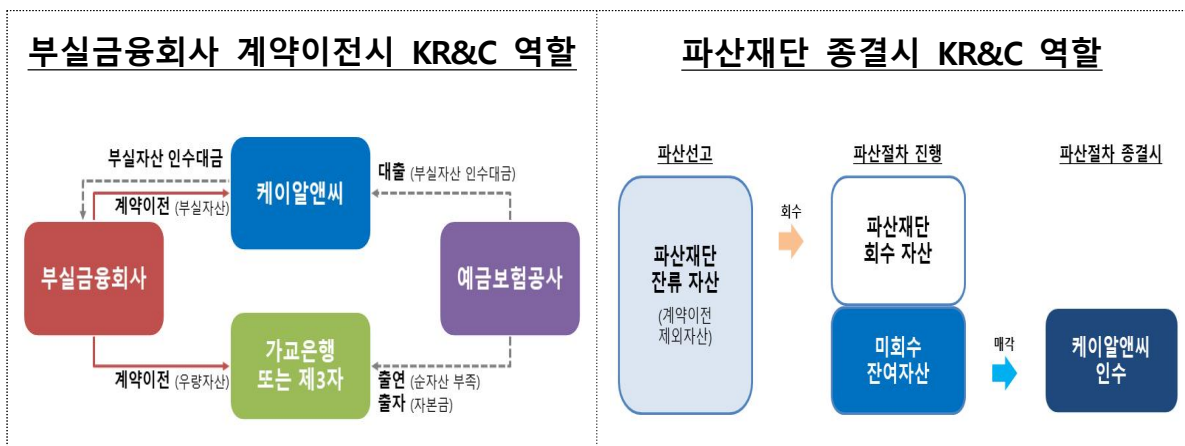
173)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등) ① 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실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거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36조의5(정리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등) ① 정리금융회사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 대출 등 채권의 회수, 그 밖에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6조의7(정리금융회사의 영업기간 등) ① 정리금융회사의 영업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영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74) 금융위원회는 3년 단위로 영업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음.

- KR&C는 부실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거나 정리업무 수행을 위한 페이퍼컴퍼니(비상근이사 3명, 감사 1명)이며 실제 KR&C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인수한 자산의 매각업무 등은 예금보험공사가 대행하고 있음.
- KR&C는 과거 부실금융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2005년에는 예금보험기금 자산 인수 업무를 추가하였고, 현재는 파산재단 종결 시 잔여자산 인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음.



2) 검토의견: KR&C에 대한 대출금 회수 노력 제고 필요

KR&C는 누적결손으로 인해 상환기금 대출금에 대해 매년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데, 상환기금의 청산일이 2027년 12월이므로, 예금보험공사는 KR&C에 대한 대출금 회수 노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상환기금은 부실금융회사의 효율적 정리를 위하여 부실자산을 KR&C가 인수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형태로 KR&C에 지원하였는데, 그 대출 총액은 32.6조원임.¹⁷⁵⁾

- KR&C는 파산배당금, 인수대출채권 회수, 자산 매각 등을 통해 18.3조원을 상환하였지만, 2024년 9월말 기준 15.4조원(원금 14.3조원, 미수이자 1.1조원)을 미상환한 상태임.

< KR&C에 대한 대출액 및 회수액 현황 >

(2024.9.기준)

KR&C에 대한 대출액	회수액	미회수액
32.6조원	18.3조원	원금 14.3조원 미수이자 1.1조원

(자료: 예금보험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KR&C는 누적결손(2024년 6월말 기준 약 △18조원) 상태로 추가적인 원금 상환이 어려워, 매년 상환기금에 대하여 이자만 납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 2015년도부터의 상환기금 이자수입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거의 매년 계획액 대비 초과징수가 이루어지다 2021년도부터는 기금 계획액 만큼만 징수되고 있음.

¹⁷⁵⁾ 상환기금은 2003년 1월 1일부터 운용을 개시했는데,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부칙 제9조에 따라 2002년 말까지의 예금보험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를 상환기금이 포괄승계하였음.

- 이는 2020년도까지는 자산 매각 및 파산배당금 수입 등의 회수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회수액을 상환기금에 납부하였지만, 이후 회수액 규모가 감소하자, 2021년도부터는 종전 상환액을 기준으로 계획액을 편성하고 이 계획액에 맞추어 이자를 징수하였기 때문임.

< 상환기금의 KR&C 관련 이자수입 징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	계획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C/A)	수납률(C/B)
2015	36,704	183,057	183,057	498.7	100.0
2016	56,288	60,000	60,000	106.6	100.0
2017	51,121	76,000	76,000	148.7	100.0
2018	29,558	103,500	103,500	350.2	100.0
2019	33,513	33,000	33,000	98.5	100.0
2020	15,912	41,413	41,413	260.3	100.0
2021	47,550	47,550	47,550	100.0	100.0
2022	39,564	39,565	39,565	100.0	100.0
2023	36,442	36,442	36,442	100.0	100.0
2024	48,351				

(자료: 예금보험공사)

- 2025년도 KR&C 관련 이자수입 계획안은 378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과거 3개년 평균 상환액에 평균증감률을 곱하여 산정한 것임.

2025년도 계획안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378억 2,000만원	■ 과거 3개년('21~'23년) 평균 상환액(41,186백만원) × (1+ 과거 3개년 평균 증감율(△4.17%))² (상환액 : ('21) 476억원, ('22) 396억원, ('23) 364억원)

(자료: 예금보험공사)

□ KR&C에 대한 대출금은 예금자 보호를 위해 부실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고, 이러한 예금 대지급은 이미 발생한 부실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KR&C의 미상환액(원금 14.3조원, 미수이자 1.1조원) 중 상당 부분은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상환기금의 청산일이 2027년 12월이므로, 종전과 같이 평균 상환액을 기준으로 이자수입만을 기금계획안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KR&C의 자산현황을 파악하여 대출금 회수 노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연차별로 현실적인 회수 가능금액을 기금계획안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2023년도 공적자금 정기재계산에서 KR&C 관련 회수가능 자산을 2022년 말 기준 4,936억원으로 평가하였고,¹⁷⁶⁾

< 2023년도 정기재계산에 따른 KR&C 관련 회수가능 자산 >

(단위: 억원, 2022.12.기준)

자산총계(A)	부채총계 ¹⁷⁷⁾ (B)	자본 총계(A-B)
5,487	551	4,936

- KR&C의 2023년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은 1,955억원이며¹⁷⁸⁾, 매년 약 400억원 수준의 현금성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

176) 「공적자금 정기재계산 연구용역(금융분야)」, 2023.10., 예금보험공사(한국금융연구원)

177) 상환기금에 대한 부채는 제외

178) 상환기금 관련 현금성자산(예금보험공사 제출자료)

<'19년~'23년 KR&C의 현금성 수익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보유대출 관련 수익	277	169	240	190	308
이자수익(예치금 및 보유대출 등)	109	87	73	94	124
임대료수익	68	72	64	65	66
기타수익(유가증권 배당수익 등)	11	20	22	28	18
수익 계	465	348	399	377	516

(자료 : 예금보험공사)

- 한편, KR&C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수매도가능증권과 인수대출채권 등은 시장성이 없거나 회수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단기간에 현금화하는 것이 쉽지 않고, 상환기금 운용 종료시점(2027.12.)까지 미매각 현물자산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2023년 말 기준 KR&C의 매도가능증권 및 대출채권 금액>

인수매도가능증권	인수대출채권
427.5억원 (순자산가치)	56.3억원 (장부금액)

(자료 : 예금보험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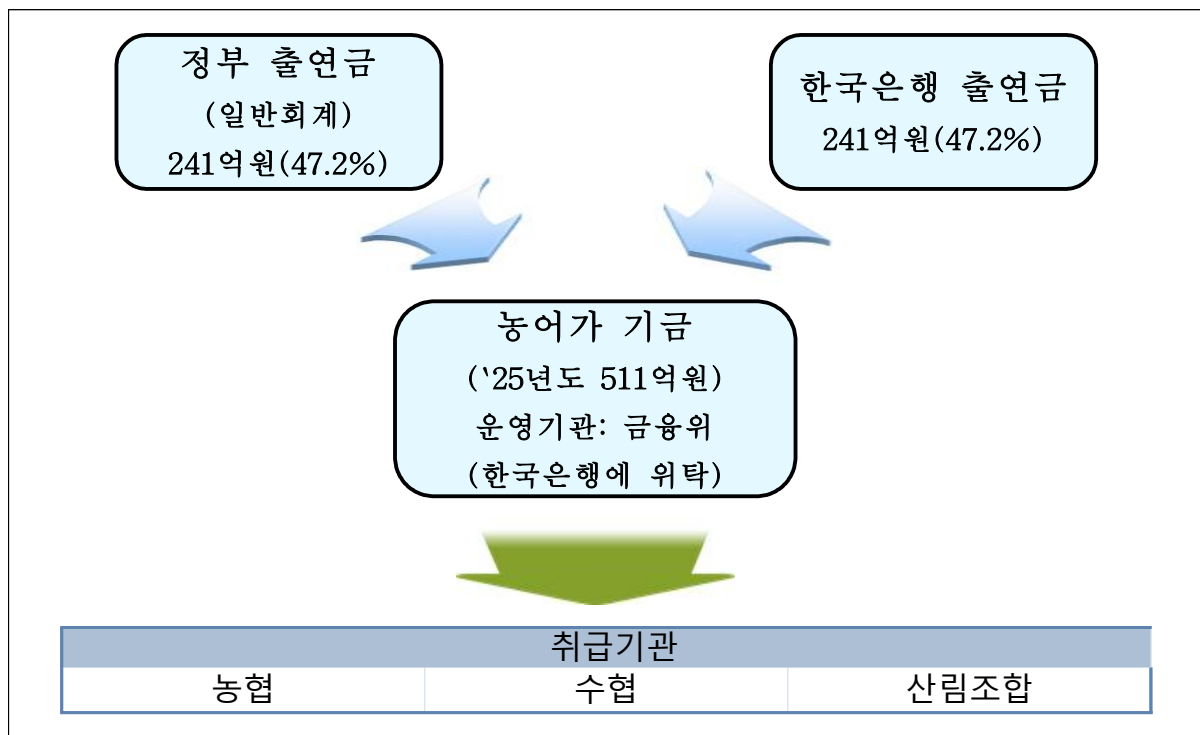
- 따라서 예금보험공사는 상환기금 청산 일정을 고려해, KR&C 보유자산의 매각계획 및 현물자산 처리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대출금 회수 노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연차별 회수 가능금액을 기금 계획안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제7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 개 요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농어민 재산형성 지원, 저축장려를 통한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1985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설치되었음.
- 2025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운용 규모는 510억 9,500만원으로, 정부 출연금(241억원)과 한국은행 출연금(241억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기본금리 외에 법정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금(511억원) 사업에 집행할 계획임.

〈2025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주요 수입·지출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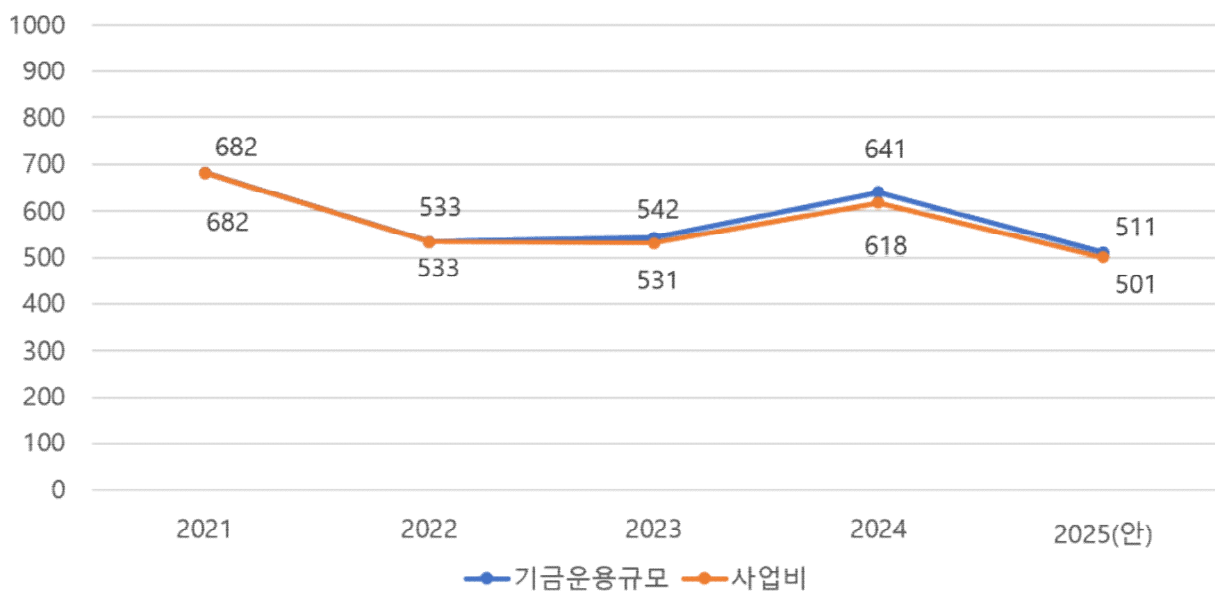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 최근 5년간 기금의 운용규모 추이를 보면 2021년 682억원, 2022년 533억원, 2023년 542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4년 641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25년도 계획안은 511억원으로 다시 감소하였음.

〈최근 5년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운용규모 및 사업비 내역〉

(단위: 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1. 수입계획안

- 2025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수입계획안은 510억 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0억 1400만원(20.3%)이 증액 편성됨.

〈2025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54,198	64,109	64,109	51,095	△13,014	△20.3
□ 재산수입	132	118	118	284	166	140.7
□ 경상이전수입	27,033	31,463	31,463	24,147	△7,316	△23.3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	1,065	1,065	2,517	1,452	136.3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27,033	31,463	31,463	24,147	△7,316	△23.3

(자료: 금융위원회)

- ‘재산수입’은 기금 여유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 수입액으로서, 전년 대비 1억 6,600만원(140.7%)이 증액 편성됨
- ‘경상이전수입’은 한국은행 출연금으로 구성되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그 잉여금 및 적립금에서 출연하며,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는 정부출연금으로 동법 동조 제3항에 따라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1/2이상을 출연함. 2025년도 각각 전년 대비 73억 1,600만원 감소한 241억 4,700만원이 편성됨.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는 2024년도말 현재 금융기관에 운용중인 기금 여유자금 잔액으로서 2025년도 수입계획안은 25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5,200만원 증액 편성됨.

2. 지출계획안

1) 총괄

□ 2025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지출계획안은 510억 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0억 1400만원(20.3%)이 증액 편성됨.

〈2025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54,198	64,109	64,109	51,095	△13,014	△20.3
□ 사업비	54,135	61,806	61,806	50,086	△11,720	△19.0
○ 저축장려금	54,135	61,806	61,806	50,086	△11,720	△19.0
□ 기금운영비	-	1	1	1	-	-
○ 기금관리비	-	1	1	1	-	-
□ 여유자금운용	63	2,302	2,302	1,008	△1,294	△56.2
○ 한국은행예치	63	10	10	9	△1	△10.0
○ 통화금융기관예치	-	2,292	2,292	999	△1,293	△56.4

(자료: 금융위원회)

- 2025년도 사업비 계획안은 500억 8,600만원으로 2024년도 계획 대비 117억 2,000만원(19.0%) 감소하였으며,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출장 및 성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100만원 편성되었으며 2024년도 계획과 동일함.
- 2025년도 기금의 여유자금운용 계획안은 10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9,400만원(56.2%) 감액됨.

- 최근 5년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프로그램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본경비성 프로그램인 기금운영비와 여유자금운용 프로그램을 제외한 사업비는 모두 저축장려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음.

〈최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프로그램별 지출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명	2020년		2021년		2022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저축장려(1600)	66,671	67,757	67,079	68,233	54,628	54,628
기금운영비(3200)	1	-	1	-	1	1
여유자금운용(9700)	1,337	4	1,346	7	1,088	1,088
합 계	68,009	67,761	68,426	68,240	55,717	55,717
프로그램명	2023년		2024년			2025년
	당초	수정	당초	1차추경	2차추경	계획안(B)
저축장려(1600)	53,082	53,082	61,806	61,806	61,806	50,086
기금운영비(3200)	1	1	1	1	1	1
여유자금운용(9700)	1,070	1,070	2,302	2,302	2,302	1,008
합 계	54,153	54,153	64,109	64,109	64,109	51,095

(자료: 금융위원회)

2) 사업비

- 2025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사업비 계획안은 500억 8,600만원으로 예상저축만기도래자 증가에 따라 예상 저축장려금 지급액 규모가 확대됨으로써 전년 대비 117억 2,000만원(19.0%) 감액됨.

〈2025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사업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사업비	54,135	61,806	61,806	50,086	△11,720	△19.0
○ 저축장려금	54,135	61,806	61,806	50,086	△11,720	△19.0

(자료: 금융위원회)

3) 여유자금운용

- ☐ 자금의 유입시기 및 지급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여유 자금에 대한 운용 규모는 2025년에 10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9,400만원(56.2%) 감액 편성됨.

<2025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여유자금운용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여유자금운용	63	2,302	2,302	1,008	△1,294	△56.2

(자료: 금융위원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여유자금운용 수익률 추이>

(단위: %)

자산별	2020	2021	2022	2023	2024.10
☐ 예치금	0.74	0.71	1.73	3.69	3.47
☐ 채권	-	-	-	-	-
☐ 수익증권	-	-	-	-	-
계	0.74	0.71	1.73	3.69	3.47

(자료: 금융위원회)

II. 검토의견

1. 저축장려금¹⁷⁹⁾: 사업대상을 저소득농어민으로 한정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

1)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저축장려금” 사업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만기도래 시 저축기관(농·수협, 산림조합)이 지급하는 기본금리 외에 법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17억 2,000만원(△19.0%) 감소한 500억 8,6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저축장려금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	수정(A)		(B-A)	(B-A)/A
저축장려금	54,135	61,806	61,806	50,086	△11,720	19.0

(자료: 금융위원회)

- 2023년 말 기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총계좌수는 약 22만계좌이며, 불입액은 1조 2,869억원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현황 〉

(단위 : 계좌,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가입 계좌수(누적)	276,621	267,416	253,570	234,776	221,934
불입액(누적)	10,319	11,588	12,949	13,196	12,869

(자료: 금융위원회)

179) 세부사업: 저축장려금(1631-301)

2) 검토의견: 사업대상을 저소득농어민으로 한정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장려금 지급대상을 저소득농어민으로 한정하여 이들의 재산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려금리를 제공하는 등 제도개선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3년·5년 만기의 정기적금 형태로서, 가입한도는 연 240만원임.
- 저축 가입자는 만기도래 시에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기본금리(2024.1. 기준, 연 4.04%) 외에 가입대상 및 저축기간에 따른 저축장려금(연 0.9% ~ 4.8%)을 추가로 지급받게 됨.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개요〉

구 분	일반농어민	저소득농어민
가입대상 (법 시행령 제2조)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금융위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24년 기준 월 295,190원 이하)	·국민건강보험 미대상자인 농어민 (의료급여수급권자,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농어민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24년 기준 월 217,980원 이하)
저축형태	정기적금(3년·5년 만기, 월·분기·반기 적립 방식)	
저축기관 지급금리	연 4.04% (2024년 1월기준)	
저축장려금	계약기간	이자율(%)
		일반 저소득
	3년 만기	연 0.9 연 3.0
	5년 만기	연 1.5 연 4.8
	* 저축기간의 평균잔액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저축장려금으로 지급	
장려금재원	정부출연금, 한국은행 출연금, 기금 운용수익	
가입한도	월 20만원 이하(연 240만원 이하)	
취급기관	단위농협·수협, 산림조합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런데 저축장려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이후 꾸준한 감소추세를 나타냄.

〈 저축장려금 지급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저축장려금 지급액	1006	831	829	717	659	682	543	511

(자료: 금융위원회)

□ 또한, 신규가입 계좌 수 역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연도별 신규가입 대비 중도해지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신규가입 및 중도해지 현황 〉

(단위 : 계좌,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신규가입 계좌수(A)	70,830	56,110	51,968	44,420	45,084
중도해지 계좌수(B)	10,687	8,871	8,204	9,458	10,546
신규가입 대비 중도해지 비율(B/A)	15.0%	15.8%	15.8%	21.3%	23.4%

(자료: 금융위원회)

□ 이와 같은 실적 감소는 장려금리의 하향조정¹⁸⁰⁾과 연 240만원(월 20만원)에 불과한 저축 한도때문인 것으로 보임.

180)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연혁

구 분			'86. 5. ~ '89. 5.	'89. 6. ~ '95. 6.	'95. 6. ~ '17. 2.	'17. 3. ~
저축한도			일반 연 144만원 저소득 연 72만원	일반 연 144만원 저소득 연 72만원	일반 연 144만원 저소득 연 120만원	연 240만원
장려금리	일반	3년	연 4.2%	연 1.5%	연 1.5%	연 0.9%
		5년	연 4.9%	연 2.5%	연 2.5%	연 1.5%
	저소득	3년	연 10.2%	연 6.0%	연 6.0%	연 3.0%
		5년	연 13.9%	연 9.6%	연 9.6%	연 4.8%

(자료: 금융위원회)

□ 특히, 소득구분별 가입실적을 살펴보면, 총가입 계좌 중 일반농어민 가입 비율이 점차 감소(19년 15.2% → 2023년 11.6%)하고 있는데,

〈 소득구분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 실적 〉

(단위 : 계좌, %)

구분	'19년말 기준		'20년말 기준		'21년말 기준		'22년말 기준		'23년말 기준	
	계좌 수	비중	계좌 수	비중	계좌 수	비중	계좌 수	비중	계좌 수	비중
일반	42,130	15.2	38,515	14.4	34,511	13.6	29,611	12.6	25,743	11.6
저소득	234,499	84.8	228,901	85.6	219,059	86.4	205,165	87.4	196,191	88.4
합계	276,629	100	267,416	100	253,570	100	234,776	100	221,934	100

(자료: 금융위원회)

- 이는 일반농어민이 3년 만기 적금에 가입한 경우 장려금리 0.9%와 저축기관 지급금리 4.04%를 합해도 최대 5.13%의 이자를 받는데 그치고, 저축 한도 역시 월 2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보임.

〈 소득구분별 저축장려금 〉

구 분	이자율(%)	
	일반농어민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24년 기준 월 295,190원 이하인 농어민	저소득농어민 ·국민건강보험 미대상자인 농어민 (의료급여수급권자,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농어민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24년 기준 월 217,980원 이하 농어민
3년 만기	연 0.9	연 3.0
5년 만기	연 1.5	연 4.8

(자료: 금융위원회)

-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고자 했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¹⁸¹⁾의 기금설치 취지를 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만약, 재원의 한정성으로 인해 장려금리 및 저축 한도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장려금 지급대상을 저소득농어민으로 한정하여 이들의 재산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장려금리를 제공하는 등 제도개선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8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수산·축산 자금의 공급을 증대시켜 농업·수산업·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